

기본연구보고서 00-03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김상태

한국관광연구원

Kim, Sangta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musement and Attraction Industry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김상태

한국관광연구원

서 문

관광산업은 경제성장과 여가시간의 증대, 교통·정보수단의 발달 등으로 향후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21세기 미래형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관광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관광자원은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향후 환경친화적 관광개발과 함께 다양한 관광수요의 충족측면에서 인공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원시설업은 고도의 첨단과학 기술이 응용되는 분야일 뿐 아니라 문화산업의 결과물으로써, 가족단위 건전 관광의 장을 제공하는 등 주목할 만한 다원적 정책 기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전반적인 현황분석을 통해서 볼 때 유원시설업에 대한 정책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원시설업은 아직까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미래에의 지속성장에는 전문가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지원의 수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유원시설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의 체계구축과 세부정책 프로그램을 제시코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유원시설업이 관광산업에 포함된 이후 최초의 정책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가지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 대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관광산업 전반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추진과 관련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자문위원과 관계공무원, 설문에 응해주신 각계 전문가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0. 11

한국관광연구원

원장 이연택

Abstract

The tourism industry has been steadily growing during the last decades, due to increased income and economic growth, progress of transportation, increased public leisure time,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Recently, the tourism industry has been trying to create new products in an effort to attract more tourists and satisfy their desires.

The world amusement and attraction industry is expected to grow continuously, due to increased leisure time, the need of special recreation facilities centered on families, and satisfaction of diversified customers' desire. The industry is developing on a large scale and expanding the market to other countries with high technology.

The amusement and attraction industry in Korea began in the 1960s with simple facilities at Changkyong-won, and has been developed in response to increased leisure time and disposable income in 1990s. Amusement and attraction has been a part of the tourism industry since 1999 when it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Now, the amusement and attraction industry in Korea is growing continuously, with the exception of the IMF recession in the late 1990s.

Today's amusement and attraction industry, which is influenced seasonally, needs huge capital investments, high technology, the ability to respond to customers' desires, and large human resources. It enhances the quality of living for people, providing places for recreation and education with 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of communities, environmentally friendly facilities,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more tourism opportunities.

I can categorize the problems revealed in this study into *government, industry, association, and safety*. *Government* has the problems of law and administrative support. These are probably due to the transfer of public health laws to tourist promotion laws without in-depth revision.

Industry has problems of poor competitiveness, insufficient technical know-how to manage facilities. *Association*, reveals poor activities, insufficient financing, less- specialized human resource. *Safety* problems result from information gathering difficulty and insufficient safety educ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wo policy alternatives were suggested: consolidating related laws; and developing detailed programs for improving investment and operation environment,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s, safety, and streamlining administrative processes. Revising legal definition of the amusement and attraction industry, defining applicable range of the laws, and unifying terminology related to the industry were proposed to consolidate the related legal systems.

Improving the financial environment and taxation system on investment,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amusement and attraction industry (including statistics, research results, and databases), and providing technological know-how or guidance were proposed for improving the investment and operation environments. Supporting the uniqueness of the industry, holding exhibitions, improving awareness and recognition of the industry, developing training programs for facility operator and inspector, introducing a certificate system and employee re-training programs were suggested for management and supporting human resources. Improving a safety inspection system, improving regulations on the industry, providing a consumer protection system, and an investment administrative environment were proposed for safety and streamlining administrative processes.

목 차

요 약	1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1. 연구의 방법	2
2. 연구의 범위	4
제3절 관련 개념의 정리	5
1. 정부의 산업정책의 개념과 발전추세	5
2. 국내 유원시설업 육성의 필요성	7
제2장 국내 유원시설업 운영현황	10
제1절 법제도 현황	10
1. 법제 현황	10
2. 산업지원 현황	14
3. 조사·연구지원 현황	17
제2절 국내 유원시설업 운영현황	17
1. 유원시설업의 특성	17
2. 이용객 현황 및 시장규모	18
3. 유원시설업계 현황	26
4.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현황	31
5. 유원시설 안전사고 현황	35
제3절 유원시설업의 수요예측 및 파급효과	45
1. 개요	45
2. 수요예측	45
3. 산업연관(I-O)분석을 통한 유원시설의 특성	47
제4절 시사점	52

제3장 국외 유원시설업 운영 현황	56
제1절 개요	56
1. 일반현황	56
2. 테마파크의 발전과정	58
제2절 각국의 유원시설업 현황	60
1. 미국	60
2. 일본	65
3. 유럽	70
제3절 시사점	72
제4장 의견조사 및 문제점 종합분석	75
제1절 조사 개요	75
1. 조사목적	75
2. 조사 방법	75
제2절 의견조사 결과분석	77
1. 일반인 의견조사	77
2. 업체 의견조사	82
3. 전문가 의견조사	89
4. 시사점	95
제3절 문제점 종합분석	98
1. 정부의 문제	99
2. 유원시설업계의 문제	104
3.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문제	105
4. 안전사고 문제	108
제5장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109
제1절 기본방향	109
제2절 법체계 정비	109
1. 추진 배경	109
2. 주요 사업내용	110

제3절 세부 육성방안	114
1. 투자 및 운영여건 개선사업	115
2. 경영 및 인력지원 사업	120
3. 안전 및 행정절차 합리화 지원사업	125
제4절 추진일정	129
제6장 결론 및 제언	131
참고문헌	135
부 록	137

〈표차례〉

<표 2-1> 유원시설업의 구분	10
<표 2-2> 종합휴양업(제1종, 제2종) 및 전문휴양업의 정의	12
<표 2-3> 유기장업의 구분	14
<표 2-4> 유원시설 관련 금융지원 내용	15
<표 2-5> 관광진흥개발기금 내 유원시설업 지원내용	15
<표 2-6> 유원시설업과 관련된 관광벤처지원 현황	16
<표 2-7> 유원시설업 관련 연구 세미나 및 보고서	17
<표 2-8> 10개 업체 연도별 놀이시설 이용자 수	19
<표 2-9> 연도별 주요 유원시설업체의 입장객 현황(천명)	20
<표 2-10> 연도별 주요 유원시설업체의 시장 점유율(%)	21
<표 2-11>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연도별 놀이시설 이용자 수	22
<표 2-12> 시·도별 유원시설업 등록현황	26
<표 2-13> 유원시설업체 현황	27
<표 2-14> 연도별 유원시설업체 수의 변화	27
<표 2-15> 유기시설 종류별 현황	27
<표 2-16> 안전검사 대상 놀이기구 보유 현황	28
<표 2-17> 국내 유기기구 제조업체 현황	30
<표 2-18>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수입/지출 현황	33
<표 2-19> 1999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수입/지출 내역	33
<표 2-20> 전체 유원시설업 관련 사업체 현황 및 가입 현황	34
<표 2-21> 연도별 사고발생 현황	36
<표 2-22> 유기시설 종류별 사고의 분류	37
<표 2-23> 사고 원인별 분류	37
<표 2-24> 관리 원인별 사고 분류	38
<표 2-25> 발생 형태별 사상자수 현황	38
<표 2-26> 발생 월별 사상자 현황	39
<표 2-27> 국내유기시설 안전사고 현황	40
<표 2-28> 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현황	43
<표 2-29> 2000~2008년까지의 예상 이용자 수 및 증가율	46
<표 2-30> 관광산업의 분류와 유원시설	48

<표 2-31> 유원시설의 후방과급효과	49
<표 2-32> 유원시설의 수입유발효과	49
<표 2-33> 유원시설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0
<표 2-34> 유원시설의 고용유발효과	50
<표 2-35> 단위당 유발효과	52
<표 3-1> 세계 10대 테마파크 현황	57
<표 3-2> 연도별 입장객 및 수입 현황	61
<표 3-3 >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일본개발은행의 대출유자제도	69
<표 4-1> 1999년 놀이공원 방문횟수	78
<표 4-2> 놀이공원 종사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78
<표 4-3> 이용한 시설물의 안전도에 대한 만족도	79
<표 4-4> 기념품 및 캐릭터 상품의 질에 대한 만족도	79
<표 4-5> 판매하는 식음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	80
<표 4-6>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만족도	80
<표 4-7> 놀이공원의 위치에 대한 만족도	81
<표 4-8> 놀이공원의 가격에 대한 만족도	81
<표 4-9> 놀이공원의 정보습득 경로	82
<표 4-10> 응답자의 연령	82
<표 4-11> 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 세제 및 행정지원 여부	84
<표 4-12> 종업원에 대하여 일년에 실시한 정기교육 횟수	84
<표 4-13> 종업원에 대한 수시 교육 실시 횟수	84
<표 4-14> 1999년 안전사고 발생건수	85
<표 4-15> 안전사고 발생원인	85
<표 4-16> 안전사고 발생 시 업체의 대응방안	86
<표 4-17>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안전성검사에 대한 만족도	86
<표 4-18> 유원시설업 운영 시 어려운 점	87
<표 4-1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행정, 금융 및 세제지원 여부	87
<표 4-20> 기구 제작과 관련한 독창적인 기술보유 및 제작여부	88
<표 4-21> 기구 제작과 관련하여 보유 중인 기술의 수	88
<표 4-22> 업체의 종업원 수	88
<표 4-23> 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구분에 대한 의견	90
<표 4-24> 기구제작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	90

<표 4-25> 제작업체 육성 방법	91
<표 4-26> 안전성 검사 실시 기관	91
<표 4-27> 현행 안전성 검사에 대한 의견	92
<표 4-28>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92
<표 4-29> 안전전문가양성 교육기관 설립 및 개설	93
<표 4-30>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신규등록 시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93
<표 4-31> 유원시설업의 지식기반산업 여부에 관한 의견	94
<표 4-32> 수요 증가에 따르는 충족방안 및 외국테마파크의 유치로 인한 과급효과	94
<표 4-33> 외국 테마파크가 국내 유치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	95
<표 4-34> 국내 유원시설업의 문제점	98
<표 4-35>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99
<표 4-36>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100
<표 4-37> 국내 이동 유기사설 현황	101
<표 5-1> 유원시설업의 주요 법적 정의 개정(안)에 따른 장·단점 비교	111
<표 5-2> 유원시설업의 범위 개정(안)에 따른 장·단점 비교	113
<표 5-3> 유원시설업의 용어의 불일치 통일에 따른 장·단점 비교	114
<표 5-4> 세부 육성 방안	114
<표 5-5> 사업별·주체별 추진시기	130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3
<그림 1-2> 유원시설업의 기능체계	8
<그림 2-1> 10개 업체 연도별 놀이시설 이용자 수	20
<그림 2-2> 주요 10개 업체의 평균 시장점유율	21
<그림 2-3>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기초한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자 수	23
<그림 2-4> 유기사설 종류별 현황	28
<그림 2-5> 안전검사 대상 놀이기구 보유현황	29
<그림 2-6>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조직도	32
<그림 2-7> 연도별 사고 건수	36
<그림 2-8> 발생일별 사상자 현황	39
<그림 2-9>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객 수요예측	47
<그림 3-1> 테마파크 발전과정	59
<그림 3-2> 미국의 메이저 4개사의 자국내 테마파크 위상도	60
<그림 3-3> 연도별 입장객 및 수입현황	61
<그림 3-4> 일본의 자국내 테마파크 위상도	66
<그림 5-1> 정보·기술지도의 강화	120
<그림 5-2> 한국적 유원시설 특화개념	122
<그림 5-3> 인식제고 사업의 추진방향	123

요 약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 급증하는 국민의 국내·외 다양한 관광수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인공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 및 관광매력을 높일 필요성 대두
- 종래의 안전관리 정책에서 탈피하여 도심형 관광자원개발 및 건전한 가족중심의 여가 활용의 장의 마련차원에서 지원·육성할 필요성 대두.
- '99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면서 관광산업으로서의 관광진흥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방안 필요하게 됨.

나. 연구의 목적

- 국내 유원시설업의 체계적 현황파악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유원시설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지원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정책자료 생산

다. 관련 개념의 정리

- 유원시설업 육성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와 관련된 유원시설업의 정책기능으로는 문화기능, 복지기능, 경제기능, 환경기능, 과학기능, 교육기능 및 관광기능 등이 있음.

2. 국내 유원시설업 운영현황

가. 법정책 현황

- 유원시설업 관련 법제 현황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기준 유기기구의 수에 따라 종합, 일반 및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진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유원시설업은 대분류상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산업분류코드:88992)으로 분류되어 있음.
- 산업정책지원과 관련한 유원시설업 담당 행정조직으로는 문화관광부 관광국 국민관광과 내에 유원시설 담당이 있으며, 각 시·군·구청 내 유원시설 담당이 인·허가 및 행정검사를 담당함.
- 산업정책지원금융지원 현황
유원시설업관련 금융지원은 '99년 및 2000년에 안전성검사 장비 구입자금으로 1억 원 및 1억5천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의 경우 관광개발진흥기금에 유원시설업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홍보부족 및 담보설정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은 저조한 실정이며, 유원시설업 운영관련 지원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유원시설업 관련 연구현황
연구세미나로는 '97년에 문화체육부의 “유기장업 육성발전” 및 한국관광연구원의 “한국형 테마파크 개발촉진 방안”이 있으며, 연구보고서로는 '97년에 문화체육부의 “유원산업의 진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98년에 소비자보호원의 “공원·유원지 내 놀이시설 안전실태 조사”, '99년에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유원시설 안전기준마련 연구결과 보고서” 및 2000년 현재 한국관광연구원의 “유원시설업 육성방안”이 있음.
- 유원시설업 관광벤처 지원현황과 관련해서는 새천년관광투자조합의 “새천년관광국민 5호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법 시행령 제2조가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제공원(테마파크)개발사업, 우수유기기구개발사업, 주제공원 기획·개발사업 등이 있음.

나. 국내 유원시설업 운영현황

- 국내 유원시설업체 수는 국민 여가생활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99년 현재 종합유원시설업체 30개, 일반유원시설업체 118개 및 유기기구 제작업체 2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
- '99년 유원시설업의 국내시장 규모로는 9,901억 8,480만 원으로 추정.

- 2000년 3월 현재 유원시설업체의 협회 가입현황을 보면 전체 251개 업체 중 36.25%인 91개 업체에 불과함.
- 유원시설업의 안전성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시 행정검사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년 1회 정기 안전성검사로 이원화되어 있음.

다. 수요예측 및 과급효과

- 수요예측은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98, '99년은 IMF의 특수상황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97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8년까지의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평균 성장률은 7.98%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약 1.47배 성장해 전체 이용객 수는 약 73,460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유원시설업의 특징은 기계, 전자 등과 같은 제조업에 체화된 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고, 기계관련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3. 국외 유원시설업 운영현황

- 미국의 경우 시장 기능에 우선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책은 없고 주 정부 차원에서 테마파크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예) 플로리다 주의 **RCID** 특별자치구
- 미국의 테마파크 전략은 거대 규모의 스케일 메리트, 수입구조의 다변화, 하이테크 산업화를 통한 외국으로 확장하는 추세임.
-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지역밀착형 테마파크를 개발하고 있음.
예) 종합보양지역정비법(일명 리조트법) 제정
- 일본의 테마파크 개발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계획하고, 인프라 정비에 중점을 두며, 민자 유치 및 민간사업자의 계획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함.
- 유럽(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테마파크 개발이 이루어짐

4. 의견조사 및 문제점 종합분석

가. 의견조사

1) 일반인 의견조사

- 주요 조사결과
 - 놀이공원의 종사원의 서비스: 응답자의 40%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
 - 놀이공원의 시설물의 안전여부: 응답자의 49%가 위험하다고 인식.
 - 놀이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 응답자의 43.2%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놀이공원의 가격의 적당성 여부: 응답자의 62.7%가 가격에 불만을 나타냄.

2) 업계 의견조사

- 주요 조사결과
 -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응답자의 90.63%가 지원 받은적 없음.
 - 안전사고 발생원인: 이용자의 부주의가 전체 응답의 64.90% 차지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13%만이 관계기관에 신고
 - 업체 운영 시 애로점: 응답자의 70.6%가 정부의 행정규제라고 응답함.
 - 유원시설 놀이기구 제작업체에 대한 행정, 금융 및 세제지원: 응답한 5개 업체 모두 지원 받은 적이 없음.
 - 독창적인 기술보유 여부: 5개 업체 모두 보유하고 있음
 - 제작업체와의 협력여부: 5개 업체 모두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시 해외진출 컨소시엄 구축 지원해 줬으면 함.

3) 전문가 의견조사

- 주요 조사결과
 - 현행 유원시설업의 구분: 39.6%가 현행 법적인 분류가 적정치 않다고 응답.
 - 기구제작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여부: 응답자의 83.34%가 지원 필요
 - 신규등록 시 협회가입 의무화 방안: 70.83%가 의무화에 찬성함.
 - 유원시설업의 지식기반산업 여부: 응답자의 52.08%가 지식기반산업이라고 응답.

- 수요증가에 따른 충족방안 마련: 89.58%가 유원시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 문제점 종합분석

1) 정부의 행정체계 미흡

- 정부조직의 잦은 개편 및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유원시설업에 대한 전문성 축적이 부족하며 효율적 업무추진에 곤란함.
- 정부에서 운용하는 관광개발 진흥기금의 범위가 단순하고, 소규모이며, 담보설정조건으로 인해 기금활용에 대한 정책재원 미흡
- 시설업체 및 기구 제작업체에 대한 업체 수 및 매출액 등의 기초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용객 수 및 행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파악이 안됨.
- 유원시설업의 인력은 안전성검사외에 경영선진화 및 유원시설업 관리 등의 타 부분에 대한 인력개발 미흡

2) 유원시설업계의 문제

- 유원시설업체의 경우 일부 업체를 제외한 영세업체들의 난립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 등의 노력이 미흡함.
- '98년 10월 현재 안전성 검사대상 놀이기구 보유현황을 보면 10개 미만을 소유한 업체가 100개 업체로서 전체의 72.5% 차지
- 유기기구 제작업체의 경우 기술력 및 수급력 미약, 제작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장 신뢰도가 부족하며, 기구제작에 있어 표준화가 안되어 있는 실정임.

3)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중앙회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 미흡
- 회원들의 가입률 저조로 인한 재원의 부족으로 다양한 사업시행에 어려움.

4) 안전사고 관련

- 지난 10년 동안 안전사고 증가는 특별한 증가요인 보다는 유원시설 업체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사고의 증가로 파악되고 있음

- 사고자체를 은폐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기에 무마시켜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수집에 애로.
- 협회의 예산, 장비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기간에 집중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곤란

5) 법 제도상의 문제

-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사용의 혼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의 유원시설업과 종합(전문)휴양업과의 중복 등록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사전허가와 시·군·구의 행정허가의 이중 허가
- 도시공원법 상 공원시설물 조성면적제한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제
- 신규시설물, 이동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및 취득세 관련 사항에 대한 법 규정의 미흡

5.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가. 기본방향

-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육성환경 조성 등에 주력
- 비교우위의 과학기술분야와 한국적 문화를 결합한 유원시설업의 건설
- 대형유원시설업체와 중·소유원시설업체의 차별적인 지원방안 수립
- 유기시설 제작업체를 육성대상에 포함
- 단계별, 업종별 육성정책 수립

나. 법체계 정비

1) 기본방향

- 효율적인 유원시설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추진
- 유원시설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정의와 업체 선정
- 유원시설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추진

2) 주요내용

- 유원시설업의 법적 정의 개정
- 종합(전문)휴양업과의 중복문제 해결
- 용어의 불일치 통일
- 신규 시설물에 대한 법규의 재정비
- 제작업체의 관광산업 편입타당성 검토
- 유원시설업체의 “협회”가입 의무화 추진

다. 세부육성 방안

1) 투자 및 운영여건 개선사업

- 금융 여건개선
 - 투자행정개선, 민자유치를 통한 도시공간 내 유휴지 활용방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휴부지 무상제공 및 무상임대 추진방안 및
 - 관광개발 진흥기금, 중소기업자금 등의 각종 기금의 확대 및 활용방안 검토 등
- 세제관련 투자여건 개선
 - 정부 및 지자체의 세제관련 법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세제감면, 세금의 분할 납부 및 기한 연장방안 마련 등.
- 조사·통계·연구자료제공
 - 협회의 주도아래 년 2회 조사, 통계집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결과를 발간하여 국내·외 유원시설업의 현황파악
 - KIST, 기계공업연구소 등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유기기구 제작설계 표준지침

및 합리화 방안 연구 등

-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기술지도
 - 산·학·연 연계를 통한 유기기구 제작기술의 기술자문 및 기술 제공하여 원-원 전략 수립
 - 관광공사의 해외망 활용하여 외국의 동향 및 외국 기구제작기술의 운영 노하우 벤치마킹 등

2) 경영 및 인력 지원사업

- 유원시설 특화지원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자, 전기산업 및 인터넷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경쟁력 있는 유원시설물 개발
 - 한국적인 문화 콘텐츠를 접목시켜 한국적 문화특성이 드러나도록 유원시설업을 개발하여 세계화 추진
- 유원시설 박람회개최
 - (가칭) Fun Expo 신설 추진 및 IAAPA show, PARK show의 유치에 위한 해외로드쇼 등 마케팅활동 강화
 - Cyber 박람회 신설 추진 검토
- 인식제고 사업전개
 - 안전사고의 경각심 강조 및 지속적인 캠페인활동 전개를 위한 소비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 외국 유원시설 업체의 경영기법 벤치마킹을 통한 유원시설업 활성화 차원에서의 인식제고 검토
 - 안전사고 관련 인식제고를 위해 업체 관계자의 의식전환 운동, 안전사고 제로운동 전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학계,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 안전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 교육부, 노동부와 협의하여 대학 내 안전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및 안전관리 위탁 과정 신설 추진
 - 빅3의 협의 하에 디즈니스쿨과 같은 성격의 유원시설 관리 스쿨 개설검토
- 자격증제도 및 종사원 재교육과정 마련

- 유원시설 안전관리, 총괄지배인 및 일반관리 자격증제도의 도입 추진 및 산업안전 자격증의 유원시설 안전관리 자격증 대체

3) 안전 및 행정절차 합리화 지원사업

- 안전검사 제도의 정비
 -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화 및 사고내용 공개 추진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관련 법 정비 검토
 - 협회와 제3의 전문검사기관과의 협력 추진, 안전교육 및 사고보고의 의무화 등을 통하여 협회의 안전성검사 기준 강화 검토
 - 안전성검사 관련 외부 안전전문가, 협회 및 업계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
- 규제정책 재정비
 - 안전성검사를 제외한 전반적인 관련법규의 규제완화 추진 검토
 - 유기기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마련하여 취득세 관련법의 정비 검토
 - 협회 및 지자체의 사전/사후허가, 시설물 각각에 대한 허가를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중 1개로 단일화 하는 방안 검토
-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범위 명확히 기재하는 방안으로 유원시설업 표준약관(안) 마련 검토
- 투자행정 여건개선
 - 투자행정담당 전담자문반 상설 운영하여 투자행정에 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실시방안 및 행정정보 공개도입 검토

라. 추진일정

○ 사업별·주체별 추진시기

구 분		중심 주체	1단계			2단계			3단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법체계 정비	법적 정의 개정	정부	→	→	→					
	유원시설업의 범위 개정	정부	→	→	→					
	용어의 불일치 통일	정부	→							

투자 및 운영여건 개선사업	금융 여건개선	지자체	→	→	→					
	세제관련 투자여건 개선	지자체	→	→	→					
	조사·통계·연구자료 제공	협회	→	→	→					
	정보·기술지도의 강화	협회				→	→	→		
경영 및 인력지원 사업	유원시설 특화지원	지자체				→	→	→	→	→
	유원시설 박람회 개최	업계			→	→	→	→	→	→
	인식제고 사업전개	협회	→	→	→					
	안전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정부				→	→	→		
안전 및 행정절차 합리화 지원사업	자격증제도 및 종사원 재교육과정 마련	협회				→	→	→		
	안전검사 제도의 정비	협회	→	→	→					
	규제정책 재정비	정부	→	→	→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협회	→	→	→					
	투자행정여건 개선	지자체	→	→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관광산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의 향상, 교통정보수단의 발달,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제간은 물론 지역간의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이엠에프(IMF)의 경제난의 극복에 따라 국민의 국내외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및 인도시장 개척 등 외래관광객의 시장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관광자원은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인공자원의 개발을 통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관광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의 유원시설업을 안전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관광 개발을 통한 도심형 관광자원 개발 및 건전한 가족중심의 여가활용의 장의 마련 차원에서 지원·육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1999년 1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고 동년 5월에는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으로써, 정부는 기존의 공중위생법 상에 포함되어 있던 종합유원시설업 및 유기장업을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으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유원시설업은 종전의 ‘공중위생법’에서의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던 것을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게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원시설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관광자원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국내 유원시설업의 체계적 현황과약을 통해 법체계 정비 등을 통한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가. 연구의 수행방법

○ 문헌조사

유원시설업과 관련된 문헌, 법령, 통계자료,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통해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한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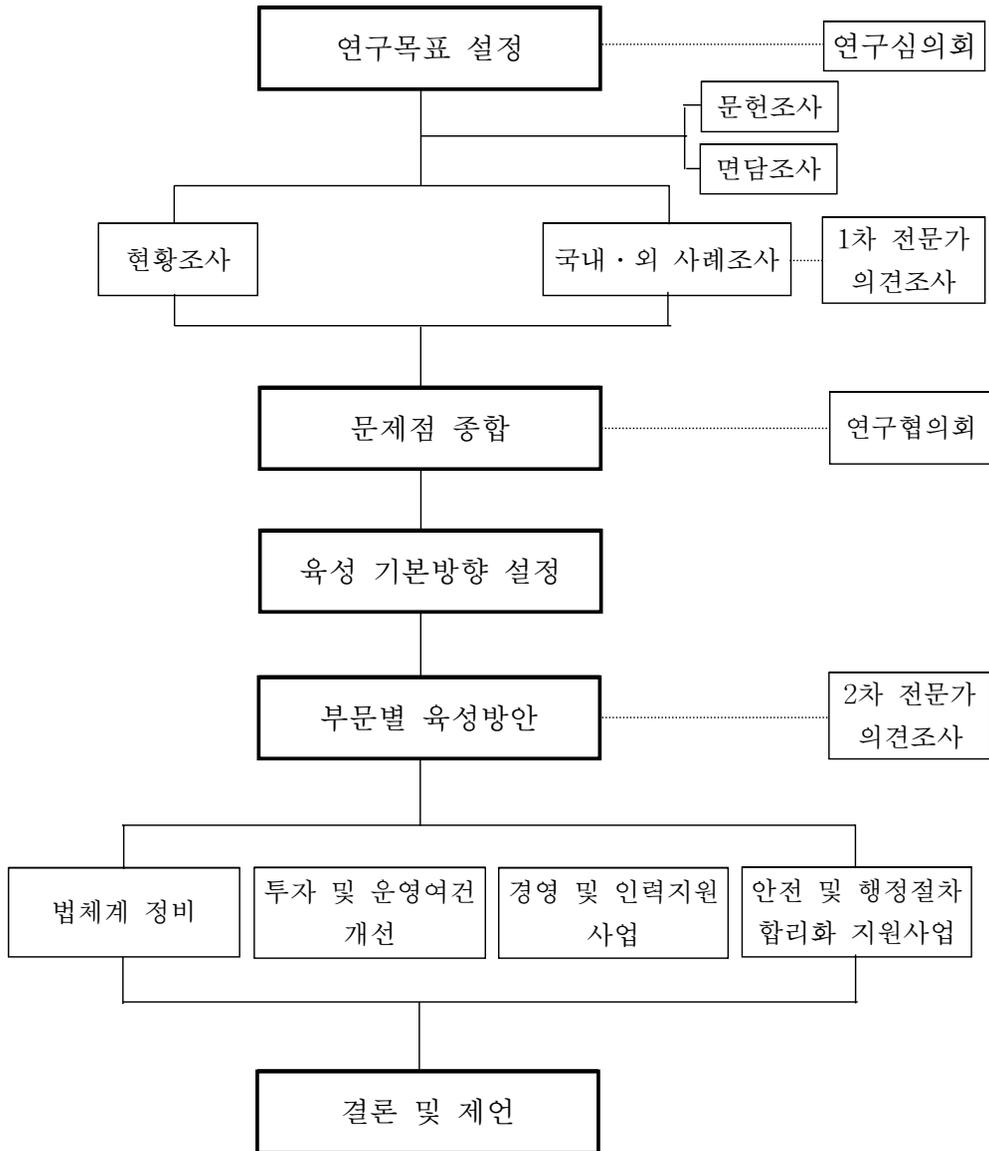
국내 유원시설업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의견조사와 관광사업 중 유원시설업에 종사 하는 전문가, 업계 실무자, 유원시설업협회 관계자 등에 대한 방문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연구 협의회 및 연구 심의회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한국유원시설업협회, 관광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원시설업 관련 연구협의회 및 연구심의회를 개최하였다.

나. 연구의 수행체계

본 연구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연구심의회를 통해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 문헌 및 자료를 조사하여 유원시설업의 문제점을 종합분석 한 후, 기본 육성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 부문별 육성방안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차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고자 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2.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수행함에 있어서의 정책의 최종 목표 년도는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에 연관하여 2008년을 설정코자 하였으나, 정책기간이 장기이므로 다음과 같이 중간목표 년도를 2003년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 중간 목표: 2001년~2003년(관광진흥 5개년 계획 목표 년도)
 - 최종 목표: 2004년~2008년(관광진흥 10개년 계획 목표 년도)

나.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일부 해외 유원시설업 사례를 포함하였다.

다.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범위로는 다음과 같다.
 - 유원시설업 관련 정책 및 제도분석
 - 유원시설업체 실태조사 및 의견조사
 - 해외시설 유치 사례분석
 - 유원시설업의 중장기 수급분석
 -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도출 등

제3절 관련 개념의 정리

1. 정부의 산업정책의 개념과 발전추세

가. 정책의 정의¹⁾

정책이란 일반적으로는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국가의 정책을 국책(國策)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날에는 정당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이나 경영자단체 및 개인의 정책이라도 그 내용과 성질이 공공적인 것이라면 정책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이것을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라 부르고 있다.

나.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은 '70년대의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중후장대형 산업정책을 취해왔다. 반면 '80년대는 중화학공업투자 조정, 산업합리화와 부실기업정리 등 물리적인 수단을 수반한 강력한 경제조건 재정비를 내용으로 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지원의 강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출단가의 절하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수출의 확대가 주된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1988년 말부터는 수출이 정체되면서 경기가 둔화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 산업정책은 '산업구조조정'으로 요약된다. 이 시기 산업구조의 조정방향으로 제시된 첨단산업화, 기술개발과 자동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구조적 약체화가 불가피한 업종의 폐기 또는 업종전환, 해외진출 및 기업경영면에서의 다각화 등이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²⁾

이러한 정부 주도의 하드웨어적인 중후장대형 산업정책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하여 산업정책에 있어서 문화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벤처기업의 약진, 백색산업인 문화관광 산업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유원시설업은

1) 두산세계대백과, www.100.naver.com/search

2)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85390&sec=1>

정부의 소프트웨어적인 산업정책에 부응하며 향후 고부가가치 및 첨단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정부의 산업정책기조와 맞는다고 할 수 있다.

다. 관광산업 정책의 발전추세³⁾

우리 나라의 관광정책은 초창기에는 외화획득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이라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고, 이후 국제관광진흥 위주의 정부정책이 점차 국제관광과 국민관광 진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관광부문이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각되면서 경제적 목표 외에 정치·사회·문화·환경·복지 등의 다원적 목표를 추구하는 관광정책 수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라. 관광비전21에서 제시한 유원시설업 관련 정책⁴⁾

관광비전21에서 밝힌 정부의 유원시설업 육성과 관련된 산업정책으로서는 크게 국제수준의 한국적인 관광자원 확충과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체계적인 관광홍보활동 전개 및 국민생활관광의 실현 등이 있다.

○ 국제수준의 한국적인 관광자원 확충

국외 시장의 개척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한을 도모하기 위해 방한 외래 객의 기호에 맞는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을 통한 관광수입의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테마파크의 육성을 위해 에버랜드, 롯데월드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개발을 확대하고, 디즈니랜드, 레고랜드 등 테마파크의 세계적인 브랜드의 국내 유치 및 관광민속촌 등과 같은 한국적인 특색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체계적인 관광 홍보활동 전개

방한 외래 객들에게 다양한 한국의 관광매력을 호소력 있게 상징화하고,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재창출하여 새로이 창출된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홍보를 극대화

3) 문화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2000. 12, p.179

4) 문화관광부, 「관광비전21」, 1999. 1. pp. 15-83

하여 지속적인 방한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국민생활 관광의 실현

향후 유원시설업은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휴가제도의 개선모색과 가족 중심적인 관광행태에 부응한 가족형 관광시설 개발, 문화시설을 이용한 방문자의 다양한 관광경험의 기회제공 및 가족관광, 청소년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 관광의 생활화 정착 등의 국민 생활관광의 실현 차원에서 유원시설업 정책을 추진한다.

2. 국내 유원시설업 육성의 필요성

국내 유원시설업 육성은 국민소득의 증가 및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장의 구축 차원에서 육성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원시설업 육성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볼 때 유원시설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기능을 지니고 있다.

○ 문화기능

기존의 유원시설업을 한국의 전통문화와 접목시켜 독특한 한국적인 문화적 캐릭터 개발과 문화를 가미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추진할 경우 문화산업측면에서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기능

국민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터전 마련 및 가족단위의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경제발전 기능

기존 대형 유원시설업 중심의 육성책을 벗어나 지역에 기반을 두고있는 중·소 유원시설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써 유원시설업의 역할이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친환경적 기능

유원시설업은 대규모의 시설을 주로 도시지역의 특정공간에 집중적으로 건설할 수 있어 여타 관광시설에 비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친환경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과학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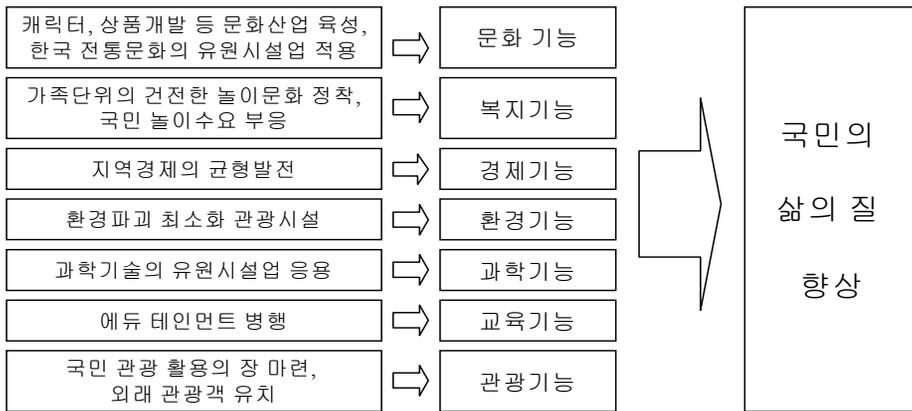
점차로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이 영상산업 및 첨단 산업 기술 등의 접목을 통해 최첨단의 첨단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써 점차 발전하고 첨단 기술습득과 활용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하다.

○ 에듀테인먼트 기능

종래의 단순한 놀이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라 가족이 나와서 학습하는 장으로써의 유원시설업의 에듀테인먼트적 기능의 강화에 따라 새로운 역할이 기대된다.

○ 관광기능

경쟁력 있는 유원시설업의 육성은 인바운드 및 국내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해 국제수지 개선과 정부의 국민 여가활용의 장 마련 및 건전한 놀이문화공간 등의 확보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2> 유원시설업의 정책기능체계

특히 유원시설업의 개념적인 다양한 기능과 관련하여 국내 유원시설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및 수요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유원시설업의 육성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현안적 육성의 필요성은

첫째, 향후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양적 수급불균형에 대한 정책대응 필요

둘째, 국내 유원시설업의 질적 낙후로 인한 국민의 욕구에 질적 부응책 필요

셋째, 유원시설업의 한국화 및 관광매력의 미흡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취약심화 우려

넷째, 국내 유원산업 시장의 외국자본화 가능성 우려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제2장 국내 유원시설업 운영현황

제1절 법제도 현황

1. 법제 현황

가. 유원시설업의 정의 및 분류

1) 관광진흥법 상의 유원시설업의 정의

관광진흥법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며,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은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된다.

<표 2-1> 유원시설업의 구분

구분	정의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를 6종류 이상 설치, 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 을 설치, 운영하는 업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를 설치, 운영하는 업

자료: 관광진흥법 시행령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유원시설업의 분류⁵⁾

2000년 1월 7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신 분류로 유원시설업은 대분류 상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의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으로 분류(분류 코드: 88)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있다.⁶⁾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산업분류코드: 88992)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여기에는 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이 포함된다.

제외) 유원지 이외의 공원운영

나. 유원시설업과 유사한 업의 정의

관광산업에서 유원시설업과 비슷한 업으로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종합휴양업(제1종, 제2종), 전문휴양업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유원지업이 있다. 이들의 정의를 보면 유원시설업과 서로 배타적인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실제적으로 독립적인 정의를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1)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종합휴양업(제1종, 제2종) 및 전문휴양업의 정의

5)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stat/indclass/k-industry.htm

6)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된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은 관광진흥법 상 휴양업이나 체육시설인 콘도나 스키장을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이를 유원시설업 만으로는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2-2> 종합휴양업(제1종, 제2종) 및 전문휴양업의 정의

구분	정의
전문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 또는 음식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농·어촌휴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등 별표1의 제4호 가목 (2) (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시설 또는 종합 유원시설업 시설 중 2종류 이상 의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시설 또는 종합 유원시설업 시설 중 2종류 이상 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료: 관광진흥법 시행령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유원지’의 정의⁷⁾

“유원지”라 함은 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 시설로서의 유원지를 말한다.

유원시설업과 관련된 유원지의 결정기준 및 시설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원지에 대한 결정기준

- 도시내 공간의 적절한 활용, 도시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이 미화 또는 자연환경보전 등의 효과를 지양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 규모는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여야 하며, 6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 유원지 안에서 유원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유원지 면적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유원지 안에서 유원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상연면적의 합계의 유원지 면적에 대한 비율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

7)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중 ‘종합법률정보’에서 참고.

② 유원지의 설치기준⁸⁾

- 연령층과 성별의 구분 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유원지시설을 집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유희시설(어린이용 위주 및 가족이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로는 어린이열차·어린이전차·어린이비행기·무한궤도차·회전보트·회전목마·요술의집·전자오락실·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기타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 유원지 중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테마파크의 정의

일정한 테마(주제)에 입각하여 유기시설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체의 환경 만들기와 쇼 또는 이벤트 등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공간전체를 연출하여 제공하는 시설로 만들어진 유원지(Leisure land or Leisure park) 내지는 레저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⁹⁾ 테마파크가 유원지에 대한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기계진흥협회 경제연구소, 1996).

- 테마성(테마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하드와 소프트 전체에까지 테마가 나타날 것)
- 비일상성(탈·초공간서비스일 것)
- 주목적성(이용자의 행동에서 주목적이 될 수 있는 것만의 매력이 큰 것을 가지고 있을 것)
- 체류성(상당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활동 메뉴가 갖추어져 있을 것)

8) www.moleg.go.kr/docs/glawdoc/law_a.html (제60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9) 임상오(1999.2), '지역발전과 테마파크 산업의 진흥', 『재정정책논집』 창간호, 한국재정정책 학회, p.151

4)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의 정의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바'목에 의하면 유기장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으로 컴퓨터게임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기타유기장업으로 구분된다.

<표 2-3> 유기장업의 구분

구분	정의
컴퓨터게임장업	전자유기기구 또는 체력용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유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위락지 등에서 주행식유기기구, 고정식 유기기구, 스포츠·관람형 유기기구를 각 2종이상 설치·운영하는 영업
기타유기장업	주행식 유기기구, 고정식유기기구, 스포츠·관람형 유기기구, 기타 놀이에 이용되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영업, 다만, 종합유원시설업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료: 공중위생법 시행령

5) 기타 유원시설업과 관계된 법령들

유원시설업과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보면 현행 유원시설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도시계획법, 도시 공원법, 자연공원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률이 30여 개에 이르고 있고 허가관계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관 부서도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

2. 산업지원 현황

가. 일반지원 현황

1) 조직 현황

종래의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된 이후 유원시설업과 관련된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정부의 조직으로는 문화관광부 관광국 국민관광과가 맡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는 각 시·도 관광과가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원시설

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는 시·군·구청의 관광계 내에 유원시설 담당이 있어 유원시설의 인·허가 및 행정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2) 금융지원 현황

‘99년 2월 이후 정부의 유원시설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 ’99년 및 2000년에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 안전성검사 장비 구입자금으로 각각 1억 원 및 1억 5천 만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유원시설업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00년 관광개발진흥기금에 유원시설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켜 정책적으로 유원시설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기준 설정의 비 구체성과 담보부족에 따른 신청회피 등으로 지원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표 2-4> 유원시설 관련 금융지원 내용

년도	지원 내용	금액	비고
1999	유원시설 안전기준 마련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안전성검사 장비 구입 자금	1억 원	협회 지원
2000	안전성검사 장비구입 자금	1억 5천만 원	협회 지원
	관광개발진흥기금	-	실적 없음
2001	안전성검사 장비구입 자금	2억 원	협회 지원 예정

자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자료, 2000. 8.

<표 2-5> 관광진흥개발기금 내 유원시설업 지원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국민관광진흥사업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선정 규모	35,252	
융자 규모	20,737	
신청 자격	2000.7.1일 현재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자(유원시설업)	
융자 한도	2000년 하반기 융자대상 소요자금의 50%이내(업체별 최고 80억원)	
융자 금리	연 6%	
융자기간(거치기간)	9년(4년)	6년(2년)

나. 기타지원 현황

유원시설업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와 ‘새천년 관광투자조합’을 유원시설업과 관련하여 동 정책에는 우수 유기기구 개발사업 등을 지정, 육성한다는 근거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의 부족 등으로 실적은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다.

<표 2-6> 유원시설업과 관련된 관광벤처지원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p>새천년 관광투자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명: 새천년관광국민15호투자조합 ◦ 투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벤처기업 제외업종 미포함) - 기타: 우수관광기념품개발사업, 우수유기기구개발사업, 주제공원기획·개발사업, 관광컨설팅사업 등 - 중점투자분야: 관광기념품개발·제조·유통사업, 주제공원(테마파크) 개발사업, 관광컨설팅사업 및 사이버여행사업 등 ◦ 조합존속기간: 5년 ◦ 동일업체 투자한도: 5억 원
<p>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법 시행령 제2조</p>	<p>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으로서 관광중소기업 중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공원, 국제회의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독특한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사업 중 당해 사업의 매출실적 증가율이 전년대비 300% 이상인 사업 ◦ 관광사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기타: 우수관광기념품개발사업, 우수유기기구개발사업, 주제공원기획·개발사업, 첨단기술 및 매체활용여행사업, 관광컨설팅사업 등

자료: 김덕기·유지윤, “관광벤처기업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9.3, pp.22-23과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www.mct.go.kr 중 ‘열린자료방’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3. 조사·연구지원 현황

현재까지 유원시설업과 관련된 조사·연구로는 <표2-7>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정부는 유원시설업의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99년에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를 통해 “유원시설 안전기준마련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 현재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유원시설업 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한편,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인 “유원산업 진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식 전환’, ‘관광진흥법으로의 이관’, ‘기금의 지원문제’ 및 ‘안전성 검사제도 정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중 ‘관광진흥법으로의 이관’과 ‘기금의 지원문제’는 동 법이 '99년 2월자로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에 포함되었고, 2000년 하반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대상에 유원시설업을 포함시킨 바 있다.

<표 2-7> 유원시설업 관련 연구 세미나 및 보고서

구분	년도	주제	주관
세미나	1997.11	“유기장업 육성발전”	문화체육부
	1997.11	“한국형 테마파크 개발촉진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12	“유원산업의 진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부
	1998.11	“공원·유원지내 놀이시설 안전실태조사”보고서	소비자보호원
	1999.12	“유원시설 안전기준 마련 연구결과 보고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2000.10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제2절 국내 유원시설업 운영현황

1. 유원시설업의 특성

우리 나라의 유원시설업은 유원지(Leisure Park)와 테마파크(Theme Park)의 중간정도인 놀이공원(Amusement Park) 형태를 나타내는데, 외국의 경우 어뮤즈먼트 파크와 테마파크를 같은 입장에서 기술하는 바¹⁰⁾ 본 연구에서는 유원시설업의 특성을 테마파크의 특성과 같다는 전제하에 유원시설업의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우리 나

라 유원시설업에 적용한 시사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원시설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의 회임율이 장기적이고 설립 초기에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자본장치 산업이다.

둘째, 유원시설업은 영화, 디자인, 음악 등과 같은 영상산업과 과학 기술산업 등이 결합된 종합적인 산업이며,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되는 기술 집약적 첨단산업이다.

셋째, 수요자의 수요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지식기반산업이다.

넷째, 유원시설업은 실외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절산업이며, 이로 인한 영향요인으로 경영상의 불안전성이 있는 산업이다.

다섯째, 운영상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 인적서비스 산업이다.

2. 이용객 현황 및 시장규모

유원시설업 관련 이용객 현황 및 시장규모 산출은 등록된 전체 유원시설업체의 방문객 수와 각 업체별 객단가에 의해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유원시설업의 전체입장객 수 및 객단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국민관광여행 실태조사의 ‘당일관광여행 참가횟수’와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객 방문율’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 전체 유원시설업의 입장객 수 및 시장규모를 예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예측한 추정치는 우리 나라 전체 유원시설업의 이용객 및 시장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 유원시설업체 이용객 현황¹⁾

10) 문화체육부, “유원산업의 진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1997. 12. pp.99-107

11) 유원시설업체의 이용객현황에 대한 자료는 업체별로 자료의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전체 놀이시설 이용객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출처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10개 업체의 이용객 현황조사로 전체 놀이공원의 이용객 현황을 대변하는 데에는 다소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국민여행 실태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이용객 수에도 정확한 놀이공원 방문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자료로 활용하는데는 다소 부정확한 면이 없지 않다.

유원시설업체의 연도별 이용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전체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이용객 현황은 정확한 통계로 집계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원의 ‘연도별 놀이시설 이용자 수’¹²⁾도 정확치 않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원시설업체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97년 이후 파악된 이용객현황과 다른 한편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국민여행 실태조사’보고서의 “당일관광여행 참가횟수(천명)와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객 방문율(%)을 기초로 하여 1980년 이후 이용객 수를 산정해 보았다.

1) 10개 업체를 이용한 연도별 놀이시설 이용자수

10개 주요 유원시설업체를 찾는 방문객은 '91년 14,583천 명에서 '99년에 24,451천 명으로 증가했으나, '98년은 IMF를 겪으면서 놀이공원을 방문한 방문객의 수가 '97년 대비 19.2% 가까이 하락한 22,247천 명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99년에 들어와서는 '98년 대비 9.0% 상승한 24,451천 명을 나타내고 있어 점차 IMF를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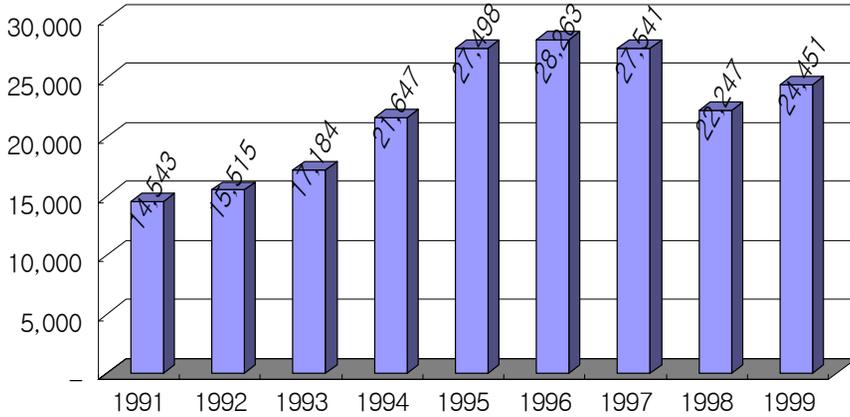
<표 2-8> 10개 업체 연도별 놀이시설 이용자 수

(단위: 천명)

연도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이용자수	14,583	15,515	17,184	21,647	27,498	28,263	27,541	22,247	24,451

자료: 각 업체별 내부자료를 조사하여 연구자 재구성, 2000. 5 현재.

12) 소비자 보호원의 연도별 놀이시설 이용자 수 조사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유원산업’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를 재조사한 바로는 ‘유원산업’회보에 실린 업체수가 국내 유원시설업체 전부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지 않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자료로서의 기술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림 2-1> 10개 업체 연도별 놀이시설 이용자 수

다음의 <표 2-9> 및 <표 2-10>은 방문객현황을 공개한 주요 유원시설업체의 '91년 이후 연도별 방문객현황 및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 2-9> 연도별 주요 유원시설업체의 입장객 현황(천명)

연도 업체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롯데월드	4,531	4,605	4,477	4,465	5,309	6,079	5,969	5,677	6,557
드림랜드	1,319	1,411	1,290	1,566	1,450	1,396	1,536	1,109	935
우방타워랜드	-	-	-	-	2,729	781	2,913	2,198	2,504
송도유원지	1,130	1,090	1,010	1,030	880	840	834	629	574
광주패밀리 랜드	481	765	725	869	946	1,061	1,068	839	802
꿈돌이 동산	-	-	-	2,102	3,112	1,821	721	600	639
서울랜드	2,819	2,834	2,649	3,369	3,393	3,079	3,214	2,444	2,573
에버랜드									
캐러비안베이	-	-	-	-	-	-	1,054	934	1,155
페스티벌 월드	4,300	4,810	5,112	5,800	6,842	7,391	7,700	5,931	6,645
통도환타지아	-	-	821	1,258	1,478	1,525	1,399	1,152	1,182
경주월드	-	-	1,100	1,190	1,359	1,366	1,133	33	883
총 계	14,580	15,515	17,184	21,649	27,498	25,339	27,541	22,247	24,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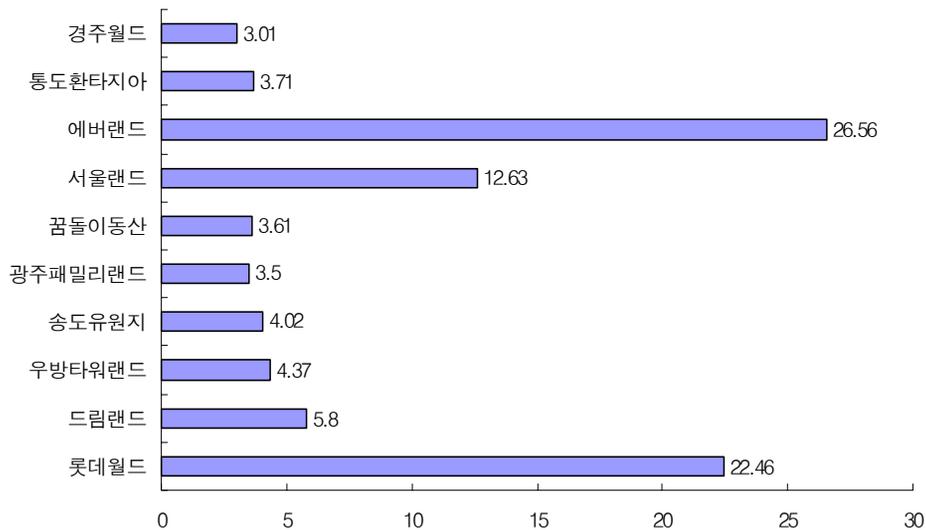
자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자료, 2000. 5

<표 2-10> 연도별 주요 유원시설업체의 시장 점유율(%)

연도 업체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롯데월드	31.07	29.68	26.05	20.62	19.31	23.99	21.67	25.52	26.82
드림랜드	9.05	9.09	7.51	7.23	5.27	5.51	5.58	4.98	3.82
우방타워랜드	-	-	-	-	9.92	3.08	10.58	9.88	10.24
송도유원지	7.75	7.03	5.88	4.76	3.20	3.32	3.03	2.83	2.35
광주패밀리 랜드	3.30	4.93	4.22	4.01	3.44	4.19	3.88	3.77	3.28
꿈돌이 동산	-	-	-	9.71	11.32	7.19	2.62	2.70	2.61
서울랜드	19.33	18.27	15.42	15.56	12.34	12.15	11.67	10.99	10.52
에버랜드	-	-	-	-	-	-	3.83	4.20	4.72
랜드 페스티벌 월드	29.49	31.00	29.75	26.79	24.88	29.17	27.96	26.66	27.18
통도환타지아	-	-	4.78	5.81	5.37	6.02	5.08	5.18	4.83
경주월드	-	-	6.40	5.50	4.94	5.39	4.11	0.15	3.61
총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자료, 2000. 5

'99년 기준으로 10개 유원시설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에버랜드 31.9%, 롯데월드 26.82%, 서울랜드 10.52%, 우방타워랜드 10.24%로 이들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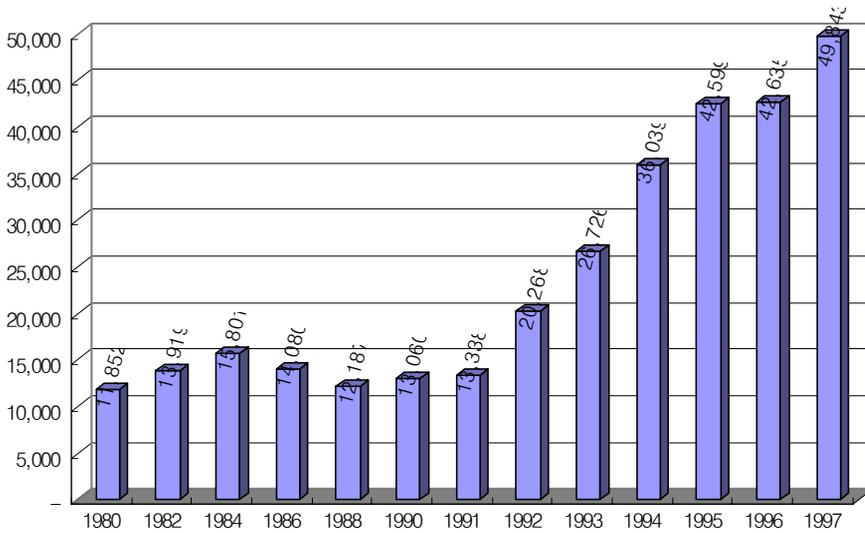
<그림 2-2> 주요 10개 업체의 평균 시장점유율

2)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기초한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이용자 수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국민여행 실태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자 수를 추정한 결과 1980년 이후 1997년까지 평균 6.9% 성장한 것으로 산정 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 수는 1980년의 1,185만 명에서 1997년에는 4,984만 명으로 5배 가까운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연도별 놀이시설 이용자 수

년도	당일관광여행 참가횟수(천명)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방문율(%)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자 수(천명)	증가율
1980	44,556	26.6	11,852	
1981	49,410	26.1	12,908	8.18
1982	54,265	25.7	13,919	7.26
1983	59,119	25.2	14,883	6.48
1984	63,973	24.7	15,801	5.81
1985	59,444	25.2	14,965	-5.59
1986	54,895	25.7	14,080	-6.28
1987	50,355	26.1	13,155	-7.03
1988	45,816	26.6	12,187	-7.94
1989	48,858	26.2	12,776	4.61
1990	50,378	25.9	13,060	2.18
1991	51,899	25.7	13,338	2.08
1992	81,397	24.9	20,268	34.19
1993	110,894	24.1	26,726	24.16
1994	127,798	28.2	36,039	25.84
1995	177,497	24.0	42,599	15.40
1996	192,048	22.2	42,635	0.08
1997	204,276	24.4	49,843	14.46
1998	169,391	25.0	42,348	-15.04
1999	134,505	25.6	34,433	-18.69



<그림 2-3>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기초한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자 수

10개 업체의 연도별 놀이시설 이용자 수와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기초한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자 수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IMF 경제위기 상황이었던 ‘98년에는 이용자 수가 공통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99년의 경우 10개 업체의 이용자 수는 ‘9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는 ‘98년에 이어 ‘99년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IMF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유원시설업은 이용 총량 기준으로는 감소했지만 전체 놀이공원 이용자 중 많은 수가 10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유원시설업은 10개 업체와 그 이외의 업체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중·소 유원시설업체 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 시장규모

유원시설업의 시장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원시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통하여 각 업체의 매출액과 유원시설의 신규구입 및 교체에 따른 시장창출효과를 합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원시설업 전체에 대한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액을 이용한 시장규모를 구할 수 없어 ‘99년도 유원시설업의

시장규모 산출은 한국관광공사의 '국민관광여행 실태조사'의 국민 당일관광여행 참가 회수를 기초로 하였다. 또한 '97년도에 선행 연구된 '유원산업의 진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기술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99년도 시장창출효과를 산정하였다.

1) 1996년 국내 유원산업의 시장규모¹³⁾

'유원산업의 진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1996년 국내 유원산업의 시장규모는 5,211억 원으로 추산하였으며, 시장규모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 시장규모산출: 유원시설업체의 매출액규모(3,782억원) + 놀이시설의 신규설치 및 증·개설에 따른 시장창출효과(1,429억원)
- 매출액 산출기준
 - 종합유원시설업체(28개 업체): '96년 입장객 수(3,425만 명) × 객단가(9,423원)
 - 객단가 산정은 입장객 수에 대한 가중평균
 - 기타유기장업: '96년 입장객 수(21개 업체, 707만 명) × 객단가(3,000원) × 2.62
 - 유원시설업의 총매출액은 최소 3,782억 원
- 시장창출효과
 - 신규업체의 놀이시설의 시장가치(1,206억 원) + 증·개설업체의 놀이시설 시장가치(223억 원)

13) 문화관광부, "유원산업의 진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1997. 11. pp.22-25

2) 1999년 국내 유원산업의 시장규모¹⁴⁾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국민관광여행실태조사’를 기초자료로 하여 1999년 국내 유원산업의 시장규모를 산출한 결과 9,901억 8,48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시장규모 추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 ‘99년 국민 당일관광여행 참가회수 = 1억3천4백5십만5천명
- ‘99년 당일관광여행 목적지 중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방문율 = 25.6%
- ‘99년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방문객 = 3,443만3천명
- ‘99년 당일관광여행 1회당 1인 평균지출 비용(교통비 제외) = 25,600원
- ‘99년 시장창출효과: 1,087억 원

↓

- ‘99년 시장규모산출 = (‘99년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방문객× ‘99년 당일 관광여행 1회당 1인 평균지출 비용) + ‘99년 시장창출효과

주) $y = (x_3 \times x_4) + x_5$

$x_3 = x_1 \times x_2$

x_1 = ‘99년 국민 당일관광여행 참가회수

x_2 = ‘99년 당일관광여행 목적지 중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방문율

x_3 = ‘99년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방문객

x_4 = ‘99년 당일관광여행 1회당 1인 평균지출 비용(교통비 제외)

x_5 = ‘99년 시장창출효과

y = ‘99년 시장규모

- 14) 1. 시장규모 산출에 있어서 전체 유원시설업체의 매출액 및 입장객 현황에 대한 자료수집이 불가능해 ‘99년 국민관광여행실태조사의 통계를 이용하여 국내 유원시설업의 시장규모를 추정
2. ‘99년 당일관광여행에 대한 교통비 통계를 구할 수 없어 임의로 ‘99년 당일관광여행 1회당 1인 평균 지출비용의 20%를 교통비로 책정함
3. ‘99년도 시장창출효과는 ‘96년도의 시장창출효과와 비교하여 산출함.

구분 연도	신규설치		증·개설 업체	
	놀이기구 종류(개)	시장가치(억 원)	놀이기구 종류(개)	시장가치(억 원)
1996	117	1,206	81	223
1999	75	773	114	314

3. 유원시설업계 현황

가. 국내 유원시설 개발현황

우리 나라의 유원시설업은 '60년대 창경원에 비행탑, 그네 등 단순한 기계를 설치, 운영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73년 어린이 대공원에 초보적인 코스타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한 것을 계기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76년 자연농원이 개장되면서 보다 발전된 시설들이 설치되었으며, '80년대 서울대공원과 드림랜드, 롯데월드 등 공원시설들이 연속으로 개발되면서 다양화되었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국민의 여가수요가 많아지면서 유원시설업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본 절에서는 유원시설 업체 이외에 관광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유원시설 개발업체를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나. 유원시설업체 현황

'2000년 7월 현재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유원시설업 현황을 보면 총 243개 업체가 있으며, 기종수는 약 1,025개로 전국적으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2> 시·도별 유원시설업 등록현황

지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종합유원시설업	4	2	3		2	2		4	2	2	2	1		2	5		31
일반유원시설업	5	10	6	10	4	1	4	32	18	7	8	11	3	3	2	4	128
기타유원시설업	5	4	5	7	1	6	4	12	8	7	7	1	5	4	5	2	84
합계	14	16	14	17	7	9	8	48	28	16	17	13	8	9	12	6	243

자료: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내부자료, 2000. 7.

<표 2-13> 유원시설업체 현황

구분	계	종합		일반		기타	
		수량	%	수량	%	수량	%
업체수	243	31	12.7	128	52.7	84	34.6
유기기구수	1,025	509	50	516	50	-	-

자료: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내부자료, 2000. 7.

국내 유원시설업체는 국민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소득의 증가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선 '95년 이후 '99년 현재 종합유원시설업체 30개, 일반유원시설업체 118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4> 연도별 유원시설업체 수의 변화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유원시설업체 수	108	122	131	138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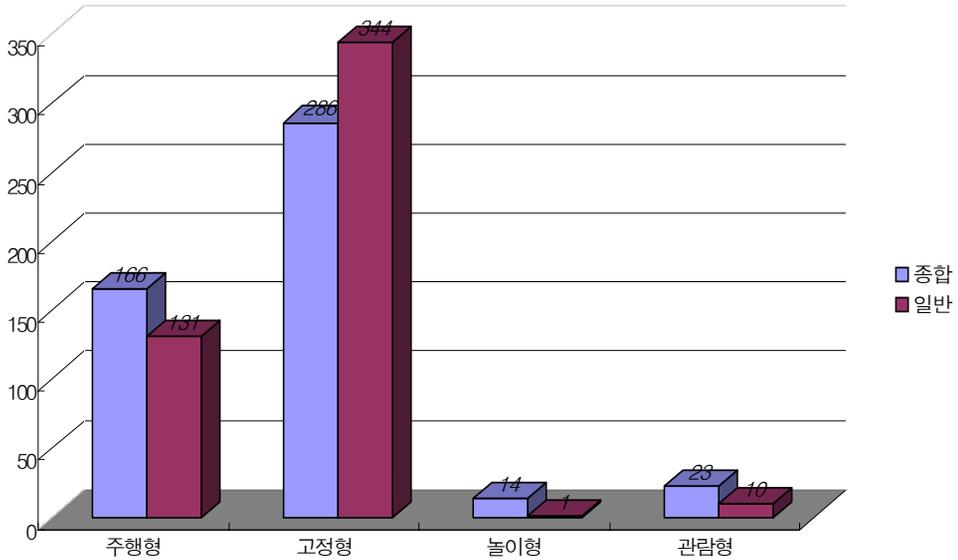
자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자료, 2000. 10. 연구자 재구성

'98년 현재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검사대상 유기기구 조사 결과 유형별로는 주행형, 회전형, 복합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전국적으로 약 90여종, 970여 제품이 설치, 보급되어 있다. 최근의 유기기구는 이용객의 호기심과 스타일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형화·첨단화된 새로운 놀이기구 기종이 매년 새롭게 설치, 보급되고 있다.

<표 2-15> 유기시설 종류별 현황

구분	계	종합		일반		기타	
		수량	%	수량	%	수량	%
주행형	297	166	56	131	44	-	-
고정형	630	286	45	344	55	-	-
놀이형	15	14	93	1	7	-	-
관람형	33	23	70	10	30	-	-
계	975	489		486		-	-

자료: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유원시설 안전기준 마련 연구결과 보고서”, 1999.12, p.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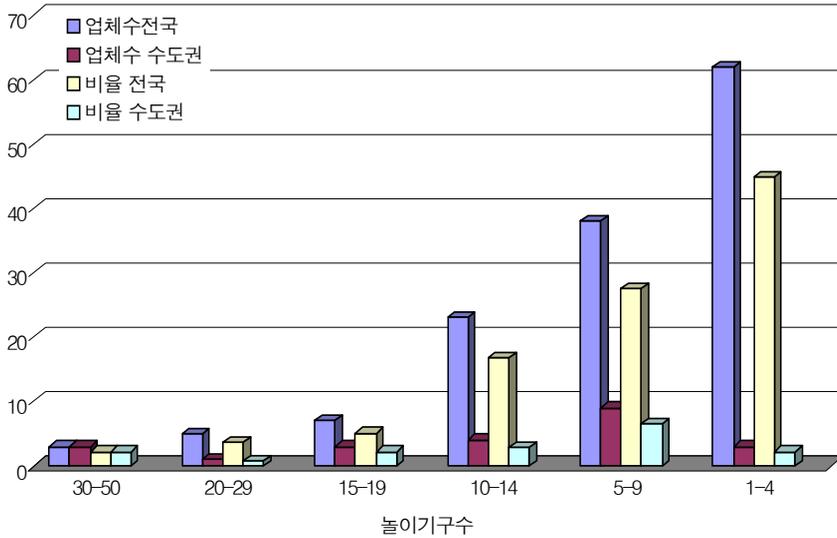
<그림 2-4> 유기시설 종류별 현황

'98년 10월 현재 안전성 검사대상 놀이기구 보유현황을 보면 10개미만 소유업체가 100개 업체로 전체의 72.5%이며, 4개 이하 소유업체는 62개로서 전체의 44.9%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영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16> 안전검사 대상 놀이기구 보유 현황

놀이기구수	업체수		비율(%)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30~50	3	3	2.2	2.2
20~29	5	1	3.6	0.7
15~19	7	3	5.1	2.2
10~14	23	4	16.7	2.9
5~9	38	9	27.5	6.5
1~4	62	3	44.9	2.2
계	138	23	100	16.7

자료: 소비자보호원(1998.11), 『공원·유원지내 놀이시설 안전실태 조사』, p.823



<그림 2-5> 안전검사 대상 놀이기구 보유현황

다. 유기기구 제작업체 현황

국내 유원시설업 관련 유기기구 제작업체 및 수출·입 업체는 20여 개 업체에 이르나 순수제작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놀이기구의 외국산 비율은 대략 75~80%에 이르고 있어,¹⁵⁾ 국산 유기기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 종합유원시설업협회 방문조사 결과 현행 유기기구 제작업체는 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체로 분류되어 있으며, 종래의 생산성이 없는 업체로 분류되어 있어 중소기업자금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유원시설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기기구 제작업체 실태 조사를 통해 제작업체의 기술수준을 파악한 후 각 업체에 맞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구 제작업체에 대해 법적인 규제완화, 기술이전, 자금 지원 및 세계완화 조치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구제작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5) 문화체육부(1997.12), 『유원산업의 진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p.12.

<표 2-17> 국내 유기기구 제조업체 현황

('99. 10. 25 현재)

지역	업체명	구분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주)삼정정기	유희시설기획, 설계, 제작 시공, 수출입, 판매	김영호	544-9182	강남구 논현동 90-7 영풍상호신용금고 301호
	(주)해동유기	유희시설 수출입, 기획 설계시공	현준수	845-6865	영등포구 대림3동 710-14동아빌딩 303호
	(주)사론 엔지니어링	유희시설기획, 중·대형시설 수출입	박무철	784-9741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203호
	(주)퍼시픽 어뮤즈먼트	유원시설기획, 설계 설치, 수출입	한세정	556-7855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 1509호
	(주)아세아 어뮤즈먼트	실외, 실내공원시설 의 수출입 설계	이중호	538-5591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 904호
	신우테마플랜	테마파크 마스터플랜, 다크라이드 기획설계 제작	조진형	565-3787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 1308호
	(주)파크마스타	유희공원컨설팅, 기획설계 마스터플랜, 사업성검토	박노철	558-0802	강남구 역삼동 688-1 동원빌딩 402호
	(주)유성 스테이지	종합유희시설기획, 설계 제작시공, 종합무대시스템	유성철	689-6489	구로구 고척동 103-4 산 업용품상가 가-274
	다해인터 내셔널(주)	공원기획, 유원시설 수출 입, 제작설치, 시설투자	김복영	846-6757	송파구 방이동 45-2 금복빌딩 806호
부산	파워레저	각종소형유희시설 및 카니발 오락기계 제작	강원규	755-1369	수영구 민락동 35-8
	월드 엔지니어링	유희시설 기획, 설계, 설치 수출입	최정국	328-7960	사상구 학장동 717-5
	부광레저	중·소형 유희시설 제작시 공, SUS복고풍 기자	하덕근	863-4422	연제구 연산5동 1255-30
	한국레저	중·소형 라이드시설, 설계, 제작시공	김판덕	623-1664	남구 용호2동 산2번지
대구	신행유원 시설공사	유희시설경영, 설계, 제작 수출입	김공선	784-8706	수성구 지산1동 359-1
인천	엘림산업	유원시설기획, 설계, 제작, 시공, 수출입	원두연	567-8143	서구 경서동 372-3

<표계속>

지역	업체명	구분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인천	(주)인천텍스	유원시설기획, 설계, 제작, 시공, 수출입	박문섭	468-0102	남동구 구월동 286-10 대암빌딩 B-1
	R&C(알앤씨)	유원시설기획, 설계, 제작, 시공, 수출입	우종민	429-1244	남구 송의동 58-23
	대림공사	유원시설기획, 설계, 제작, 시공, 수출입	김창용	761-1046	중구 송월동2가 2-5
경기	대진기계	유원시설경영, 설계, 제작 시공	강승모	565-4790	김포시 검단면 불노리 698-3
	이-맥스	종합레포츠시설제조(랜드 시설, 전자오락기, 조정)	전성울	998-7100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437
	(주)태성레저	대·소형 라이드 시설설계, 제작시공	윤성구	64-3811	양주군 남명 상수리 18-1
	삼현시스템	대형놀이기구제작, 시물레이션, 멀티게임기제작	강성구	904-4604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63-3
	(주)한국유기	소형유기시설 사업경영, 제작판매 및 수출(일본)	정용철	672-6645	부천시 오정구 내동 138
	신기 엔지니어링	국내유일의 트램카 제작회사	박기동	284-0403	용인시 구성면 중리 31-3

자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자료. 199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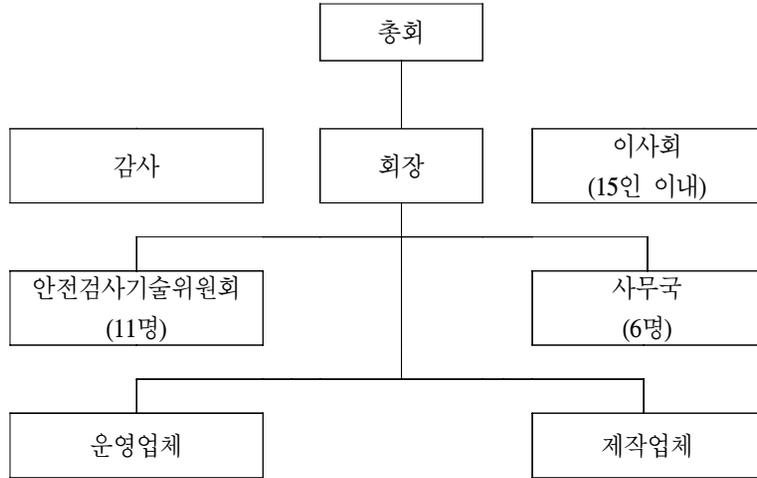
4.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현황

가. 설립목적

유원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회원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유원시설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함을 목적으로 1985년 2월에 설립하였다.

나. 조직 현황

1) 기구 현황



<그림 2-6>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조직도

2) 이사회 구성

현행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의 정관에 정해진 이사회구성은 회장 및 부회장 1인,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감사 2인, 상임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별도로 추가가능 임원수 8명을 명시해 놓고 있다.

3) 안전검사기술위원회

안전검사기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기술사, 교수, 전문인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안전검사기술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회장, 부회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8명이다.

4) 사무국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사무국의 구성인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는 교육 및 기획, 검사 및 자율지도, 안전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협회의 예산현황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연간 운영예산은 유기기구 검사비의 50% 중 검사대행자에 대한 인건비지급을 제외한 일부 수령, 그리고 회장, 부회장, 이사의 협조, 협회가입 회원업체의 년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99년의 경우 '유원시설 안전기준 마련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안전검사 대상 장비구입 목적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1억 원을 보조 받았으며, 2000년도 안전성검사 장비구입자금으로 1억5천만 원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 받은 바 있다.

<표 2-18>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만원)

연도	수입	지출
1995	9,769	8,279
1996	14,360	11,053
1997	32,172	29,656
1998	36,744	32,137
1999	47,679	34,137
2000	50,642	50,642

자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자료. 2000. 7.

<표 2-19> 1999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수입/지출 내역

수입내역	지출내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료 70% ◦ 비대상확인료 9% ◦ 회비 8% ◦ 교육비 3% ◦ 전년도 이월금 7% ◦ 미수금 1% ◦ 광고료 0.9% ◦ 수입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비 60% ◦ 일반관리비 9% ◦ 인건비 9% ◦ 교육비 4% ◦ 관공비 0.9% ◦ 회지발행 0.8% ◦ 관협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사무실 전세금이 6000만원으로 사무실 확보 기금 마련중

라. 주요 사업내용

‘협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 국내·외 산업정보 수집 및 정보 교환, 관광진흥법에 의한 위탁 업무, 유원시설업에 대한 자율지도 운영, 유원시설업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대정부 건의 등이 있다. 그러나 협회의 수입 및 지출 관련 예산측면을 보면 안전성검사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마. 전체 유원시설업 관련 사업체 현황 및 가입현황

현재 ‘협회’에 정식으로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업체비율은 유원시설업 운영 및 제작 업체 전체 251개 업체 중 36.25%인 91개 업체만이 ‘협회’에 가입하여 있다. 안전성 검사대상 유원시설업체인 종합유원시설업체와 일반유원시설업체의 가입비율을 구분해 보면 종합유원시설업체는 전체의 93.33%인 28개 업체가 가입해 있으나 일반 유원시설업체는 전체의 38.98%인 46개 업체만이 가입해 있어 사업자단체로서의 대표성과 실행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2-20> 전체 유원시설업 관련 사업체 현황 및 가입 현황

(2000. 3. 31 현재)

구 분	계	회원사	비회원사	가입비율(%)	비고
종합유원시설업체	30	28	2	93.33	휴업1(회원사)
일반유원시설업체	118	46	72	38.98	검사 대상시 시설운영
기타유원시설업체	75	6	69	0.80	
소계	223	80	143	35.87	
시설제작업체	28	11	17	39.29	
합계	251	91	160	36.25	

자료: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내부자료, 2000. 5.

5. 유원시설 안전사고 현황

가. 안전성검사제도

유원시설업에서 운영되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시 행정검사와 ‘협회’의 년 1회 정기 안전성검사제도로 이원화되어있다.

1) 안전성검사에 대한 관련법규¹⁶⁾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점검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5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위탁기관과 안전성검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선정되어 있다.

2) 안전성검사 시행절차

우리 나라의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신규로 유기시설물을 설치하는 운영업체, 유기시설 제작업체 또는 유기시설 수입업체에 대한 설치 이전의 허가전 검사로 구분한다.

나.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안전사고 조사 현황¹⁷⁾

1) 연도별 사고발생 현황

유기시설의 사고는 사고 발생 시 유기시설 운영업체 영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되는 바 사고자체를 은폐하고 사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기에 사고를 무마시킴으로서 정확한 사고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¹⁸⁾ <표 2-21>에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유기시설의 사고건수 및 사고자수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망자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시설의 사고발생률은 높다고 볼 수 없으나 전체 유기시설 사고 중 20% 정도

16) 문화관광부,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유원시설 안전기준마련 연구결과 보고서”, 2000. 7. pp.9-11

17) 문화관광부·(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0.7), 전개서, pp.158-169.

18) 문화관광부·(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0.7), 전개서, p.158.

가 사망사고로 여타 사고에 비해 발생수치는 낮으나 발생건수에 비해 인명피해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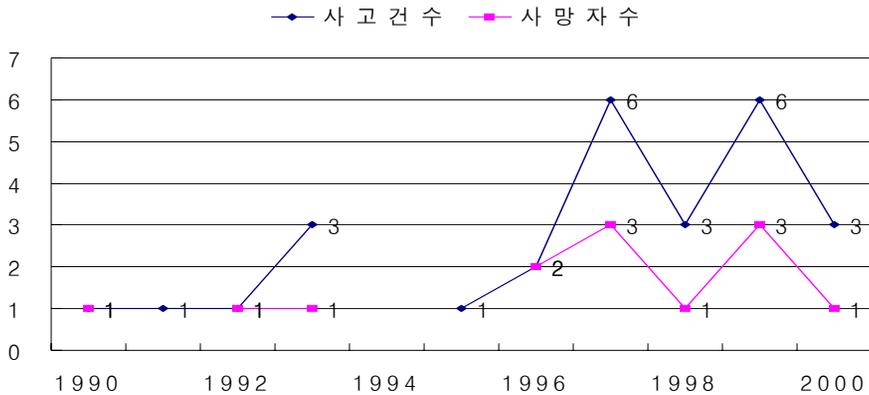
<표 2-21> 연도별 사고발생 현황

(2000년 8월 현재)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업체 수		-	-	89	91	96	108	122	131	138	148	-	-
사고건수		1	1	1	3	-	1	2	6	3	6	3	27
사고 발생 현황	사망자 수	1	-	1	1	-	-	2	3	1	3	1	13
	중경상자 수	-	-	-	12	-	-	2	2	2	32	8	59
	계	1	-	13	1	-	1	4	5	3	35	9	72

자료: 1. 문화관광부·(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0.7), 『유원시설 안전기준마련 연구결과 보고서』, p.160.

2. 문화관광부 2000년 국정감사자료 참고



<그림 2-7> 연도별 사고 건수

2) 유기사설 종류별 사고현황

유기사설 사고의 대부분은 고정형과 주행형에서 발생하였으며, 원인으로서는 회전형 유기사설의 대부분이 고속 회전형으로 회전 시 발생하는 원심력으로 안전벨트 탈락과 고속회전력에 의한 부재 파손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 대다수이다.¹⁹⁾ 따라서 고속회전을

19) 문화관광부·(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전개서, 2000. 7. p.161

하는 유기사설은 안전벨트가 생명이며 주기적인 점검, 정비를 통하여 상시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임을 알 수 있다.

<표 2-22> 유기사설 종류별 사고의 분류

(2000년 8월 현재)

계		고정형	주행형	관람형	놀이형
수량	27	16	10	1	-
%	100	59.26	37.04	3.70	-

자료: 1. 문화관광부·(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0.7), 『유원시설 안전기준마련 연구결과 보고서』, p.161.

2. 문화관광부 2000 국정감사자료 참고

3) 사고의 유형별 원인

사고원인 전체의 66.7%는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과실로 나타났다. 유기사설 운영업체에 대한 과실은 유기사설 탑승 시 사고유발 물건 등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은 채 탑승 시키거나, 일일점검 불량, 운행관리의 미숙에 따른 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 유기사설은 탑승자가 음주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탑승시키는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

<표 2-23> 사고 원인별 분류

(2000년 8월 현재)

구분	불안전한 행동(인적인 면)	불안전한 환경(시설적인 면)	천재지변
건 수	18	9	-
%	66.67	33.33	-

자료: 1. 문화관광부·(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0.7), 『유원시설 안전기준마련 연구결과 보고서』, p.161.

2. 문화관광부 2000 국정감사자료 참고

4) 관리적 측면의 원인

전체사고의 66.7%가 운영규정 미 준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기사

시설의 운행 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발생시 대형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영규정만 지켜도 상당수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겠다.

<표 2-24> 관리 원인별 사고 분류

(2000년 8월 현재)

구분	계	운영규정미준수	점검, 정비 불량	기타
사고발생건수	27	18	7	2
%	100	66.67	25.93	7.40

자료: 1. 문화관광부·(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0.7), 『유원시설 안전기준마련 연구 결과 보고서』, p.162.

2. 문화관광부 2000 국정감사 자료 참고

5) 발생형태별 사상자 수

사고 행태별 사상자수는 대다수 추락과 충돌로 나타나고 있는데 산재분류상 추락과 충돌은 대형사고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유기기구에서의 사고는 당사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5> 발생 형태별 사상자수 현황

(2000년 8월 현재)

구분	계	추락	충돌	협착	기타
건 수	27	11	7	3	6
%	100	40.74	25.93	11.11	22.22

자료: 1. 문화관광부·(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0.7), 『유원시설 안전기준마련 연구 결과 보고서』, p.163.

2. 문화관광부 2000 국정감사자료 참고

6) 발생 월별 사상자 현황

2000년 8월 현재 월별 사고 발생율은 7월에서 10월 사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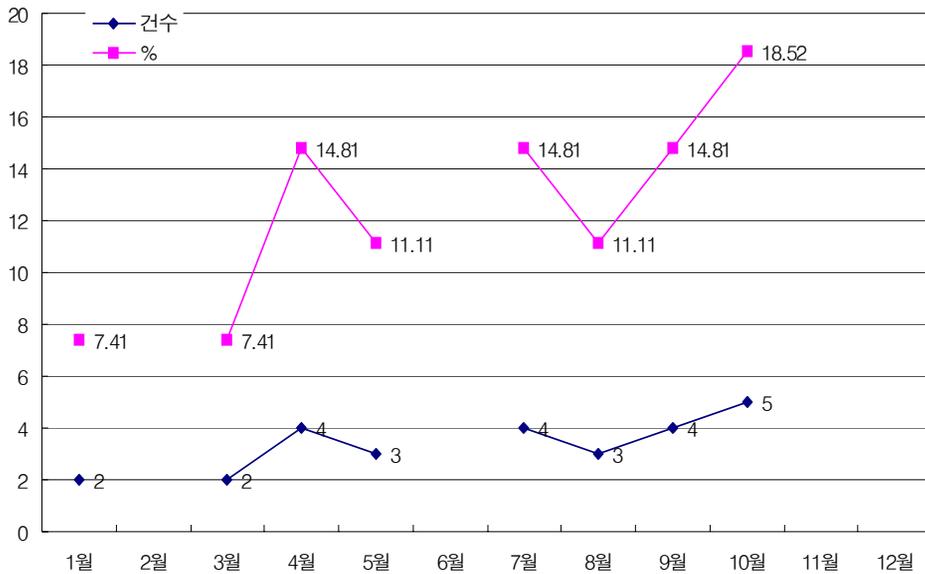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월에서 5월까지이다. 3월에서 5월까지의 사고는 동절기 유기시설 점검, 정비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하절기인 7월에서 10월까지의 사고는 운영자의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운행 전 각종 점검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 그러나 역시 이기간은 유원시설 이용자가 급증하는 시기와 동일하여, 월별 사상자 수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표 2-26> 발생 월별 사상자 현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수	2	-	2	4	3	-	4	3	4	5	-	-
%	7.41	-	7.41	14.81	11.11	-	14.81	11.11	14.81	18.52	-	-

자료: 1. 문화관광부·(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0.7), 『유원시설 안전기준마련 연구 결과 보고서』, p.164.

2. 문화관광부 2000 국정감사자료 참고



<그림 2-8> 발생월별 사상자 현황

7) 안전사고의 내용현황

한편, 국내 유원시설에서의 사고내용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표 2-27> 국내유기시설 안전사고 현황

유기시설명	발생년월	내 용	원 인	상해정도
비룡열차	90.10(일) 17:50	술취한 손님이 운행중 운행이 끝난 것으로 오인하여 안전벨트를 풀고 내리다가 난간에 부딪쳐 바닥에 떨어지면서 뒷목을 다쳐 후송 입원치료중 사망함.	운행관리 미숙	사망 1명 (남42세)
회전비행기	91. 8(토) 15:00	임시고용원이 운행하던중 운전좌석 뒷 부분에 위치한 샤프트 연결부분에 왼쪽손이 빨려 들어갔음	본인 부주의	중상 1명 (남20세)
루프코스타	92. 8(일) 10:50	피해자가 사진촬영차 펜스가 설치된 출입금지 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 궤도에서 사진찍을 자세를 취하던중 운행중인 승용물에 부딪혀 사망함	운행관리 미숙	사망1명 (남39세)
회전비행기	93. 5(일) 14:40	시운전운행중 기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임시고용인이 기계를 잘못 조작으로 비행기 1대가 펜스에 걸려 떨어져 안에 탑승했던 7명이 타박상을 입었음	운행관리 미숙	경상7명
제트코스타	93.8(일) 21:15	우선 진행차량이 1차 브레이크 시스템의 제동으로 정지하여 홈에 대기중인 차량을 진행시키는 중 에러발생 자동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 차량을 계속하여 진행시켰으나 홈 전방에 정지된 차량을 수동방식에 의하여 홈으로 유도하였어야 하는데 수동방식으로 전환한 것을 착각하고 자동으로 홈에 유도될 것으로 생각하여 수동조치하지 않아 추돌한 사고임	운행관리 미숙	경상5명
루프코스타	93.9(일) 17:30	일반인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여 레일을 걷다가 유기기구와 충돌	운행관리 미숙	사망1명 (남7세)

<표계속>

유기시설명	발생년월	내 용	원 인	상해정도
해피스카이	95.7(월) 15:30	상관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래부분 승물에 부딪치고 정면에 설치된 보호 철책안으로 떨어졌으나 마침 철책에 기대어 다른 유기기구를 관람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덮쳐 척추에 부상을 입혔음	시설물 결함	중상1명 (남42세)
매직댄스	96. 4(일) 21:30	정원이 2명인데도 승용물에 3명을 탑승시켜 운행하던 중 회전축과 승물 좌석 아래 부분을 얹어놓은 4각 파이프와 철판이 부러지면서 좌석인 플라스틱은 튕겨 빠져나가고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손잡이가 꺾이면서 가슴을 심하게 타박 당해 사망	시설물 관리 미숙	사망1명 (여21세)
거북선	96.10(수) 21:30	서로 먼저 타려고 밀치며 승용물에 탑승 중 승용물 밖으로 떨어지면서 철근 지지대에 머리를 다쳐 사망함	본인 부주의	사망1명 (남10세)
터미네이터	97.3(일) 14:30	좌석고정 안전봉 핀이 빠지면서 승객의 허리 부분의 안전벨트가 풀려져 이용객이 6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임	시설물 관리 미숙	사망1명 (여21세)
점핑스마일	97.5(목) 13:43	이용객이 술을 마신 상태로 안전벨트를 푸는 것을 본 운행자가 기계를 정지하는 순간 피해자가 떨어져 부상당한 사고임	운행 관리 미숙	사망1명 (남54세)
인디애나 존스	97.7(일) 15:30	시설물 운행 중 어린이 알루미늄 풍선이 동력선과 접촉 정전되어 시설 작동이 정지됨	시설물 관리 미숙	없음 (10명)
타가다 디스코	97.7(화) 18:00	회전 운행하던 시설중심축의 파손으로 시설(객석부분)이 뒤쪽 벽에 충돌	시설물 결함	중상1명 경상1명
아폴로	97.9(화) 12:30	시설내부 부분품 파손으로 운행 중 작동이 정지, 119구조대 출동 안전하강 시킴	시설물 결함	없음 (31명)
댄싱플라이	97.9(목) 15:00	본인이 운행하는 시설을 가동시키고 부주의로 시설 하단부에 상체를 심하게 부딪힘	본인부주 의	사망1명 (여36세)
회전비행기	98.5(화) 14:30	시설내부 고정장치인 부품이 떨어져 키1개가 빠져 작동이 정지됨	시설물 관리 미숙	없음 (6명)
타카다 디스코	98.9.4 14:30	탑승 중 운전자의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	운행자 관리 미숙	경상1명
문어댄스	98.10(목) 11:10	운행자가 피해자 안전바를 착용 않은 것을 확인 못하고 운행함	운행자 관리 미숙	사망1명 (여36세)

<표계속>

유기시설명	발생년월	내 용	원 인	상해정도
원형회전관	99.1(목) 12:45	피해자가 주의를 무시하고 좌석을 이탈 이동하는 스테이지 기둥과 칸막이 사이에 머리를 끼어 부상	운행자 관리 미숙	중상1명 (여9세)
비룡열차	99.1(목) 14:50	피해자(정신지체 장애자)가 안전바 틈으로 빠져 나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짐	운행자 관리 미숙	중상1명 (여18세)
다크라이드	99.4(금) 20:40	유기시설이 동굴 속을 운행할 때 이용객 준수사항을 무시하고 갑자기 일어나 동굴 천정에 안면을 부딪힘.	본인 부주의	중상1명 (여18세)
무궤도열차	99.7(화) 13:43	관광 후 무궤도열차를 주차시킬 때 과속으로 급회전시켜 전복됨	운행자 관리 미숙	사망1명 중상7명 경상21명
타카다 디스코	99.10.5	이용객이 유기기구를 타던 중 손잡이를 놓쳐서 일어난 사고	운행관리 미숙	경상1명
비룡열차	99.10(화) 11:00	운행 중 앞좌석에 앉은 어린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은 사고임	운행 관리 미숙	사망1명 (남6세)
허리케인	2000.3.4 21:45	정원 40명인 허리케인에 사고당시 승객 6명을 태우고 운행 중 압과 승용물(곤도라)원판의 용접부분이 파손되어 승용물이 기계실 벽에 부딪치면서 중앙으로부터 12m 지점에 분리 이탈되어 승객 6명이 경상을 입게된 사고. 사고부위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위로 제작설치 시 용접 미비	시설물 관리 미숙	경상6명
하늘차	2000.4.28 12:20	하늘차 정류자 대기장소에서 1회 운행 완료 후 하차하고 내려가던 피해 어린이가 정류장으로 진입하는 후속차량으로 뛰어들어(친구가 타고 있었음) 정류장 벽과 차량외부 FRP에 낀 것을 긴급 조치하여 후송도중 사망.	운행자 관리 미숙	사망1명
뮤직 익스프레스	2000.4.30 17:20	승객 10명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뮤직익스프레스 5번 승용물이 시트 지주 용접부위가 탈락되어 승용물이 떨어지면서 탑승객이 경상을 입게된 사고임. 설계 및 제작불량으로 용접부 피로누적이 사고로 이어짐	시설물 관리 미숙	경상2명

자료: 1.문화관광부·(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0.7), 『유원시설 안전기준마련 연구 결과 보고서』, p.p.167-169.

2. 문화관광부 2000 국정감사자료 참고

나. 소비자보호원의 안전성검사 실태조사 현황

소비자보호원은 수도권 유원시설을 1997년에서 1998년까지를 대상으로 안전성검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 놀이시설 업체 수는 수도권지역이 약 39개 업체로 전체 시설의 1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용자수는 전체 이용자의 약 5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3개의 놀이시설업체의 놀이기구 중 스포츠·관람형 놀이기구는 제외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력구동형 놀이기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97. 1~'98.10월 말까지 공원·유원지 내에 설치된 안전대상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했으며, 동기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사망자가 3명, 부상자는 20여 명이나 되었으며, 209명 이상이 10여m 상공에서 놀이기구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으로는 고공에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6건(37.5%), 충돌사고가 2건(12.5%),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해 시설이 작동 정지된 사고가 8건(50%)으로 나타났다.

<표 2-28> 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현황

('97. 1~'98.10)

일시	사고장소	놀이시설	사고원인	피해내용
'97. 3.16	대천해변랜드 (충남 보령시)	터미네이터	기구가 360도 회전하던 중 안전 벨트가 풀어지면서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함	사망1명
'97. 5. 1	대천해변랜드 (충남보령시)	점핑스카이	기구가 수직으로 튀쳐오르는 중 안전 레버가 고장나 풀리면서 바닥으로 추락함	사망1명
'97. 5.25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시 유성구)	스카이붐붐	어린이 10여명이 6m 놀이의 풍선형 기구에서 놀다가 에어펜스가 넘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함	중상1명, 경상6명
'97. 7.13	인디아나존스 랜드 (인천시 중구 월미도)	인디아나 존스	놀이기구 작동 중 어린이 알루미늄 풍선이 동력선과 접촉 정전되어 시설작동이 정지됨	10명이 10m 상공에서 1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

<표계속>

일시	사고장소	놀이시설	사고원인	피해내용
'97. 7.29	월미마이랜드 (인천시 중구 월미도)	타가다 디스코	회전 운행하던 기구의 중심축이 용접 불량으로 파손되면서 탑승 석이 뒤쪽 벽에 충돌	중상1명, 경상8명
'97. 9.15	월미바다랜드 (인천시 중구 월미도)	스페이스 루프	운영자가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구 를 작동시켜 탑승자가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중상1명
'97. 9.16	서울랜드 (경기도 과천시)	우주유람선	기구가 360도 회전 중 시설내부 부품(주감속기 안의 베어링) 파손 으로 10m 높이에서 작동 정지	31명이 1시간 30분 동안 공중에 거꾸 로 매달려 있다가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
'97. 9.18	하니랜드 (경기도 파주시)	우주비행선	시설운영 아르바이트생이 시설을 가동시킨 채 혼자 점검수리를 하 다가 회전하는 시설하단부에 충 돌	사망1명
'97. 9.24	진해파크랜드 (진해시 여좌동)	알라디노	기구가 회전하던 중에 20m 상공 에서 정전으로 인해 작동 정지	2명이 20m 상공에 서 40분 동안 매달 려 있다 구조
'97.10. 3	서울랜드 (경기도 과천시)	개구쟁이 열차	어린이가 기구 작동 중에 좌석에 서 일어나서, 운영자가 기구를 급 정거시키는 바람에 가슴높이의 안전막대를 넘어 밖으로 튕겨 나 감	중상1명
'98. 3.29	서울랜드 (경기도 과천시)	블랙홀 2000	한국전력의 불시정전(10분)으로 인해 운행 중이던 시설이 작동 정지	24명이 15m 상공에 5-6분 정도 갇혀 있 다가 구조
'98. 4.25	강화랜드 (인천시 강화도)	점핑스마일	기구를 상승·하강시키는 조작버 튼의 접촉불량으로 전력이 차단 되어 일시 작동이 정지	42명이 4m 높이에 서 매달려 있다가 구조
'98. 5. 5	서울랜드 (경기도 과천시)	블랙홀 2000	탑승 대기중인 학생이 떨어뜨린 가방이 전자안전장치(센서)에 접 촉되어 기구가 자동 정지	24명이 10m 상공에 서 50여분간 갇혀 있다가 구조

<표계속>

일시	사고장소	놀이시설	사고원인	피해내용
'98. 5. 5	남이섬 어린이 놀이터(강원도 춘천시 남이섬)	회전비행기	기구 내부 고정장치인 부품이 떨어지면서 키 1개가 빠져 작동이 정지	6명이 지상 3m 위 치에서 30분 정도 갇혀있다가 구조
'98. 9.17	롯데월드(서울 송파구 잠실)	고공전투기	놀이기구 내부의 동력 과부하로 인해 전기부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작동 정지	70명이 공중에 45분 동안 매달려 있다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
'98.10.22	엑스포 놀이동산(경주시 천군동)	문어댄스	기구 작동 중에 안전레버가 고장나 풀리면서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중상2명

자료: 소비자보호원(1998.11), 『공원·유원지내 놀이시설』 안전실태 조사 부록.

제3절 유원시설업의 수요예측 및 파급효과

1. 개요

유원시설업에 대한 수요예측은 유원시설업체를 방문한 이용객의 정확한 통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유원시설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의 수요예측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국민여행 실태조사의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객'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수요예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객'을 유원시설업체 방문객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전체 유원시설업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수요의 증가추세를 보여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수요예측²⁰⁾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1998년 및 1999년은 IMF라

20) SAS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여 최적모형을 구함

는 특수한 상황으로 간주해 시계열분석에서는 제외시켰으며, 1997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8년까지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객의 평균 성장률은 7.98%로 나타났으며, 2003년 예상 이용객 수는 약 62,972천 명으로 '97년의 49,843천 명의 약 1.26배의 성장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에는 약 1.47배 성장해 전체 이용객 수는 약 73,460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9> 2000~2008년까지의 예상 이용자 수 및 증가율²¹⁾

년도	당일관광여행 참가횟수(천명)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방문율(%)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자 수(천명)	증가율
2000	169,390	22.4	37,943	10.19
2001	204,275	22.4	45,758	17.08
2002	241,822	22.4	54,168	15.53
2003	281,127	22.4	62,973	13.98
2004	302,415	22.4	67,741	7.04
2005	307,824	22.4	68,953	1.76
2006	321,778	22.4	72,078	4.34
2007	324,314	22.4	72,646	0.78
2008	327,948	22.4	73,460	1.11

주) 1. 수요예측은 '2차 관광개발 10개년 계획'의 국민 국내관광총량을 인용함.

Double(Brown) Exponential Smoothing, MAPE=6.8099

Damped Trend Exponential smoothing, MAPE=7.07599

Random Walk with Drift, MAPE=8.31089

Forecast Data Set, MAPE=8.57594

Linear(Holt) Exponential smoothing, MAPE=8.77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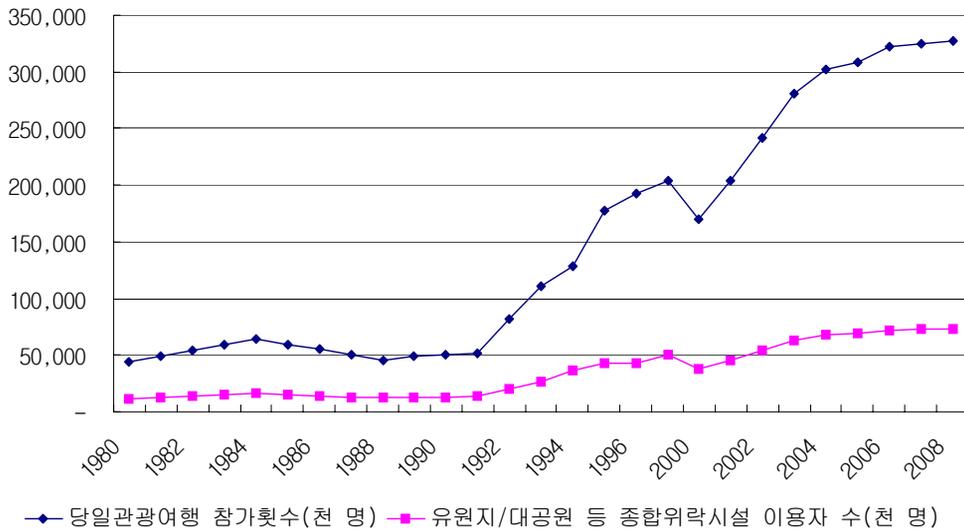
2. 국민국내관광 총량예측은 99년 수치를 제외하고 97년 수치까지만을 활용하였으며 99년에 감소된 총량이 2001년에는 97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예측을 실시함
3. 2000년 이후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방문율(%)'은 1991~ 1999년 방문율의 평균치

21) 1. 2000년 평균증가율의 급속한 증가는 '98, '99년의 IMF의 영향에서 회복에 따른 반등요인으로 봄.

2. 2002, 2003년의 평균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주5일제 근무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로 가정함

임.

4.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자 수: 당일관광여행 참가횟수(인) ×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률(%)
5. 당일관광여행 참가횟수는 일본의 주5일 근무제 사례를 도입하여 보정한 수치임.
6. 2001년의 평균증가율의 급속한 증가는 '98, '99년의 IMF의 영향에서 회복에 따른 반등요인으로 봄.
7. 2002, 2003년의 평균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주5일제 근무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로 가정함.



<그림 2-9> 유원지/대공원 등 종합위락시설 이용객 수요예측

3. 산업연관(I-O)분석을 통한 유원시설의 특성

가. 유원시설의 산업적 특성

1) 산업연관표에서 본 유원시설의 특성

유원시설은 기계 등 자본재 산업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소비재 산업인 관광산업에서 매우 특이한 부문이다. 유원시설은 기계 전자 등과 같은 제조업에 체화된 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표 2-30> 관광산업의 분류와 유원시설

구 분	산업연관표상의 분류
문화자원과 결합	386번(문화서비스)
산업자본과 결합	391번(유원시설)
자연자원과 결합	-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유원시설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유원시설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하더라도 많은 부문을 수출하지 않고는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국가가 경쟁력 있는 유원산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기술 축적이 있어야 한다. 유원시설이 기계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유원시설에 대한 수요는 기계관련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원시설의 산업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유원시설에 대해 좀 더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유원시설은 여타 관광자원과 결합하여 관광서비스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산업분류상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추후 유원시설을 독립된 하나의 산업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원지 등 다양한 관광관련 시설에 대한 유원시설의 투입구조를 별도로 조사하여 유원시설을 독립시킨 별도의 산업연관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 작성한 1995년 기준 산업연관표의 402 기본부문에서 유원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391번 기타오락시설을 유원산업으로 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산업연관표 상에서 391번 산업의 총산출액은 1조 1천억으로 유원시설의 규모와 비슷하며 내용적으로는 무도장, 유원지, 오락장, 도박장, 기타를 포함하고 있다.

2) 유원시설의 전후방연관효과

유원시설의 전후방 연관효과는 유원시설이 국민경제 상에서 다른 산업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이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때에 후방과급효과는 투입 역행렬의 열의 합이다. 따라서 수입이 포함된 투입계수행렬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

다.

<표 2-31> 유원시설의 후방파급효과

	전산업 평균	문화관광산업(386)	유원산업(391)
후방파급효과	2.413923	1.770306	2.087546

분석결과 문화관련 관광산업보다는 국민경제 상 유원시설이 포함된 오락시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산업의 최종 수요 1단위의 증가는 1.8단위의 생산을 유발하고, 유원산업의 경우는 2.09 단위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원시설의 수입유발효과

수입계수는 산업별 수입이 자기산업의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수입유발계수는 각 산업의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수입이 국민경제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표 2-32> 유원시설의 수입유발효과

	전산업 평균	문화관광산업(386)	유원산업(391)
수입계수	0.131794	0.068593	0.082258
수입유발계수	0.000631	0.000096	0.000196

유원시설의 수입계수는 0.08로 문화관광산업의 0.68보다 크다. 유원시설의 수입유발효과는 국민경제 전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문화관광산업 보다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유원산업의 최종수요는 국민경제 총수입의 0.019% 정도의 수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관광산업의 0.0096% 보다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유원시설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유원시설의 최종수요가 국민경제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표 2-33> 유원시설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전산업평균	문화관광산업(386)	유원산업(391)
부가가치 유발계수	0.0018565	0.000897	0.001100

유원시설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전산업 평균보다 적지만 문화관광산업보다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원시설에 대한 최종수요는 총부가가치의 0.11%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0.8%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유원시설의 고용유발효과

고용계수는 산업의 고용자 수를 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이고, 고용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고용이 국민경제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표 2-34> 유원시설의 고용유발효과

	전산업평균	유원산업(391)
고용계수	13.804608	14.363493
고용유발계수	0.0001338	0.000167

유원시설의 고용계수는 14.3으로 10억원 총산출액에 대해 14.3명이 고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원시설에 대한 최종수요는 총고용자의 0.016%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6) 유원시설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유원시설을 수입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서 전략산업으로 선정 적극 육성하여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낙후된 기계산업의 현실을 볼 때 유원시설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원시설이 점차 기계뿐만 아니라 전자산업과 결합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전자산업의 협조를 통해 전자집약적인 유원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원시설은 관광산업 중 기계 설비 등의 자본재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유원시설은 그 나라의 기계 및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유원시설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과 차이가 있다. 또한 유원시설에 대한 수요가 이들 기계 및 자본재 산업의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계산업이나 그와 관련된 기술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유원시설에 대한 수요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원시설은 첨단기술의 기계산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자산업까지 결합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여타 관광시설에 비해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좁은 면적에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은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나. 산업연관분석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 적용한 산업연관분석의 한계점은 첫째, 부문분류의 불일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연관표가 자본재의 산업간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본재의 산업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정자본형성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산업연관표보다 부문이 더 통합되어 있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위당 효과를 비교하여 보면 문화관광부문의 효과가 더 크게 분석된다.

<표 2-35> 단위당 유발효과

	문화관광	유원시설
수입유발	0.093196	0.0896604
부가가치 유발	0.9066804	0.910336

이와 관련 유원시설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원시설에 대한 하부모형을 구축하여 산업연관모형과 연결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관광관련산업에 투입되는 유원시설의 비를 조사하여 유원시설 산업을 별도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시사점

1. 법제도 현황

유원시설업의 법제도 현황과 관련해서는 법제현황, 산업정책지원현황 및 조사·연구지원현황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법제현황에서는 유원시설업이 문화관광부로 이관되기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 상에서 다루어져 전체적으로 규제위주로 법제현황이 짜여져 있으며, 이러한 정책관점은 지금도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시행령의 유원시설업의 정의와 관련해서 현행 구분은 종합, 일반 및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명칭 상 여행업이나 휴양업의 세부 명칭과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쉽고,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의 숫자만으로 구분하여 특성화된 발전방향을 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산업정책지원현황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유원시설업을 사치·향락산업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우세하여 유원시설업에 대한 지원이 미약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유원시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식하고 ‘99년도에 처음으로 (사)한국중

합유원시설협회에 연구를 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 현재 유원시설업에 대한 산업정책지원으로는 새천년 관광벤처 투자자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금융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금액 및 지원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조사·연구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1965년 유원시설업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유원시설업에 대한 정부의 조사·연구는 1997년에 문화체육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만큼 유원시설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였다. 향후 유원시설업에 대한 연구·조사는 21세기를 이끌어갈 관광전략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임을 인식해 적극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국내 유원시설업 운영현황

국내 유원시설업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유원시설업의 특성, 이용객현황, 시장규모, 업계현황,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현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원시설업의 특성에서 우리 나라의 유원시설업은 유원지(Leisure Park)와 테마파크(Theme Park)의 중간형태인 놀이공원(Amusement Park)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놀이공원의 특성에 대하여서는 정확히 기술된 것이 없으며, 외국의 경우 놀이공원을 테마파크와 같은 입장에서 기술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테마파크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때문에 앞서 기술한 유원시설업의 특성이 정확하게 놀이공원에 대한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용객 현황 및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하여서는 유원시설업에 대한 정확한 이용객 현황 및 시장규모 산출은 우리 나라 전체 유원시설업체의 방문객 수와 각 업체별 객단가에 의해 산출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유원시설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산출되지 않아 실질적인 이용객 및 시장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다해도 유원시설업의 이용객은 국민의 여가활동의 확대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시장규모 역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유원시설업계 현황에서 유원시설업체의 경우 현재 국내 유원시설업은 일부 대형 유원시설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시장점유율 역시 이들 대형 유원시설업체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관광의 활성화 및 지역민의 여가생활의 증진을 위한 중·소 유원시설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 금융 및 법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기기구 제작업체와 관련해서는 유기기구를 제작하는 업체 대부분이 매우 영세한 편이며, 그나마 실질적으로 유기기구를 제작하고 있는 곳은 2~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유원시설업체에서 운영중인 유기기구들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인데, 유기기구 제작이 첨단산업임을 인식하고 점차적인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 및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육성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협회’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협회 고유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협회의 예산 및 인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협회’ 가입과 관련해서는 전체 유원시설업체의 40%정도만이 가입되어 있어 비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협회 가입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해서는 년 1회 실시하는 정기 안전성검사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유원시설 안전사고 현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조사·연구보고서와 업체별 설문조사의 결과 서로 상이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용자 및 운영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유원시설업의 수요예측 및 파급효과

유원시설업의 수요예측 및 파급효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예측과 관련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유원지/대공원 등 위락시설 이용객’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수요예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유원시설업의 수요예측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수요

예측은 1998년 및 1999년은 IMF의 특수상황으로 간주해 시계열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1997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 2008년에는 1997년의 약 1.42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유원시설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부문분류의 불일치와 산업연관표 상 자본재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점이 있지만, 유원시설업은 기계, 전자 등과 같은 제조업에 체화된 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계관련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업효과면에서 유원시설업은 여타 문화관광산업보다 월등한 산업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고용효과 측면에서 가장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 국외 유원시설업 운영 현황

제1절 개요

1. 일반현황

유원시설업에 대한 국외 사례는 동 업과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업종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유사성을 보이는 각국의 테마파크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하였다.

'99년 현재 일본의 도쿄 디즈니랜드가 연 입장객 1,748만 명 규모로 단일 테마파크(Theme Park)²²⁾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입장객이 방문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1,520만 명이 입장한 미국의 매직킹덤(Magic Kingdom)으로 나타났다. 규모 면으로 보면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한 유니버셜스튜디오(Universal Studio)가 전체면적 55만 평의 규모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30만 평 규모인 우리나라의 에버랜드가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에버랜드는 '99년 한 해 동안 864만 명의 입장객이 방문하여 세계 테마파크 시장에서 입장객 수로는 7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 10대 어뮤즈먼트²³⁾/테마파크’의 '99년 입장객 순위를 살펴보면, 1위부터 6위까지

22) Theme Park: The American Heritage(제3판 발행) 사전에는 “‘미래의 세계’와 같은 중심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시설물과 매력물을 통일성 있게 구성한, 즐거움이 있는 공원”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야후의 경제용어사전에는 “①넓은 지역에 특정한 주제를 정해놓고 그에 맞는 오락시설을 배치하는 위락단지 -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대표적이다. ②가상현실기술과 오락용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영화 등이 접목되어 만들어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느낌을 주는 체험산업을 가리키기도 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Theme park는 주로 대규모 복합 위락시설을 갖춘 놀이공원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어떠한 중심이 되는 주제(theme) 아래 공원 내 모든 시설을 통일된 모습으로 연출한다. Theme park는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용어이며 국내에서도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의 대규모 복합 유원지를 지칭할 때 종종 사용되나 아직 법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용어이며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유원시설업’을 들 수 있으나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23) amusement: 미국 및 주변 국가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종합 위락시설처럼 규모가 아닌 주로 탈 것 위주의 기구를 갖추어 놓은 소규모 놀이공원을 칭한다.

모두 월트디즈니사에 의하여 개발된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세계 테마파크 시장에서 디즈니사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 3-1>과 같다.

<표 3-1> 세계 10대 테마파크 현황

순위	Park Name	입장객 (천명)	면적 (천평)	Open	특징 및 주요시설
1	동경디즈니랜드	17,489	250	1983	◦ Concept: 꿈과 마법의 왕국, 6개의 서브테마 ◦ 어트랙션 39기종, 식음(37), 상품(56)
2	MAGIC KINGDOM	15,200	120	1971	◦ LA디즈니랜드의 축소판, 7개의 서브테마 ◦ 어트랙션 36기종, 식음(11), 상품(64)
3	LA 디즈니랜드	13,450	225	1955	◦ 세계 최초의 가족지향 테마파크 ◦ 어트랙션 50기종, 식음(34), 상품
4	유로 디즈니랜드	12,800	465	1992	◦ 5개의 서브테마를 가진 가족지향형의 테마파크 ◦ 어트랙션 29기종, 식음(29), 상품
5	EPCOT CENTER	10,100	282	1982	◦ Future World와 World Showcase로 구성 ◦ 식음(30), 상품
6	MGM STUDIOS	8,700	130	1989	◦ 영화, 만화, TV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재현 ◦ 식음시설 11개소, 상품시설 18개소
7	용인 에버랜드	8,640	300	1976	◦ 5개의 서브테마를 가진 가족지향형 테마파크 ◦ 어트랙션 45기종, 식음(27), 상품(29)
8	ANIMAL KINGDOM	8,600	-	-	-
9	UNIVERSAL STUDIOS	8,100	550	1990	◦ 영화제작이나 TV프로그램 제작과정을 재현 ◦ 어트랙션 10여 기종, 식음시설, 상품점 6개소
10	BLACKPOOL PLEASURE BEACH	6,900	51	1896	◦ 해안가에 조성된 위락시설 집단조성지로 무료 입장에 시설료 징수 형태 ◦ 어트랙션 80여 기종, 식음, 상품 기타

자료: ‘순위’와 ‘입장객수’는 “Amusement Business,” 1999.12(에버랜드의 협조를 얻음)를 참고하고 ‘면적’, ‘open 연도’, ‘특징 및 주요시설’은 “유원산업의 진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부, 1997.12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한편 세계 테마파크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²⁴⁾, 주로 북아메리카 지역에 중점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의 동경디즈니랜드와 우리 나라의 에버랜드를 포함시킨다 하여도 이 지역 테마파크의 개발이 인구에 비하여

24) 문화체육부(1997.12), 전세서, p.48.

미약한 실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테마파크의 발전과정²⁵⁾

테마파크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행하여진 교역박람회(trade fai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교역박람회의 주목적은 상거래의 촉진을 위한 상품전시와 거래자 상호간의 만남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촉진하고 교역박람회 행사 자체를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놀이와 경연대회, 가무행사, 곡예공연 같은 다양한 행사를 위해 마련된 일정한 장소라는 개념으로 볼 때 테마파크의 근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²⁶⁾

근대적 의미의 테마파크의 시초는 통상적으로 1661년에 개장된 영국의 정원풍인 보크스 홀 가든으로 테마파크의 뿌리인 플래저가든(pleasure garden)으로 보고 있다. 보크스 홀 가든은 런던의 귀족의 정원을 개방해서 만들어졌으며, 서커스와 곡예, 파노라마 쇼가 인기를 끌었는데, 현대의 유원지(amusement park)의 원조라고 불리고 있다. 그 후 플래저가든은 유럽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티보리공원도 플래저가든의 대표적인 시설이다.

플래저가든에 본격적인 유흥시설을 설치한 것은 빈의 프라타였으며, 1873년 빈의 만국박람회가 플래터(platter)에서 개최되었는데, 유흥기기인 대관람차, 회전목마와 러시아의 산의 롤러코스터 등이 선보였다. 이것이 세계최초의 오락공원이 되고 미국의 코니아일랜드에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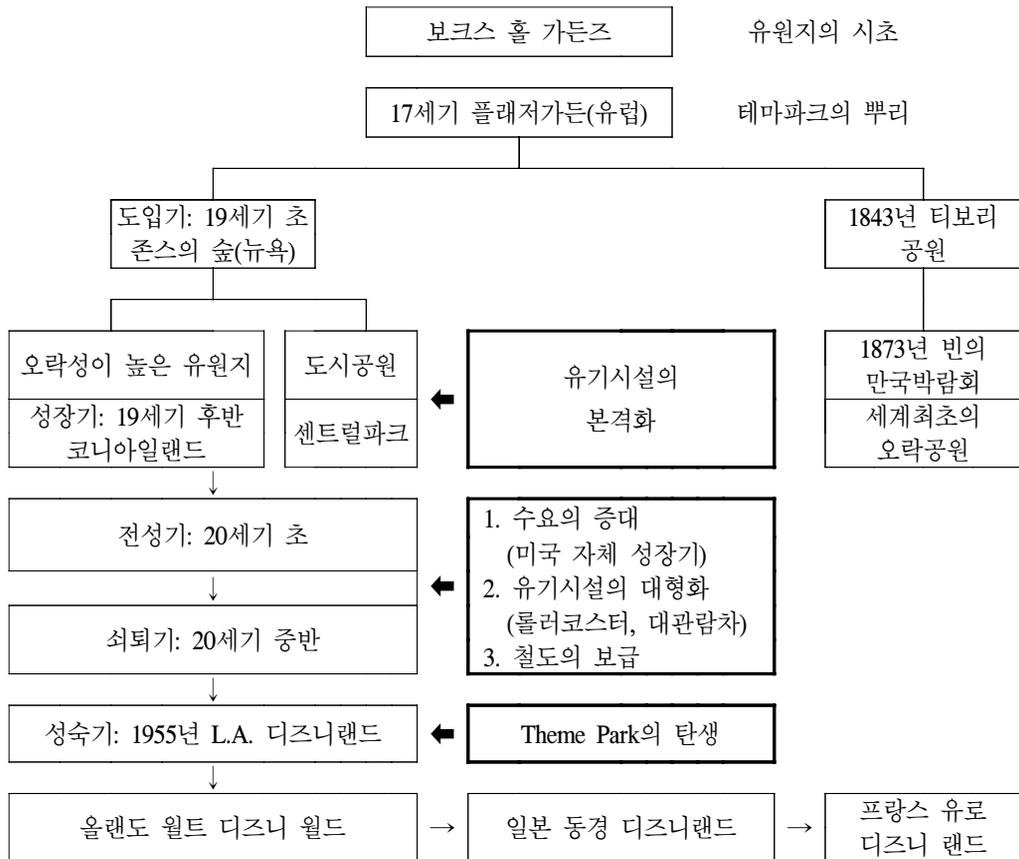
코니아일랜드는 미국의 최초의 본격적인 유원지로 뉴욕교외 맨허튼 섬의 남쪽 13Km 롱아일랜드의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다. 동 유원지는 유원지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아무런 컨셉도, 정책도 없었으며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코니아일랜드는 영화산업의 등장으로 점차 열악한 환경이 되어 황폐해져서 비뿔어진 환락공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월트 디즈니는 코니아일랜드를 교훈 삼아서 자신의 만화세계를 3차원의 세계로 표현한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5년 7월 개장한 디즈니랜드의 구상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지식을 부여하는 기회를 제

25) 김관식, “테마파크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1. pp.19-23

26) 김승환, “주제공원 입장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7

공하는 지극히 단순한 구상으로 월트 디즈니의 상상력에 의해 모든 창의성 및 운영이 하나의 테마로 묶여 구현되었다. 디즈니랜드는 기존 유원지의 개별적인 탑승기기의 산발적 배치를 하나의 컨셉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매력물로 바꾸었다는 의미에서 본격적인 테마파크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3-1> 테마파크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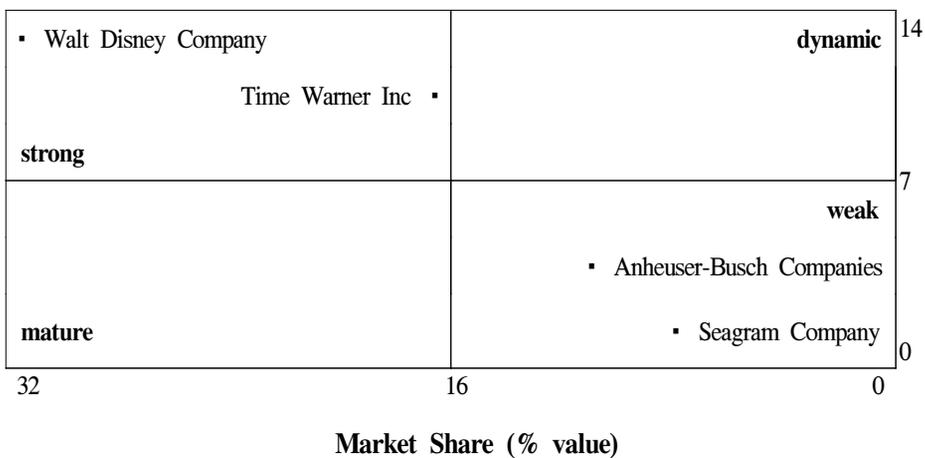
자료: 최희정, “국내 테마파크의 캐릭터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7., 재구성

제2절 각국의 유원시설업 현황

1. 미국

가. 현황

미국 테마파크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월트디즈니사가 전체 시장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4개의 Six Flags를 소유하고 있는 Time Warner사가 17%, Sea World와 Busch Gardens를 가지고 있는 Anheuser-Busch사가 11%, '95년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인수한 Seagram사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메이저 4개사의 시장점유율과 연간 매출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미국내 테마파크 위상도는 다음의 <그림 3-2>과 같다.²⁷⁾



<그림 3-2> 미국의 메이저 4개사의 자국내 테마파크 위상도

자료: “유원산업의 진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부, 1997.12, p.52를 참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월트디즈니사가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Time Warner사도 상당히 역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Anheuser-Busch사나 Seagram사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위치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미국의 테마파크 시장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소규모 테마파크가 보다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소규모 테마파크의 입장료 수입의

27) 문화체육부(1997.12), 전제서, pp.50-52.

비중은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⁸⁾

나. 지역 수익증대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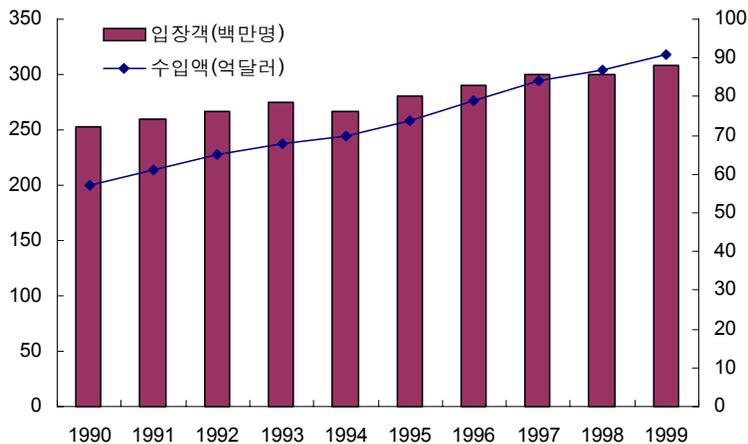
1) 지역 수익 증대 측면

미국의 테마파크는 각 테마파크가 지향하는 주제가 분명하여 발달된 캐릭터 산업과의 연계로 상품구입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킨 결과 테마파크 내에서의 상품수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²⁹⁾,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도 잘 되어 있다. 다음의 <표 3-2>는 미국 내 테마파크의 '90년부터 '99년까지의 입장객 및 수입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입장객의 증가비율(약 122%)보다 수입액의 증가비율(약 160%)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연도별 입장객 및 수입 현황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입장객(백만명)	253	260	267	275	267	280	290	300	300	309
수입액(십억달러)	5.7	6.1	6.5	6.8	7.0	7.4	7.9	8.4	8.7	9.1

자료: 국제유기시설협회(IAAPA), "U.S. Amusement/Theme Park Industry", 1999.



<그림 3-3> 연도별 입장객 및 수입현황

28) 문화체육부(1997, 12), 전게서, p.53.

29) 임상오(1999.2), '지역발전과 테마파크산업의 진흥', 『재정정책논집』, 창간호, 한국재정정책학회, p.163.

이러한 미국 테마파크의 지속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새로운 상품, 공격적인 마케팅, 미국경제의 활황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테마파크는 혁신적인 마케팅과 그 동안 축적된 브랜드 이미지의 과급으로 더욱 성장하리라고 예상된다. 미국 테마파크의 수입구조는 '95년 현재 식음료 및 상품판매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입장료 수입이 나머지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91년의 입장료 수입이 40%인 점과 비교하면 다소 늘어난 수치인데, 새로 개관한 하이테크 테마파크들이 주로 탈것을 중심으로 하는 유기시설 중심의 Ride Park 형태로서 기존의 테마파크보다 입장료 수입이 훨씬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

미국의 테마파크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시설, 방문객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세계 제1의 테마파크 관련산업 선진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오락을 지향하는 국민성 때문이다.³⁰⁾ 미국인들은 단순히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즐기려하는 욕구를 오락산업으로 생성·발전시켰으며 경제발전 및 복지수준의 증대로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노년층의 입장객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 정부의 지원

미국의 테마파크 산업에 대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특별한 지원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어느 특정한 산업분야에 특별한 규제나 진흥책을 부여하기보다는 '철저한 사업성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은행의 자금 지원 및 융자'라는 시장기능을 우선하는 미국의 정책 및 시장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정부의 차원에서는 테마파크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³¹⁾ 실제로 플로리다 주는 '67년 디즈니월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플로리다 주 내에 RCID(Reedy Creek Improvement District)로 명명된 특별자치구를 설립하여 디즈니월드를 개발할 때 RCID의 지원 하에서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디즈니월드 부지 내 토지활용에 대한 계획 및 통제는 물론, 도로 등의 기반시설, 소

30) 김봉석(1997.8), '테마파크 기업의 학습조직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31) 문화체육부(1997.12), 전게서, pp.54-55.

방·치안시설, 호텔 등의 모든 시설유치에 대하여도 디즈니사가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기도 하였다.³²⁾

라. 미국내 주요 테마파크의 특징

1)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는 가족단위의 대표적인 공원이며, 첨단 전자기술을 응용한 보는 시설을 중심으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또는 Attraction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모든 기반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게 설계되었으며, Main Plaza를 입구에 설치하여 기념품 등 매출에 주력하고 있다.³³⁾

2) 유니버셜스튜디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특징은 기존의 영화제작, TV 프로그램의 제작과정과 세트장을 이용한 테마파크이며, 유명한 영화의 중요한 장면이 그 당시에 어떻게 촬영한 것인가를 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을 연출 시설로 재현하였다. 또한 최첨단 시뮬레이션 및 영상기술을 채택하여 고객의 흥미를 유도(E·T)하였으며, 각종 게임물을 한군데 모아 놓고 중요한 동선상에 위치시켜 영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 외에 관람은 5-60인승의 드럼버스를 운영해 직접 스튜디오를 관람하며, 정문주차장에서부터 메인 게이트까지 트램카를 운영한다. 또한 고객 편의를 감안하여 모든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³⁴⁾

3) 넛츠베리 팜

넛츠베리 팜은 광활한 서부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여 “유령의 마을”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이다. 넛츠베리 팜은 1880년대 골드 타운의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는 그 시대의 모습으로 재현한 테마파크이며 100년 미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속마을 등이 있다.³⁵⁾

32) 임상오(1999.2), 전개서, p.164.

33) 한국관광공사(1999.12),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분석』, pp.261-269

34) 한국관광공사(1999.12), 전개서, pp.270-275

35) 이정화·김준기(1996.1), 『테마의 시대』, 세진사, pp.31-34

마. 안전성 검사제도

1) 관련법규

미국 내 국제유기시설협회(IAAPA)는 검사와 설비를 위한 미국 재료 시험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STM)의 F24위원회에서 개발한 정비기준을 승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유기시설이 시행규칙을 개발할 때 ASTM의 안전기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ASTM내의 유기시설 관련 안전 기준은 유기산업의 임원을 포함하는 안전위원회에서 표준화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유기시설물의 정비, 검사, 시험과 같은 분야에 공인 운영자들이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것은 임의의 기준들이지 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들은 유기시설 경영자의 안전문제를 포함하는 소송 사건인 경우 판결결정에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ASTM 기준이 존재하고 유기시설이 이러한 기준을 따르게 되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기시설 운영자들도 ASTM 기준에 동의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시설 개발에 도움이 된다.

2) 검사제도

미국은 규모에 관계없이 유기시설을 주 정부의 규정에 따르나, 주마다 안전성검사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유기시설에 관한 규정 중 공통규정은 탑승기구들에 대해서 매년마다 그리고 사고나 수리보수 중에는 주 정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건물의 승강기 안전검사와 마찬가지로 주정부기구인 직업 보건 및 안전과(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에서 관장하고 있다.

바. 유기시설 안전검사 자격증을 위한 기술교육 제도

미국의 유기시설 안전검사 자격증은 국립유기시설 안전검사원 협회(NAARSO: National Association of Amusement Ride Safety Officials)에서 제공하는 Level I(일반자격증) 및 Level II(상위자격증)의 자격증이 있다.

국립 유기시설 안전검사원 협회는 매년 안전검사 자격증 시험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간 중이거나, 기타 안전 세미나가 개최되는 곳에서 안전교육 시험을 실시한

다. 자격증 Level I 은 2년간 유효하고 이기간 안에 유기사설 세미나, 학술대회에서 시행하는 32시간의 연수교육을 받거나 또는 지역에서 실시하고 용접, 유체역학, 전기 및 기계 시스템에 관한 기술 연수를 받아야 한다. Level II역시 Level I 과 같이 2년간 유효하고, 의무 기술 연수 시간과 내용도 같다.

그 외 기술교육으로는 국제 유기사설 제조업체 및 공급자 협회(AIMS: International Amusement Industry Manufactures & Suppliers)에서 매년 안전세미나를 개최하나, NAARSO 처럼 안전검사 자격증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2. 일본

가. 현황

일본의 테마파크는 크게 탈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라이드파크(Ride Park)와 일반적인 어뮤즈먼트파크(Amusement Park)로 나누어진다. 현재 일본에서는 전체 테마파크의 70%를 어뮤즈먼트파크가 차지하고 있지만 입장수입 면에서는 라이드파크가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방문하는 입장객의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50~59세의 사람들의 입장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대와 30대의 입장객 수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테마파크 시장에서는 도쿄 디즈니랜드의 운영자인 Orientel Land사가 37%의 시장 점유율로 확실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Sega가 12%의 점유율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3-4>은 일본 테마파크사의 시장위상도를 나타낸 것이다. Orientel Land사는 비록 역동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시장의 주도자로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⁶⁾

36) 문화체육부(1997.12), 전제서, pp.57-58.

활용형태로서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 지역의 독특한 산업을 살려서 그 산업을 테마로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지역진흥의 일환으로써 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리타(有田) 포세린 파크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지역인사들의 구상을 지역진흥과 아리타마을 활성화 견지에서 부활시켜 지역의 주요산업인 아리타 도자기와 함께 동서양의 도자기 문화 교류의 꿈과 로망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이다.³⁹⁾ 또한 네델란드 풍경이 주류를 이루는 하우스텐보스는 관람객들이 단순히 구경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⁴⁰⁾ 이와 같이 일본의 테마파크들은 독특한 주제와 함께 지역적인 특성을 가미하면서 지역의 고용창출 및 수익증대, 그리고 자연학습관으로서 지역민들과 친숙한 테마파크를 건설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메이지마을과 리틀월드이다. 메이지마을은 메이지시대의 새로운 정신에 입각한 사회교육을 진흥하고 국민에게 역사의 지침을 일깨우고, 일반 교양의 충실을 기하는 것에 의해 사회문화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인들에게 현대 및 장래 국민생활의 향상 및 문화전승과 창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리틀월드는 보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고 패스포트가 필요없이 일일세계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민족예능, 전통공예의 실연·민족의상의 체험, 민족요리 레스토랑 등 세계각국의 사람들과 만남이 있어 그들의 다양한 생활을 통해서 인간문화의 다양성과 그 뿌리에 흐르는 공통성을 전시하여 살아있는 ‘세계 민족 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⁴¹⁾

다. 정부의 지원책

일본에서의 테마파크 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민자를 유치하거나 민간사업자의 계획을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⁴²⁾ 국민관광을 진흥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1987년에 “총합보양지역정비법”(일명 리조트 법)을 제정하였다.⁴³⁾ 이 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39) 김일룡, 전게서, p. 9

40) 김봉석(1997.8), '테마파크기업의 학습조직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9

41) 김일룡, 전게서, p.p. 12-13

42) 문화체육부(1997.12), 전게서, p.60.

43) 임상오(1999.2), 전게서, pp.164-165.

공원, 상·하수도과 같은 인프라를 정비하고 개발 프로젝트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직접 공무원이 참여하여 인·허가 과정을 담당하고 항만지역의 활용을 배려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토지 사용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시켰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법인세 특별상각,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사업소 세의 공제 등 각종 과세상의 혜택을 주는 동시에 일반 개발은행 등을 통하여 사업비의 0.5%를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결과 총 40개 현에서 75개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그 규모는 금액으로 볼 때 총 70조엔, 면적으로는 전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650만ha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미에의 스페인촌, 미야자키의 Seagaia(실내워터파크), 나가사키의 하우스텐보스, 후쿠오카의 스페이스월드 등이 있다.⁴⁴⁾

44) 임상오(1999.2), 전게서, p.166

<표 3-3 >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일본개발은행의 대출융자제도

항목	내용	저리융자 (융자비율)	NTT-C 타입 무이자 융자	출자
리조트 지역정비	리조트법의 ①~⑧호 시설에 해당 하는 사업 ^{주1)}	특리(4) (공사비의 50% 정도)	제3섹타 방식에 의 한 ①~④호 시설정 비사업	있음
지역산업 진흥	과소·반도·산촌·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업	특리(4) (공사비의 50% 정도)	없음	없음
산업 구조조정	산업구조전환 원활화 임시조치법 의 특정구역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특리(5) (공사비의 60% 이내)	동법에 기초한 특정 출자법인 사업	있음 (산업기반 정비기금)
특정민간 도시기반 시설정비	① 도시계획 특허사업으로 행하여 지는 사업 ② 도시계획구역, 항만구역 또는 임시항만지구 가운데 동경도 23구, 오사카시 및 나고야시의 구시가지 이외 구역에서 실시 되는 사업	공공특리 (대상사업비 상 당액, 단 전체 사업비의 50% 한도)	제3섹타 방식에 의 한 다목적홀 등의 공공시설	없음
민활법 (民活法)	민활법에 기초한 특정시설(문화교 육시설, 국제시민교류기반시설 등)로서 정비되는 사업	특리(5) (공사비의 50% 정도)	제3섹타 방식에 의 한 특정시설	있음
다극법 (多極法)	다극분산법에 입각하는 중추적 민 간시설의 정비사업	특리(4) (공사비의 50% 정도)	제3섹타 방식에 의 한 특정시설	있음

주) 1. ①스포츠 레크레이션 시설, ②교양문화시설, ③휴양시설, ④집회시설, ⑤숙박시설, ⑥교통시
설, ⑦판매시설, ⑧열공급시설, 기타 체재편리를 증진시키는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금리(1990년 2월 현재) : 특리(4)=5.6%, 특리(5)=5.4%, 공공특리=4.75%, 3. 무이자 융자비율 :
3대 도시권 기성 시가지=공사비의 25%, 근교정비지역=37.5%, 기타지역=50%

자료: 임상오, “지역발전과 테마파크산업의 진흥”,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장간호
1999. 2, p.165.

라. 안전성 검사제도

일본의 유희시설 검사 표준(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

법의 적용에 의거 유원지 등에 설치된 유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서 각 행정청 또는 소유자의 의뢰를 받은 검사자격자에게 책임 지워진 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검사기구,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을 각 종류별로 규정하고 검사 판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표준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유희시설에도 준용하는 것이 요망된다.

○ 검사항목

신설 준공하였을 때의 검사에서는 확인신청서 또는 계획통지서의 설계도면 또는 사양서에 기재된 각 항목과 변동 없음을 살피고, 법령, 규정의 각 항에 대하여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또한 가령 확인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실제상 적합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 정기검사

준공검사 후 보수 및 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고, 안전운전이 확보되고 있는 유희시설에 대하여 변경된 곳 등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 경우 하중 시험은 제외한다. 이것은 준공검사에서 테스트 받은 시설의 중량은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일정하므로 생략될 수 있다. 다만 코스터류는 필요하다.

3. 유럽

가. 현황

유럽에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여러 가지 레저시설을 즐기기 위한 고정장치, 사계절 영업하는 테마파크가 적다. 이러한 이유는 1년 중 반이 겨울철이며 햇빛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 국민성·여가의식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 수 있으며, 또한 유원지 시설에 대하여 원내에 들어가기 위한 요금을 지불한다는 관습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⁴⁵⁾ 유럽에

서의 테마파크 산업의 활성화는 '92년 파리 근교에 유로디즈니랜드가 개장한 것을 계기로 주목되기 시작하였으며, 유로디즈니랜드는 단순한 놀이의 장을 넘어 도시기능의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더 나아가 관광사업의 다양한 경제효과를 수반하고, 유럽 통합 차원에서 볼 때 전 유럽의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유효하다는 것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취지하에서 설립되었다.

독일의 테마파크 시장은 복합테마파크(multi-theme park)가 6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역시 복합테마파크가 7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⁴⁶⁾

나. 정부의 지원책

유럽에서의 테마파크 개발 역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례로 프랑스는 유로디즈니랜드를 유치하기 위하여 파리의 고속지하철 노선을 유로디즈니랜드까지 연장하였으며, 고속전철인 TGV 도 이곳에 오는 입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디즈니역을 신설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금융, 세제 면에 있어서도 약 186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금리보다 1.4% 낮은 금리로 융자하여 주었고, 유로디즈니랜드에서 행하여지는 상품판매에 대해서는 당시의 소비세율(18.6%)보다 낮은 9%로 인하하여 주었다. 이 밖에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16년 전의 농지가격을 적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설비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각종 혜택은 유로디즈니랜드의 개장 이후 11,000여 명에 달하는 직접고용과 30,000여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효과, 그리고 프랑스 GNP의 0.2% 상승이라는 결실을 가져왔다.⁴⁷⁾

다. 안전성 검사제도(독일)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유기사설의 안전검사 대행 기관으로서는 독일의 기술검사소(TUV)가 있다. TUV사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검사한다.

45) 김봉석(1997.8), 전계서, p.46.

46) 문화체육부(1997.12), 전계서, pp.61-62.

47) 임상오(1999.2), 전계서, p.164.

문화체육부(1997.12), 전계서, pp.63-64.

- ① 위험요소에 대한 증명이나 사용할 때에 보다 우선하는 위험평가와 설비 등과 같은 유기시설의 일반적인 안전도 검사
- ② 일반적인 안전 요구사항과 유기시설의 구조해석과 같은 두가지 부분에 대한 설계
- ③ 제작과 시설물의 인수
- ④ 시설물의 시험과 정밀검사

이며, 예를 들어 비행하는 놀이시설일 경우에는

- ① 설계면허에 대한 검사
- ② 설계면허의 기한연기에 대한 검사
- ③ 운행에 대한 허가
- ④ 다른 검사와 시험

등을 거치게 되며, 설계면허는 설계하는 요소의 위험정도에 따라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의 면허 사용기간을 두며, 기한을 넘으면 기한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시사점

유원시설업 관련 국외 사례로는 미국, 일본 및 유럽의 테마파크와 관련된 각국의 테마파크 산업의 현황, 정책 및 관련법 위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국외 사례의 경우 대형 테마파크만을 본 연구의 사례로 들어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중·소 유원시설업 육성과는 정확히 일치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지원정책 및 관련법의 일부 사례는 향후 유원시설업 육성프로그램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외 사례조사 결과 유원시설업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프랑스나 일본처럼 유원시설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관광객이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문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특색있는 매력물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테마파크와 관련된 각국의 사례조사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의 유원시설업 특징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맡기는 미국 정책 및 시장의 특성이 유원산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어떠한 정부의 간섭이 배제된 채 시장성에 맡겨져 있으며, 더불어 미국민의 여가를 즐기는 특성과 맞아 떨어져 지금의 세계 최대, 최고의 유원산업을 이끌고있다. 미국 테마파크의 특징은 테마파크의 크기가 갈수록 대형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한 규모를 바탕으로 테마파크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또한 영화 산업 등의 첨단 영상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테마파크에 접목시켜 테마파크 산업을 하이테크 산업으로 만들었으며, 자국내에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점차로 외국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철저한 마케팅과 적극적인 캐릭터 개발로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테마파크들을 살펴본 결과 거대투자가 가져다주는 스케일 메리트가 집객리스트를 압도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⁴⁸⁾ 일본의 테마파크의 경우 수익창출을 위한 적절한 규모로 지역경제 및 지역민들과 함께 호응하는 지역밀착형 테마파크를 많이 건설하였다. 일본의 테마파크는 크게 4개의 주제를 가지고서 건설되었는데 하우스텐보스와 같은 외국풍경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메이지촌과 같은 역사물, 도쿄디즈니랜드처럼, 영화·만화형, 그리고 스페이스월드처럼 학습체험 및 첨단시설의 테마파크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테마파크들은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서 사람들은 끌어들이고 있다. 즉, 일본의 테마파크들은 지역적인 연대감과 각각의 뚜렷한 차별화를 통해서 유원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3. 유럽(프랑스)

유럽의 테마파크 산업, 특히 프랑스의 유러디즈니랜드 유치에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결국 11,000여 명에 달하는 직접고용과 30,000여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효과 및 프랑스 GNP의 0.2%라는 결실을 가져왔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향후 테마파크 산업은 경제의

48) 김봉석(1997.8), 전개서, p.48

발전으로 인한 사람들의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높은 성장을 이룰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테마파크는 규모의 스케일로 인한 수익성을 창출하는 만큼, 관광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4장 의견조사 및 문제점 종합분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국민의 관광수요 욕구 및 외래관광객의 관광수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동시에 인공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우리 나라의 관광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원시설업을 지원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내용으로는 일반시민의 의식조사와 함께 유원시설업의 실태조사, 수요 및 시장규모 예측, 부문별 육성방향, 유원시설업과 관련 있는 법규와 안전성검사의 적절성 및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기능에 대한 설문 등을 포함하였다.

2. 조사 방법

본 조사 방법으로는 유원시설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유원시설업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 유원시설업체 및 유원시설 기구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 조사시기: 2000년 8월5일 ~ 8월 6일(2일간)
- 조사대상: 유원시설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는 전국민 대상⁴⁹⁾
- 조사방법: 전화설문조사
- 조사표본: 540매⁵⁰⁾

49) 놀이공원에 대한 국민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놀이공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 총인구에 대한 각 지역별 인구비례로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50)
$$n = \frac{(Z_{\alpha/2})^2 P(1-P)/d^2}{1 + (Z_{\alpha/2})^2 P(1-P)/d^2 N}$$

- 표본추출방법: 전화설문조사
 - 전국 16개 시·도의 국민을 인구비례로 층화한 층화비례추출법(stratified proportional sampling)을 이용
 - 16개 시·도의 전화국번을 무작위로 추출(random sampling) 함
 - 전화번호 4자리 수는 난수발생기(random number generator: uniform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선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되, 만약 통화가 안되거나 놀이공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전화번호를 조사함

- 업체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조사시기: 2000년 7월 31일~ 2000년 8월 11일(12일간)
 - 조사대상: 유원시설업체, 기구 제작업체 및 관련 전문가
 - 조사방법: E-mail, Fax 및 직접방문
 - 조사 매수: 유원시설업체 및 기구제작업체 전수조사(238매)
유원시설 관련 전문가 60매

N (= 47,274,543 명): 모집단

d^2 (= 0.05): 요구오차한계

$Z_{\alpha/2}$ (=1.96): 유의수준 5%하에서의 Z값

P (=0.5): 모비율의 추정값

n (= 384매): 최소 표본크기

제2절 의견조사 결과분석

1. 일반인 의견조사

가. 조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유원시설업체의 회전을 및 유원시설업체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조사하여 국내 유원시설업체의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나. 조사 내용

- 평균 놀이공원 방문횟수
- 놀이공원의 만족도
- 정보 검토 방법 등

다. 주요 조사 결과⁵¹⁾

1) 1999년 한 해 놀이공원을 방문한 횟수

'99년 한해 동안 놀이공원을 방문한 횟수는 응답자의 60.66%가 1회 및 2회 놀이공원을 방문했다고 응답했으며, 3회 이상 방문한 사람은 39.44%로 나타났다.

51) 설문조사에 응한 전체 545명은 인구별 비례층화추출법에 의해 지역별로 표본수를 나누었으며 응답자의 약 72.24%가 비교적 성실히 설문에 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전체 545명중 조사원의 실수로 성별을 표시하지 않은 18명을 제외한 527명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남자가 44.40%, 여자가 55.60%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응답자의 연령대 비율을 보면 전체 545명중에서 10대가 24.68%, 20대가 36.65%, 30대가 20.81%로 전체 응답자의 82.14%를 차지하여 주로 놀이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으로 조사되었다.

<표 4-1> 1999년 놀이공원 방문횟수

구분	빈도 수	유효퍼센트(%)
1회	142	26.10
2회	188	34.56
3회	101	18.57
4회	45	8.27
5회 이상	68	12.50
계	544	100

2) 방문한 놀이공원의 종사원의 서비스

놀이공원의 종사원의 서비스는 향후 잠재적인 재방문율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설문조사결과 방문한 놀이공원의 종사원의 서비스는 전체 응답자중 40%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불만족의 경우 12%를 차지하여, 향후 종사원 서비스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놀이공원 종사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수	유효퍼센트(%)
매우불만족	11	2.02
약간불만족	58	10.64
보통	258	47.34
약간만족	167	30.64
매우만족	51	9.36
계	545	100

3) 이용한 놀이공원의 시설물의 안전여부

놀이공원의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해 조사에 응한 전체 응답자중 49%는 보통 및 불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51%로 놀이공원 방문객의 두 명 중 한 명은 시설물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유원시설업에 대한 안전성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이용한 시설물의 안전도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매우불안전	22	4.04
약간불안전	128	23.49
보통	117	21.47
대체로안전	231	42.39
매우안전	47	8.62
계	545	100

4) 놀이공원에서 판매하는 기념품 및 캐릭터 상품의 질

놀이공원에서 판매하는 캐릭터 상품 및 기념품의 질은 ‘그저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7%를 차지해 방문객이 놀이공원을 방문해서 캐릭터상품 및 기념품에 대하여 특별한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놀이공원의 수익구조 개선과 연관시켜 놀이공원은 적극적인 캐릭터 상품 및 기념품 개발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기념품 및 캐릭터 상품의 질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매우나쁨	52	9.83
약간나쁨	125	23.63
그저그렇다	248	46.88
약간 좋음	90	17.01
매우 좋음	14	2.65
계	529	100

5) 놀이공원에서 판매하는 식·음료의 질

놀이공원에서 판매하는 식·음료의 질과 관련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중 약 39%가 ‘그저그렇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놀이공원의 운영에서 식·음료와 관련하여 특별히 차별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판매하는 식음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매우나쁨	36	6.62
약간나쁨	132	24.26
그저그렇다	210	38.60
약간 좋음	139	25.55
매우 좋음	27	4.96
계	544	100

6) 놀이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벤트)의 질

놀이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이벤트의 질과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의 38.4%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43.2%가 만족한다고 대답해 놀이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표 4-6>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매우불만족	18	3.34
약간불만족	81	15.03
보통	207	38.40
약간만족	157	29.13
매우만족	76	14.10
계	539	100

7) 놀이공원의 위치 만족 여부

놀이공원의 위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8%는 방문하기가 힘들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53.3%는 쉽다고 응답해 놀이공원과 연결되는 교통편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놀이공원의 위치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아주힘듦	22	4.04
약간힘듦	157	28.81
보통	75	13.76
약간쉬움	184	33.76
매우쉬움	107	19.63
계	545	100

8) 놀이공원 이용시 가격의 적당성 여부

전체 응답자의 62.7%가 놀이공원 이용 시 가격에 대하여 불만족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매우 불만족이라는 대답도 20%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놀이공원 이용 시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서 놀이공원은 타는 시설위주의 가격정책 보다는 식·음료의 개발, 캐릭터 상품의 개발 등을 통해 놀이공원 전체의 수익모델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놀이공원의 가격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매우불만족	105	19.27
약간불만족	237	43.49
보통	116	21.28
약간만족	79	14.50
매우만족	8	1.47
계	545	100

9) 놀이공원에 대한 정보의 습득

놀이공원에 대한 정보의 습득과 관련해서 조사자의 35.1%는 친구, 친지 및 주변사람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TV,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놀이공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놀이공원의 정보습득 경로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TV	121	20.8
신문	79	13.6
잡지	33	5.7
인터넷	82	14.1
옥외광고	17	2.9
친구,친지 및 주변사람	204	35.1
자체습득	38	6.5
기타(광고지 등)	8	1.4
계	582	100.0

10) 응답자의 연령

응답자의 연령대 비율을 보면 전체 545명중에서 10대가 24.68%, 20대가 36.65%, 30대가 20.81%로 전체 응답자의 82.14%를 차지하여 주로 놀이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 응답자의 연령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10대	134	24.68
20대	199	36.65
30대	113	20.81
40대	57	10.50
50대이상	40	7.37
계	543	100

2. 업체 의견조사

가. 조사목적

본 조사는 정부의 효율적인 유원시설업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유원시설업체 및 유기기구 제작업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유원시설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조사내용

- 유원시설업 법규 관련 의견조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금융·세제지원 의견조사
- 종업원 교육과 관련된 의견조사
- 업체의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의견조사
- 유원시설업체 및 기구제작업체 실태조사
- 유기기구 제작업체의 수·출입 실태파악 등

다. 조사결과⁵²⁾

1) 유원시설업체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 세제 및 행정지원 여부

회수된 33부 중 오류가 발생한 1부를 제외한 전체 32부 중 유원시설업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 세제 및 행정지원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63%가 지원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52) 유원시설업체 및 기구제작업체에 대한 설문 의견조사에서 유원시설업체의 경우 종합유원시설업체, 일반유원시설업체 및 기타유원시설업체 전체 2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구제작업체의 경우 총 28개 업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회수율은 유원시설업체의 경우 13.58%인 총 33부가 회수되었고, 기구제작업체의 경우 5개 업체만이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설문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유원시설업 관련 업체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이제껏 이와 같은 설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며, 설문 내용에 답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설문에 대하여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조사 분석은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SPSS WIN 9.0을 통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수율이 너무 낮아 의미가 없는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다음은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각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이다.

<표 4-11> 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 세제 및 행정지원 여부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예	3	9.38
아니오	29	90.63
계	32	100

② 종업원 교육과 관련된 사항

○ 업체에서 1년에 종업원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교육 횟수

오류가 발생한 1부를 제외한 총 32부의 설문지 중에서 1년에 종업원에게 실시한 정기교육 횟수로는 4회 이상이 53.12%, 2회가 21.87%로 조사에 응한 업체의 85%가 1년에 2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종업원에 대하여 일년에 실시한 정기교육 횟수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없다	2	6.25
1회	6	18.75
2회	7	21.88
4회이상	17	53.13
계	32	100.00

○ 종업원에 대한 수시 교육 실시횟수

조사에 응한 설문지 중 오류가 발생한 2부를 제외한 총 31부중에서 전체의 51.61%가 매일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22.58%가 1회/월 종업원에 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 전체 74.19%가 1회/월 이상 종업원에 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육의 횟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종업원에 대한 수시 교육 실시 횟수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매일	16	51.61
2회/주	3	9.68
1회/주	3	9.68
1회/월	7	22.58
기타	2	6.45
계	31	100.00

③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사항

○ 1999년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조사에 응한 총 33부 중 1999년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응답의 51.51%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1회(18.18%), 4회 이상(15.15%)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 4-14> 1999년 안전사고 발생건수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없다	17	51.52
1회	6	18.18
2회	3	9.09
3회	2	6.06
4회이상	5	15.15
계	33	100.00

○ 안전사고 발생원인

총 33부 중 오류가 발생한 4부를 제외한 총 29부 중 1999년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으로서는 복수응답을 포함해 전체 응답의 64.90%가 이용자의 부주의를 들었으며, 다음으로 24.30%가 종업원의 부주의를 들었다.

<표 4-15> 안전사고 발생원인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시설물의 결함	1	2.70
종업원의 부주의	9	24.30
이용자의 부주의	24	64.90
시설물의 노후화	3	8.10
계	37	100.00

○ 안전사고 발생 시 업체의 대응방안

총 33부 중 오류가 발생한 2부를 제외한 31부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업체의 대응방안으로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29.3%가 재발방지 조치, 28.3%가 사고피해자에 대한 치료, 27.2%가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6> 안전사고 발생 시 업체의 대응방안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관계기관에 신고	12	13
사고피해자에 대한 치료	26	28.3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	25	27.2
재발방지 조치	27	29.3
기타(재발방지 분석교육)	2	2.2
계	92	100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안전성검사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응한 총 33부의 ‘협회’의 안전성검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응답의 59.99%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협회’의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안전성검사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매우불만족스럽다	3	10.00
불만족스럽다	1	3.33
그저그렇다	8	26.67
만족스럽다	17	56.67
매우만족스럽다	1	3.33
계	30	100.00

④ 유원시설업 운영 시 어려운 점

유원시설업 운영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총 33부 중 오류가 발생한 7부를 제외한 26부에서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전체의 53.8%가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과도한 세금부담이 23.1%로 응답해 전체적으로 76.9%가 정부의 행정규제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4-18> 유원시설업 운영 시 어려운 점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과다한 세금부담	6	18.2
지나친 규제	14	42.4
전문인력수급의 어려움	5	15.2
소비자의 인식부족	5	15.2
기타(부가세, 재산세, 입장객의감소)	3	9.1
계	33	100

2) 유기기구 제작업체 의견조사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행정, 금융 및 세제지원 여부

기구제작과 관련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행정지원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5개 업체 중 2개 업체만이 행정지원 형태로 인·허가 관련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하였으며, 나머지 3개 업체는 행정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5개 업체 모두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4-1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행정, 금융 및 세제지원 여부

구분	행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빈도 수	유효 퍼센트(%)	빈도 수	유효 퍼센트(%)	빈도 수	유효 퍼센트(%)
인허가 관련사항	2	40				
기타(없음)	3	60	5	100	5	100
계	5	100	5	100	5	100

② 유기기구 제작업체 실태

○ 기구 제작과 관련한 독창적인 기술보유 여부

기구 제작과 관련한 독창적인 기술보유 여부 및 보유중인 기술로 유기기구 제작여부와 관련한 설문에서는 조사대상 5개 업체 모두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보유중인 기술로 유기기구를 제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유기기구 제작과 관련해서 몇 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설문에서는 5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5개 이상의 독창적인 기술을, 1개 업체는 1개의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0> 기구 제작과 관련한 독창적인 기술보유 및 제작여부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보유(제작)하고 있다	5	100

<표 4-21> 기구 제작과 관련하여 보유 중인 기술의 수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1개	1	20
5개 이상	4	80
계	5	

○ 기구 제작과 관련해 제작업체와의 협력 여부

기구 제작과 관련해 제작업체와의 협력 여부와 관련한 설문에서 조사에 응한 5개 업체 모두 제작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업체의 종업원 수

종업원 수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종업원이 있는 업체가 1개, 10명 이상 20명 미만 업체가 2개, 5명 이상 10명 미만 업체가 1개, 5명 미만 업체가 1개 업체로 조사되어 조사에 응한 업체 중 2개 업체는 영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2> 업체의 종업원 수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5명 미만	1	20
5명 이상-10명 미만	1	20
10명 이상-20명 미만	2	40
20명 이상-50명 미만	1	20
계	5	100

3. 전문가 의견조사

가. 조사목적

유원시설업의 육성방향과 세부적인 정책대안에 대한 전문가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조사내용

- 유원시설업 법규 관련 의견조사
- 유기기구 제작업체 육성방안 관련 의견조사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 대한 의견조사
-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관련 의견 수렴 등

다. 조사결과⁵³⁾

1) 현행 유원시설업의 구분

현행 우리나라의 유원시설업에 대한 구분은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분이 적정한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에서는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39.6%,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31.2%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70.8%를 차지해 유원시설업의 법적인 분류가 적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3) 전문가 설문조사는 유원시설업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던 학계,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연구원 및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6개 시·도의 유원시설업 담당 공무원, 그리고 유원시설업계의 안전성 검사 및 각종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와 관련된 설문지는 총 58부를 배포했으며 그중 48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의 비율을 보면 정부(투자)기관이 52%, 연구소(원) 23%, 학계 14.6%, 협회 및 업계순으로 되어 있다.

<표 4-23> 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구분에 대한 의견

	빈도 수	유효 퍼센트(%)
적정하지않다	19	39.58
보통이다	15	31.25
적정하다	12	25.00
매우적정하다	2	4.17
계	48	100.00

2) 유기기구 제작업체 관련 사항

① 유기기구 제작업체 지원여부

국내 유원시설업의 육성방안의 한가지 대안으로 유기기구 제작업체의 육성에 대한 의견조사 설문에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47.92%,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35.42%를 차지해 전체 83.34%가 유기기구 제작업체의 육성에 대해 적극적인 육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4> 기구제작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1	2.08
지원 할 필요가 없다	1	2.08
그저 그렇다	6	12.50
지원 할 필요가 있다	23	47.92
적극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	17	35.42
Total	48	100.00

② 제작업체 육성방법

유기기구 제작업체의 육성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타당한 방법이 있겠으나 전문가 설문 의견 조사 결과 자금지원이 29.2%, 기술 및 정보지원이 38.2%로 응답한 제작업체의 육성방안 중 67.4%로 가장 타당한 육성방법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 세제감면 혜택을 준다가 16.9%, 전문기술인력 지원을 해준다가 13.5%로 조사되었다.

<표 4-25> 제작업체 육성 방법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세계감면혜택을 준다	15	16.9
자금지원을 해준다	26	29.2
기술및 정보지원을 해준다	34	38.2
관련법규를 완화해준다	2	2.2
전문기술인력지원을 해준다	12	13.5
계	89	100

3) 유원시설협회 및 안전성검사에 대한 사항

① 안전성 검사 실시기관

현행 유원시설업에서 유기기구에 관련된 안전성 검사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에서 안전성검사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디에서 실시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의견조사에서 전체의 50%가 현행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사되었다.

<표 4-26> 안전성 검사 실시 기관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중앙정부	1	2.08
지방자치단체	8	16.67
시민단체(NGO)	7	14.58
유원시설업협회	24	50.00
기타	6	12.50
시민단체와 협회	2	4.17
계	48	100.00

주) 기타: 공사, 교통안전공단, 전문검사기관, 해외안전성진단기관임.

② 현행 안전성검사에 대한 의견

현행 안전성검사는 ‘협회’자체적으로 년 1회의 정기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공무원과 함께하는 수시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검사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1.67%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적정하다라는 응답은 2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협회’의 안전성검사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7> 현행 안전성 검사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매우적정하지않다	2	4.17
적정하지않다	18	37.50
보통이다	16	33.33
적정하다	8	16.67
매우적정하다	4	8.33
계	48	100.00

주) 기타: 공사, 교통안전공단, 전문검사기관, 해외안전성진단기관임.

③ 안전성검사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중요도 순으로의 응답에서 응답자의 56.25%가 안전성검사 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들었으며 다음으로 27.08%가 안전성 검사와 관련한 법규정의 재정비 및 강화를 들었다. 다음으로 안전성검사 관련 전문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확보 12.50%, 그 외 기타 의견으로 비회원 유원시설업 허가 불허, 운용상 부조리 및 도덕적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표 4-28>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안전성검사 관련 전문인력 확보	27	56.25
안전성검사 관련 전문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확보	6	12.50
안전성검사와 관련한 법규정의 재정비 및 강화	13	27.08
기타	2	4.17
계	48	100.00

주) 기타: 비회원 유원시설업 허가불허, 운용상 부조리 및 도덕적 문제임.

④ 안전전문가 양성교육기관 설립 및 개설

유원시설업의 유기기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안전전문가를 양성할 체계적인 교육기관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는데, 어디에 교육기관의 설립이 적당한가

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전체 응답의 46.81%가 직업전문학교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 2년제 대학이 31.91%로 조사되었다.

<표 4-29> 안전전문기양성 교육기관 설립 및 개설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직업전문학교	22	46.81
대학	15	31.91
대학교	6	12.77
대학원	1	2.13
기타	3	6.38
계	47	100.00

주) 기타: 유원시설협회, 정부산하전문기관, 자격증에 의한 선발.

⑤ 안전문제와 관련해 신규등록 시 협회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유원시설업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협회가입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유원시설업의 신규등록을 허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경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조사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전체 70.83%를 차지하여 현행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는 ‘협회’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0>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신규등록시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매우부정적이다	1	2.08
부정적이다	8	16.67
그저그렇다	5	10.42
긍정적이다	21	43.75
매우긍정적이다	13	27.08
계	48	100.00

4) 유원시설업 관련 일반현황

① 유원시설업의 지식기반산업 여부

유원시설업이 지식기반산업인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08%가 지식기반

산업이라고 응답한 반면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2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18.75%를 차지해 유원시설업이 지식기반산업성격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1> 유원시설업의 지식기반산업 여부에 관한 의견

구분	빈도 수	유효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1	2.08
그렇지않다	8	16.67
그저그렇다	14	29.17
그렇다	19	39.58
매우그렇다	6	12.50
계	48	100.00

② 수요 충족 방안 및 외국테마파크의 유치로 인한 파급효과

향후 유원시설업을 이용하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원시설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89.58%가 긍정적인 응답을 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유원시설업을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2> 수요 증가에 따르는 충족방안 및 외국테마파크의 유치로 인한 파급효과

구분	충족방안 마련		유치로 인한 파급효과	
	빈도 수	유효 퍼센트(%)	빈도 수	유효 퍼센트(%)
매우 부정적이다.			1	2.13
부정적이다	2	4.17	4	8.51
그저그렇다	3	6.25	1	2.13
긍정적이다	27	56.25	29	61.70
매우긍정적이다	16	33.33	12	25.53
계	48	100.00	47	100.00

③ 외국테마파크가 유치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

외국의 테마파크가 국내에 유치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중요도 순으로 조사한 결과 첫 번째로는 응답자의 28.26%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들었으며, 두 번째로는 응답

자의 26.09%가 지방재정의 수입증대를, 세 번째로 23.91%가 지방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여가선택 폭 다양화를 들었으며, 네 번째로는 23.91%가 지방재정 수입의 증대, 지역 주민의 여가선택 폭 다양화 및 선진경영 기술습득을 들었다.

<표 4-33> 외국 테마파크가 국내 유치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지방경제의 활성화	28.26	19.57	23.91	15.22
지방 재정수입의 증대	10.87	26.09	15.22	23.91
지역 주민의 여가선택 폭 다양화	26.09	15.22	23.91	23.91
선진 경영기술 습득	23.91	21.74	19.57	23.91
외자유치로 인한 국제적 신인도 제고효과	10.87	17.39	17.39	13.04
계	100.00	100.00	100.00	100.00

4. 시사점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마련과 관련한 설문 의견조사는 일반인 전화조사, 업계 의견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조사와 관련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인 전화 설문조사

일반인 전화조사와 관련해서 유원시설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서비스, 판매하는 기념품 및 캐릭터 상품의 질, 이용한 시설물의 안전도, 식·음료의 질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한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한 만족도에서는 놀이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두 명 중 한 명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물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약간 비싸다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요인은 향후 잠재고객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업계 설문조사

관광진흥법에 의해 유원시설업 등록을 받은 총 243개 유원시설업체와 28개 유기기구 제작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원시설업체는 33개, 기구제작업체의 경우는 불과 5개 업체만이 조사에 응했는데⁵⁴⁾, 업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원시설업체 설문조사 결과 안전성검사와 관련해서는 조사에 응한 일부 소수의 업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체들이 현행 ‘유원시설협회’의 안전성검사에 대해 너무 형식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확실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안전성검사 관련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응답해 향후 ‘유원시설협회’가 유원시설업의 실질적인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검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원시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부의 유원시설업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유원시설업체들의 신규시설물 설치 및 시설 재개발 사업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한편, 금융 지원에 있어서는 까다로운 서류 제출 및 담보물 설정 등으로 인해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전반적으로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정부의 까다로운 법적 규제, 금융지원 절차의 복잡성, ‘협회’의 형식적인 안전성검사 및 검사비용의 과다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기구 제작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록은 유기기구 제작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구 제작을 하지 않은 업체가 많았으며, 기구 제작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수입만 하는 업체도 다수 있었다. 설문에 응한 소수 유기기구 제작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것은 유기기구 제작 시 안전검사 기준 단일화 및 획일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유원산업 시장이 너무 협소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유기기구 제작업체들이 해외진출 시 해외 진

54) 주: 설문조사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유원시설업 관련 업체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이제껏 이와 같은 설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며, 설문 내용에 답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설문에 대하여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설문외전 조사가 전체 유원시설업계를 대표한다는 대표성에는 다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출 컨소시엄 구축 지원, 수출 장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전문가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유원시설업에 대한 향후 전망은 밝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원시설업의 범규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기타유원시설업을 유원시설업에서 제외하고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대상 유기기구 수를 좀더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기구 제작업체와 관련해서는 기구 제작업체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반영 및 기구제작업체만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협회’ 자체적으로 안전성검사를 담당하지 말고, 제3자가 함께 안전성검사를 담당하는게 좋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안전성검사와 관련해서 ‘협회’의 안전성검사는 유기기구 제작년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1년의 검사기간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구 제작년도에 따라 적절한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그에 합당한 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주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외 ‘협회’는 공공성과 관계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정확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지역의 유원시설업체들과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별 협회 구성을 요구하였다.

설문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파악된 사실은 하나의 유원시설업체 내에 각기 다른 사업장이 있다는 것인데 즉, 한 사업장이 허가를 받으면 그 사업장 내에 각각의 유기기구 들을 임대형식을 통해 각각 운영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전체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과 관련해서는 적절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문제점 종합분석

유원시설업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종합 분석한 결과 현행 유원시설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표 4-34>과 같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유원시설업 육성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34> 국내 유원시설업의 문제점

구분	문제점	내 용	
정부	◦ 법 제도상의 문제	◦ 법적·학술적용어 사용의 혼란 ◦ 진흥법 상의 중복등록, 협회 및 지자체의 이중허가 ◦ 30여개에 이르는 관계법령의 규제과다 ◦ 신규 및 이동유원시설에 대한 법적 장치의 미비 ◦ 취득세 관련법의 미비	
	◦ 행정지원체계 미흡	◦ 유원시설업 전문 공무원의 부재 ◦ 업체수, 매출액, 이용객현황에 대한 기초통계의 부족 ◦ 안전성 검사 인력 외 인력개발 미흡 ◦ 유원시설업의 특화수준 미흡	
유원시설 업계	유원시설 업체	◦ 업체의 영세성 ◦ 집객 노력 결여	◦ 안전성검사기구 10개 미만이 전체 72.5% 차지 ◦ 경영선진화, 마케팅 등 고객확보 노력 결여
	기구제작 업체	◦ 업체의 영세성	◦ 외국업체를 단순·외형적 벤치마킹으로 기구 개조 ↳ 안전에 심각한 위협
		◦ 기술력의 미흡	◦ 1-2개 업체만이 기구제작 ◦ 기구제작관련 표준기준(안)이 없음
		◦ 제조업 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관광 관련 정책적 지원이 전혀 없음
종합유원시설협회	◦ 중앙회의 기능 및 역할 미흡	◦ 시설업체 및 제작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 미흡 ◦ 안전성검사 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미흡 ◦ 홈페이지 구축 및 표준약관의 미비 ◦ ‘협회’가입률의 저조	
	◦ 재원의 부족	◦ 검사 관련 첨단·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다. ◦ 다양한 사업시행에 어려움	

<표계속>

구분	문제점	내용
종합유원시설협회	◦ 인력 및 전문성 미흡	◦ ‘협회’ 고유의 업무수행에 어려움 ◦ 업계의 신뢰도 미흡
안전사고	◦ 사고자료 수집에 애로	◦ 사고의 은폐 및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기에 무마.
	◦ 안전교육의 허술	◦ 안전관리자, 이용객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국민의 안전의식 성향의 인식제고
	◦ 단순보고	◦ 사고발생 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님.

1. 정부의 문제

가. 법 제도상의 문제

1) 용어사용의 혼란

현재 유원시설업과 관련되어 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는 관광진흥법 상에서는 유원시설·유기시설이, 건축법시행령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희시설이, 공중위생법 상에서는 유기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학술적으로는 테마파크, 놀이공원을 사용하고 있다.

<표 4-35>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구분	관련법	정의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유기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영업하는 시설
유기시설	관광진흥법	유원시설 놀이기구를 지칭
유희시설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유원시설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시설
유기장	공중위생법	유희이나 오락을 위한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장소

주) ‘국어대사전’의 사전적 정의⁵⁵⁾

1. 유원: 산책하며 놀만하게 설비하여 놓은 공원
2. 유기: 오락으로 행하는 운동
3. 유희: 즐겁게 놀. 장난으로 놀.
4. 유원지: 유람이나 오락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설비를 한 곳

55)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저, 국민서림, 1994

<표 4-36>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구분	정 의
테마파크	일정한 주제에 입각하여 유기시설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간 전체를 연출하여 방문객들에게 위락을 제공하는 시설로 만들어진 유원지 내지는 레저시설
놀이공원	언론이나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유원시설업이나 전문휴양업을 구분 없이 놀이공원으로 지칭

2) 중복 등록 및 이중 허가

현행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관광진흥법시행령의 유원시설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합(또는 전문)휴양업에 이중으로 등록을 해야하며⁵⁶⁾, 또한 유원시설업과 관련하여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사전허가⁵⁷⁾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허가의 문제가 있다.

3) 관계법령의 규제과다

현재 유원시설업과 관련되는 관계법령은 2장에서 열거한 대로 30여 개에 이르며, 이중 삼중으로 규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원시설업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스케일 메리트가 있어야 고객을 모으는 집객력이 큰데 우리 나라의 경우 법 규상에 시설물의 설치를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유원시설업의 적정규모화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시설물의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법규이다.

- 도시공원법 상 공원시설물 조성면적 제한(규칙 제8조)
 - 어린이공원(60% 이하), 근린공원(40% 이하), 도시자연공원(20% 이하)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면적은 유원지 면적의 100분의 20이내(유원지 면적이 30,000㎡ 미만인 경우 100

56) 1999년 현재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 유원시설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합(전문)휴양업과의 중복건수를 살펴보면, 종합휴양업(제1종)과 10개, 종합휴양업(제2종)과 1개 및 전문휴양업과 13개가 중복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57)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사전허가:

유기기구 설치전 설계도면 및 구조개선서 검토 후 설치(문화관광부 고시)를 해야하나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설치 후 허가가 안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분의 15이내)

- 건축물의 지상연면적 합계(지하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는 유원지면적대비 200% 이내

4) 법규정 미흡

유원시설업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발전하는데 반해 법적인 대응은 유원시설업의 현행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법적으로 관리에서 제외된 시설물들이 생겨나고 있다. 유원시설업과 관련된 법규정 미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원시설업 관련 영업범위의 불확실성

번지점프, 워터파크 등의 신규 시설물들에 대한 법적으로 관리할 만한 관련법령이 없는 실정이다.

② 이동 유원시설에 대한 법적장치 전무

이동 유원시설은 한 곳에 고정하여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는 것이 경영에 애로를 겪어 특정행사에 이용객이 급증하는 엑스포, 박람회, 지방축제, 계절별로(해수욕장, 스키장) 이동하여 길게는 2~3개월, 짧게는 1개월 단위로 이동하여 임시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사례로 외국의 경우 이동 유원시설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최근에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유원시설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4-37> 국내 이동 유원시설 현황

구 분		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신규설치	외국산	227	18	13	29	79	88
	국내산	304	51	62	38	81	72
이동 설치		335	95	114	51	47	28
총 계		866	164	189	118	207	188

자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자료(2000. 9. 30. 현재)

국내 이동 유원시설과 관련하여 '98년 IMF 이후 신규투자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98년부터 리스자금 또는 렌탈 자금을 유기기구 신규 도입 시 자금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안전관리자 선임문제의 불투명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 10]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보면 안전관리자 선임은 업체의 권고사항일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도 가할 수 없다. 또한 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을 뿐 해당 유기기구별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유무가 특화 되어 있지 않아 유원시설 안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④ 취득세 관련법의 미비

현행 유기기구는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에 따라 설치되어져 행정관청의 공작물 대장에 등재되어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유기기구의 특성상 건축물과 병행되어지는 기구도 있고, 기구자체가 건축물로 정의되어지는 것도 있어 각 시·군·구의 해석도 틀린 것이 현 실정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 또한 유기기구를 1년에 몇 회 이동하여도 이동시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취득세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법적인 소유권과 은행 대출시 담보물로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유기기구에 대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⁸⁾

58) 유희시설의 놀이기구 등이 철틀구조의 기둥으로 설치돼 이동이 쉽지 않다면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야하며 이 시설물은 당연히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판결문 2000. 10. 02. www. joins.com)

나. 정부의 행정체계 미흡

1) 정부내 유원시설업 관련 전문공무원의 부재

유원시설업과 관련하여 과거 공중위생법 상의 유기장업에 관한 정부정책자료를 수집하려 하였으나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바,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어진 이후에도 아직까지 크게 개선된바가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유원시설업체에 수시검사를 통한 지도·감독해야 하는데, 순환식 근무로 인하여 유원시설업에 대한 전문성 축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2) 기초 통계의 절대 부족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전국의 시설업체 및 기구 제작업체에 대한 정확한 통계파악이 안되어 있어 업체 수 파악 및 업체별 매출액 현황 파악에 애로점이 있으며, 또한 시설업체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공원을 방문한 이용객 수 및 이용객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3) 전문 인력개발 미흡

유원시설업의 인력개발과 관련해서는 유기시설의 안전성검사 인력만이 논의되었을 뿐 그 이외의 경영선진화 및 유원시설업을 관리 등 체계적인 인력개발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4) 유원시설업의 특화수준 미흡

국내에서 운영중인 유원시설업은 외국 및 타 산업과 비교하여 유원시설업의 한국적인 특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외국 유원시설업의 모방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한국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한 유원시설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국내 유원시설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어 향후 외국의 유원시설업체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원시설업계의 문제

가. 유원시설업체

‘98년 10월 현재 안전성검사 대상 놀이기구 보유현황을 보면 10개 미만 업체가 전체 유원시설업의 72.5%를 차지하고 있으며, 5개 이하의 놀이기구 소유업체가 전체 4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유원시설업은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원시설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한 사업장 내에 유기기구들은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업장 전체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유원시설업체를 제외하고는 놀이공원을 찾는 이용객 수를 늘리기 위한 경영선진화 도입 및 마케팅 등의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유기기구 제작업체

국내 유원시설업체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놀이기구의 외국산 비율은 대략 75~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기구 제작업체의 영세성, 기술력의 미흡으로 인한 자체생산 및 수급력의 미약 및 시장의 신뢰도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에 유기기구 제작업체로 등록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구 제작이 가능한 업체는 1~2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며, 기구 제작업체의 경우 6개월~1년 정도 영업을 한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내 유기기구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표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국내 유기기구 제작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관광과 관련한 정책적인 지원을 자율적으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외국(스위스)의 경우 유기기구 제작은 초정밀도를 다루는 국방산업체에서 제작하고 있다.

3.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문제

가. 중앙회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미흡

① 중앙회로서의 유원시설업체 및 기구제작업체에 대한 현황파악 미흡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유원시설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중인 시설업체 및 기구제작업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안전성검사 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미흡

유원시설업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시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시하고 있다. ‘협회’의 경우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공학박사(교수) 1명과 업체관련 기술자 3~4명이 해당지역의 놀이시설에 대해 년 1회의 정기안전점검과 수시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협회’의 인력 및 장비로는 안전점검을 충분하게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협회’가 수시로 실시하는 자체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장비부족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단순한 놀이시설 운행관리 점검에 그쳐 실질적인 기계적 안전점검으로서는 실효성이 미흡할 것으로 보여진다.

③ 홈페이지 구축의 미비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 모든 기업 및 기관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 활용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조속히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④ 표준 약관의 미비

유원시설업과 비슷한 종합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허가 시 약관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유원시설업의 경우는 약관제출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물론 각종 보

협에 가입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체제를 갖추고는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구제·보상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회 차원의 표준약관에 대한 조속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재원의 부족

안전성검사와 관련해서 ‘협회’는 정밀점검을 위하여 내부부품의 마모 및 균열, 손상정도를 레이저나 초음파 등으로 용이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가 필요하나 현행 ‘협회’의 예산으로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 대학교 및 타 기관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거나 외형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 재원의 부족한 원인으로서는 전체 251개 사업체 중 36.25%인 91개 업체만이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가입률의 저조가 원인이며 이로 인해 안전성검사 이외의 ‘협회’의 다양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다. 인력 및 전문성 미흡

‘협회’의 기능과 역할은 앞서 살펴 본대로 매우 다양하다. 현재까지의 주된 역할인 안전성검사 부분에서도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협회’고유의 역할인 사업자의 이익대변 측면에서도 추가인력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협회의 대 정부 건의 사항⁵⁹⁾

○ 협조 공문 발송 시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기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수시검사 시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과, 문화관광부의 관광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과에서 각기 따로 협조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59)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개최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협회’ 및 업계의 대 정부 건의 사항을 실은 것임.

○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지원 검토

유기기구 제작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중소기업자금의 지원 또는 시설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협회’의 예산으로는 제작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설업체에 대한 관리와 안전측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정부의 재원지원이 필요하다.

○ 국세청(정부)의 표준전산망 시스템 이용

정부는 유원시설업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통계를 얻기 위해 국세청의 표준전산망 시스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현행 표준전산망 시스템의 이용 수수료가 3%는 유원시설업체의 경영에 부담이 되고있는 현실이다.

○ 유기기구 설치전 설계도면 및 구조개선서 검토 후 설치 의무화

현행 문화관광부의 고시로 되어있는 ‘유기기구 설치전 설계도면 및 구조개선서 검토 후 설치’를 의무화하여 업체의 난립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 외 협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으로 유원시설업체의 전기 및 수도요금 산업용 적용⁶⁰⁾ 등이 있다.

-
- 60) 1. 전기 요금의 산업용 적용: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59조 및 [별표] 산업용 전력 적용대상기준표에 의거하여 책정하며, 광업 및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산업용으로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2. 수도 요금의 산업용 적용: 수도 요금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구분되며, 수도요금의 경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옥탁용 및 전용공업용으로 구분된다. 산업용 요금의 적용이란 ‘전용공업용’의 적용을 말하는데 서비스산업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없어 ‘전용공업용’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단, 외래객 유치실적에 따라 전용공업용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가능

4. 안전사고 문제

유원시설업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자체를 은폐하고 사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기에 사고를 무마시킴으로서 정확한 사고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안전사고의 발행빈도를 보면 주로 행락철(봄), 해빙기(봄), 소풍철(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예산,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이 기간에 집중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협회’가 작성한 “유원시설 안전기준마련 연구결과보고서”에서는 운행자 관리미숙이 전체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된 반면, 업계 설문조사 결과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이용객의 부주의라고 응답함으로써 동일사안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협회’의 보고서에서는 운전자 교육 강화 및 운영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작성된 반면, 업계 설문조사 결과 이용객에 대한 교육지침이 허술한 것으로 나와 이용객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 시 외국(미국)의 경우 주 정부 경찰, 변호사, 유원시설단체, 보험회사가 서로 연관되어 사고의 처리가 빠르고 정확한데 반해 우리 나라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협회’, 노동부, 문화관광부에 신고는 하게 되어 있지만 사고발생 신고가 의무 사항이 아닌 단순한 보고차원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제1절. 기본방향

과거 정부의 정책은 유원시설업을 소비·향락산업으로 인식하여 국민의 여가 진흥 차원의 육성보다는 규제차원에서 관리되어 졌다. 따라서 국민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 차원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 종합분석을 통해 유원시설업 육성에 관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설정하여 세부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코자 한다.

- 첫째,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육성환경 조성 등에 주력
- 둘째, 비교우위의 과학기술분야와 한국적 문화를 결합한 유원시설업의 건설
- 셋째, 대형유원시설업체와 중·소유원시설업체의 차별적인 지원방안 수립
- 넷째, 유기사설 제작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 다섯째, 중·장기 육성정책 수립
- 여섯째, 단계별·업종별 육성정책 수립

제2절 법체계 정비

1. 추진 배경

유원시설업은 '99년 2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시행령에서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법으로 이관되면서 이전 보건복지부의 법적 체계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다. 공중위생법의 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이 목적인 반면,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정책목적과 추구하는 목표가 상이하다. 이와 관련 법체계 정비는 유원시설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

안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 사업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법적 정의 개정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 수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의와 세부업종 구분을 살펴볼 때 유원시설업에 대한 정책관점은 시설위주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구분된 세부업종의 명칭은 여행업에서의 일반, 국외, 국내의 구분명칭,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의 구분명칭과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유원시설업의 정의에 대해 연구과정에서 일부전문가들은 시설적 관점보다는 공간적 관점으로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이유로는 시설 자체의 개발은 향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테마를 갖는 복합공간으로서의 재정의가 향후 유원시설업의 발전방향에 부합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중소 규모의 유원시설업은 그러한 대안이 유효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휴양업과 차이를 보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대형규모의 종합유원시설업 역시 종합휴양업과 별다른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결국 이럴 경우 휴양업으로 통합되면서 유원시설업은 없어지고, 유원시설을 갖춘 휴양업에 대한 시설안전정책 만이 운영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한 제도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비록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해도 속성상 이해관계 집단의 사전적 이해관계 표출이 공개적이지 않고, 이익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후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현행 세부업종구분 명칭을 큰 문제로 볼 수는 없으나 정책을 대형과 중·소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관련 행정의 식별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럴 경우 대형유원시설업과 중·소 유원시설업으로의 구분이

대안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행 유원시설업에서 신고업종인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기준의 유기기구가 없어 실질적인 행정관리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유원시설업의 규제완화 및 관리·감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원시설업 업종범위에서의 제외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기타 유원시설업의 제외도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친 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원시설업체의 ‘협회’가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70.83%가 가입해야 한다고 나타나 기존 유원시설업 관련법규에서 ‘협회’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가입의 무화 쪽으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회’가입에 따른 장점으로는 ‘협회’의 기능 활성화를 개대할 수 있으나 정부의 규제개혁 추세에 반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검토가 갖는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표 5-1> 유원시설업의 주요 법적 정의 개정(안)에 따른 장·단점 비교

현행 법규	검토 대안	장점	단점
종합유원시설업과 종합(전문)휴양업과의 중복	종합(전문)휴양업에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원시설업의 경쟁력강화 행정의 간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원시설업의 법규 무의미
시설물(탑승물)위주의 정의	공간개념으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원시설업의 테마파크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전문)휴양업과의 비차별성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	기타유원시설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완화 행정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유원시설업을 관리·감독할 법규가 없음
유원시설업체의 ‘협회’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음	‘협회’가입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회’기능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추세 반하는 규제강화

○ 추진시기: 2001년~ 2003년

나. 유원시설업의 범위 조정

유원시설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첫째, 이동유원시설, 번지점프나 워터파크 등의 신규시

설물을 유원시설업에 포함하는 방안, 둘째, 도시공원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치면적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셋째, 유기시설 제작업체의 관광사업 편입 필요성 문제 등이 조정검토 대상으로 보여진다.

유원시설업의 발전은 사람들의 욕구추구의 다양화와 첨단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이루어지는 반면 법적인 대응은 최근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동유원시설, 번지점프나 워터파크 등과 같이 법적인 장치가 없는 신규시설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규시설 및 이동 유원시설을 유원시설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규의 재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행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공원시설물 조성면적의 제한 기준으로 인해 유기시설물의 신규설치 및 확장의 불가능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렵다. 그러나 공원 내 설치면적을 완화하거나 확대할 경우, 자칫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의 공원 본래 기능상실을 우려할 수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설계상의 고려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규제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특정공간의 복합적 이용이라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기준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크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체로 되어있어 관광산업과 관련한 유기기구 제작업체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기기구 제작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우리 나라가 경쟁력을 갖고있는 전자, 전기 산업과 연계한다면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조사에서는 유기기구 제작업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크게(88.34%)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유관업종의 무조건적인 관광산업 편입은 자칫 원칙을 잃을 수 있으므로, 유기기구 제작업체의 관광산업 편입은 검토하지 않되, 이를 지원할 프로그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세부 육성 프로그램에서 제시코자 한다.

한편, 유원시설업의 범위 조정이 갖는 장·단점 비교는 다음과 같다.

<표 5-2> 유원시설업의 범위 개정(안)에 따른 장·단점 비교

현행 법규	검토 대안	장점	단점
신규시설물(이동유원 시설, 번지점프, 워터파크 등)에 대한 정의가 없다	유원시설업 범위 포함	◦ 정책범위 대상으로 포함	◦ 행정부담 가중
도시공원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치면적 제한	설치면적의 제한 완화	◦ 유원시설업의 활성화 기여	◦ 공원의 기능과 상충
유기기구 제작업체에 대한 언급이 없음	제작업체 지원 프로그램 마련	◦ 관광산업체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육성책 마련 가능	◦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과의 연계성 미약 ◦ 관광산업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 추진시기: 2001년~ 2003년

다. 용어의 불일치 통일

현재 국내에서 유원시설업과 관련되어 쓰여지고 있는 용어로는 유원시설, 유희시설, 유기시설, 유원지, 테마파크, 놀이공원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유원시설, 유희시설, 유기시설, 유원지 등이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법 등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학술적으로는 테마파크, 놀이공원 등이, 그리고 한국표준분류표 상에는 유원지, 테마파크업 등으로 각기 달리 사용되어짐으로 인해 정부의 유원시설업 정책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용어사용의 불일치와 관련해서는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한가지 용어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유원시설업에 대한 정책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원시설업의 용어의 불일치 통일에 대한 장·단점 비교는 다음과 같다.

<표 5-3> 유원시설업의 용어의 불일치 통일에 따른 장·단점 비교

현행 법규	개정 방향	장점	단점
용어의 불일치 (유원시설, 유기사설, 유희시설, 유기장, 테마파크, 놀이공원)	공청회를 통한 단일용어로 통일	◦ 유원시설업에 대한 혼란 방지	◦ 행정부담 소요

○ 추진시기: 2001년

제3절 세부 육성방안

본 연구에서는 세부육성방안을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에 맞추어 2008년까지를 육성방안 기간으로 잡아 각각의 단계별로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5-4>는 유원시설업의 세부 육성방안에 관한 사업별·주체별 내용이다.

<표 5-4> 세부 육성 방안

사업구분	주요사업	사업추진 주체					
		정부	지자체	협회	업계	학계	NGO
투자 및 운영여건 개선사업	◦ 금융여건 개선	○	◎				
	◦ 세제관련 투자여건 개선	○	◎	△			
	◦ 조사·통계·연구자료 제공	○		◎	△	△	
	◦ 정보·기술지도의 강화	△		◎	○	○	
경영 및 인력지원 사업	◦ 유원시설 특화 지원	○	◎	○	△	○	
	◦ 유원시설 박람회 개최	△	△	○	◎		
	◦ 인식 제고사업 전개	○		◎	○	△	○
	◦ 안전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		○	△	△	
	◦ 자격증 제도 및 종사원 재교육과정 마련	○		◎	○	△	

사업구분	주요사업	사업추진 주체					
		정부	지자체	협회	업계	학계	NGO
안전 및 행정절차 합리화 지원사업	◦ 안전검사 제도의 정비	○		◎	△		○
	◦ 규제정책 재정비	◎	△	○		△	
	◦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		◎	○		○
	◦ 투자행정여건 개선	○	◎	○		△	

주) 정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외 정부투자기관 포함(관광공사, 한국관광연구원, 산업인력공단)

업계: 유원시설업체, 유기기구제작업체, 컨소시엄 포함

◎ 중심주체 ○ 제1 협력주체 △ 제2 협력주체

1. 투자 및 운영여건 개선사업

가. 사업추진 배경

유원시설업에 대한 세계의 조류는 자국민의 여가활용의 장 확보 및 외래관광객의 입국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책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유원시설업의 정책적 육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유원시설업은 초기 시설투자비가 막대하고, 자본회수율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개인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외국의 경우와 같이 테마파크 건설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세제상의 혜택 및 금융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 차원에서는 국내 유원시설업의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정부, 협회 및 업계의 공동노력으로 체계적인 네트워크 및 DB를 구축하여 외국의 유원시설업 동향, 기술의 지원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나. 주요 사업내용

1) 금융여건 개선사업⁶¹⁾

○ 지방자치단체의 유희부지 무상제공

시·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유원시설업체가 없는 경우나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희부지의 무상제공, 장기 임대의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희부지 무상제공 및 장기임대는 유원시설업 신규 진출 시 초기 투자비용에서 토지가격이 차지하는 과중한 부담을 축소시켜, 지역에 유원시설업을 건설하려는 업체에게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유희부지 무상제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지역주민 여가 생활공간의 확충차원에서 유희지를 활용했다고 하는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각종 기금의 지원확대 및 활용방안마련

정부가 유원시설업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금으로는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 새천년관광국민5호 투자조합기금 및 중소기업자금 등이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유원시설업의 막대한 초기시설투자비용에 비해 지원규모가 지나치게 적고, 기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업체가 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홍보의 부족으로 유원시설업체 및 기구제작업체가 기금의 유원시설업 지원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문화관광부)가 유원시설업에 신규 진출하는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현재의 기금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현재의 기금지원 관련 담보 설정조건을 개선하여 유원시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의 직접 보증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천년관광국민5호 투자조합 기금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유원시설업체 및 기구제작업체 들의 인식이 낮은 것을 감안, 집중적인 홍보대책이

61) 기금 지원기준:

1. 현행기준을 고려, 일정규모이상의 외래객 입국실적 이상을 대상으로 업체운영지원 기준설정
2. 년 몇 개를 대상으로 유원시설 개발에 관한 개발기금 지원 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소기업자금의 경우는 기금운영의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문화관광부가 인정하는 업체의 경우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추진시기: 2001년~ 2003년

2) 세제관련 투자여건 개선사업

○ 세제감면, 세금의 분할납부 및 기한 연장

유원시설업 관련 세제에 대한 업체의 의견은 전기 및 수도요금에 대해 산업용으로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적용대상기준표에 의거하여 책정하며, 광업 및 제조업에 한하여 산업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구분하며, 산업용은 ‘전용공업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인 유원시설업의 경우 전기 및 수도요금의 경우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산업용 요금의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수도요금의 경우 외래객 유치실적에 따라 일정부분 “전용공업용”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후 국제적인 대규모의 유원시설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유치 방안으로 ‘민자유치촉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동업종을 포함하여 대폭적인 세제감면을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추진시기: 2001년~ 2003년

3) 조사·통계·연구자료제공

○ 국내 유원시설업의 현황과악

유원시설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내 유원시설업의 수요와 공급규모, 이용객의 행태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원시설업 현황과악은 ‘협회’가 현재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문화관광부가 이를 특정사업으로 정하여 위탁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때 유원시설업의 현황과악은 국내 유원시설업과 국외 유원시설업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유원시설업에서는 지역별 업체 수, 업체별 매출현황, 이용객의 소비행태, 업체별 수요 및 공급규모 등의 일반적인 현황과 안전사고 관련 실태조사로 나누어 년 1회 조사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외 유원시설업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 등을 통해 세계유원시설업의 동향 및 추세를 파악하여, 연도별로 통계·자료집의 발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자료는 정책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유원시설업체의 경영선진화를 위해 적절한 정기배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유기기구 제작설계 표준지침 및 합리화 방안

현행 국내 유원시설 유기기구 제작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유기기구 제작업체는 28개사가 있지만 대부분이 수출·입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구제작업체는 2~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매우 영세하여 자체 기술개발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편, 외국의 유기기구를 모방한 기구제작에 대한 국내 자체적인 기구제작 표준(안)이 없어 유기기구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회의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자칫 사고의 가능성은 물론 기술발전의 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외국의 유기기구 제작은 첨단 기술업체가 제작하는데 반해 국내 유기기구제작은 비전문적인 영세업체가 제작함으로써 인해 기구제작에 전문성을 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유기기구의 비전문적인 제작수준을 감안하여, ‘협회’가 주도적으로 KIST, 기계연구소 등의 전문 기술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유기기구 제작에 대한 국제적인 공통 표준(안) 마련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과학기술처와 협의를 통해 ‘협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줌과 동시에 ‘협회’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유기기구 제작 표준(안)을 향후 기구제작 시 준용하도록 하는 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 기타 관련연구의 수행

유원시설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의 관련 연구 경향은 사실상 시장의 행태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는 경향이 강하며, 제도 연구 등 종합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관련논문 공모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고도화된 정책결정을 위해 유원시설업에 대한 정기적인 효과 측정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추진시기: 2001년~ 2003년

4) 정보·기술지도의 강화

○ 유기기구 제작기술의 기술자문 및 기술제공

현행 국내 유기기구의 제작기술 수준은 외국의 기구제작기술을 외관적으로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으로 외국 제작업체가 기구제작 시 고려하는 내부 인장강도, 첨단기술의 사용여부 및 안전성 테스트와 같은 세밀한 기술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제작된 유기기구는 대형사고의 가능성은 물론 기술발전의 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열악한 국내 유기기구 제작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향후 수출을 고려한 유기기구 제작을 위하여, 유원시설업계에서는 ‘협회’가 중심이 되어 KIST, 기계연구소 등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협회’는 관광공사의 해외지사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외국의 기구제작 동향 및 제작기술 벤치마킹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기기구 제작업체에 대한 유기기구의 부품국산화 및 제작기술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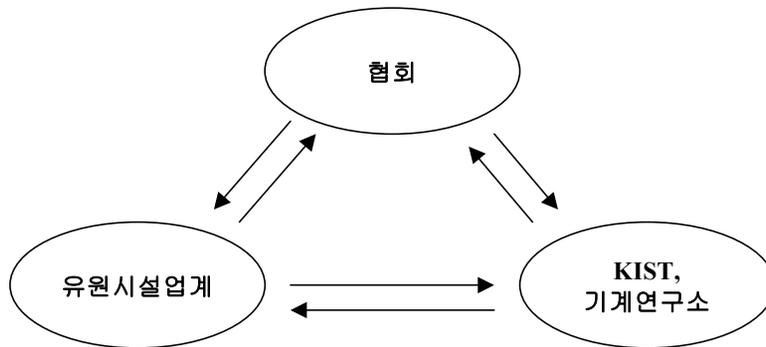
○ 트라이앵글 네트워크 구축⁶²⁾

국내 유원시설업의 경우 ‘협회’, 유원시설업체 및 기구제작업체 상호간의 연결고리가

62) 유기기구 수입시 수입관리 대책 마련:

1. 특정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수입선 다변화 추진 검토
2. 기구수입 시 기술과 노하우 함께 수입하는 방안 마련 검토

매우 약하여 결합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유원시설업과 기구제작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네트워크의 적극 가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유원시설업을 형성하고 있는 ‘협회’, 유원시설업체 및 기구제작업체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네트워크 구축과 유원시설업 전반에 관한 DB구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지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협회’를 축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업체별 수출·입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유기기구 구입 시 일괄구매 및 일대일 맞춤 구매를 실시하여 업체별 경영효율화를 높이고, 구축된 DB를 통하여 일대일 마케팅방안을 마련하여 수익성 사업을 전개토록 함으로써 국내 유원시설업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5-1> 정보·기술지도의 강화체계

○ 추진시기: 2004년~ 2006년

2. 경영 및 인력지원 사업

가. 사업추진 배경

1960년대에 창경원에 간단한 놀이기구의 등장으로 시작된 국내 유원시설업은 그동안 상당한 양적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아직도 외국 유원시설업체의 모방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전성검사 인력 외에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력수급 대

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영 및 인력지원 사업은 기존의 국내 유원시설업 중 일부 대형유원시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원시설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각국은 상당기간 동안 자국의 문화적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한 관광산업의 접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만이 갖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속성을 타 산업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시설과 연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크다. 또한 홍보 및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박람회 개최 및 참여를 통한 국내 유원시설업체 및 기구제작업체의 해외홍보 및 해외진출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나. 주요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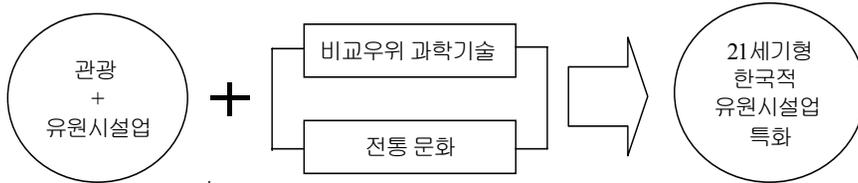
1) 유원시설 특화지원⁶³⁾

○ 한국적 문화와 비교우위의 산업시설 접목

현재 국내 유원시설업은 일부 대형유원시설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 유원시설업체로서 영세성과 함께 경영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지역밀착형 유원시설업을 건설하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오랜 세월 거치면서 축적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관광산업, 특히 유원시설업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관광산업 이외의 타 산업에서 다른 나라보다 비교우위의 산업인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적 콘텐츠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자, 전기 및 정보통신 산업과 접목시켜 한국적 유원시설업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의 유원시설업은 한층 더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국적 문화를 스토리텔링화 한 유원시설업의 건설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는 그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지역설화나 전설을 바탕으로 리모델링화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화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특화된 유원시설업체를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관광상품으로 인정하여 해외진

63) 에버랜드의 대만진출 사례: '98년 대만의 디스커버리월드 워터파크에 에버랜드의 서비스, 운영, 경영, 시설 및 안전과 연계하여 턴키방식으로 삼성건설과 함께 진출.

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 한국적 유원시설 특화개념

○ 추진시기: 2004년~ 2008년

2) 유원시설 박람회 개최

○ 박람회 개최 및 지원

일반적으로 박람회 개최의 목적은 정보획득, 홍보 및 기술개발 습득 등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원시설업의 육성 및 홍보와 관련해서 경쟁적인 박람회의 개최 및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원시설업 관련 박람회로는 IAAPA show 및 PARK show 등이 있다. 유원시설업 관련 박람회의 개최는 유원시설업체 및 기구 제작업체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장으로 유원시설업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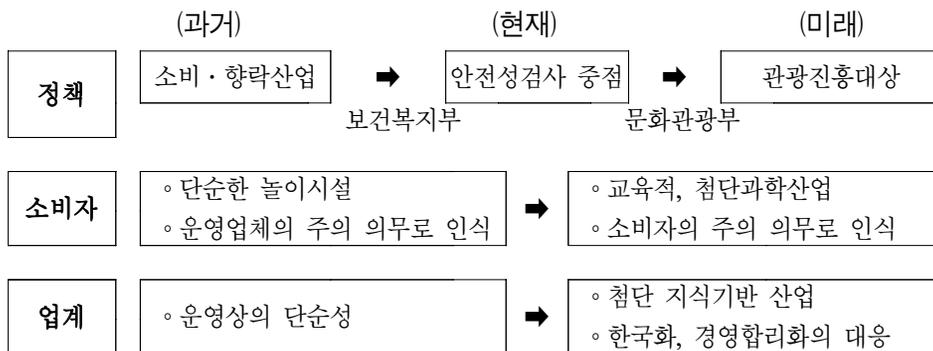
유원시설업 박람회의 개최 및 유치노력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협회’를 중심으로 유원시설업체 및 기구제작업체가 콘소시엄을 구성한 가칭 ‘유원시설업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박람회 유치와 더불어 진행해야 할 것으로는 가칭 Korea Fun Expo를 개최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을 적극 활용한 인터넷 사이버 박람회의 신설을 추진하여 해외 관광시장을 겨냥한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여 국내 유원시설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화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추진시기: 2003년~ 2008년

3) 인식제고 사업전개

○ 안전사고 관련 인식제고

지난 10년 동안 유원시설업에서의 소비자 안전사고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왔다. 유원시설업의 소비자 안전사고의 증가는 유원시설 놀이기구의 불량, 안전성검사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소비자의 유원시설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의식 불감증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의 경우 놀이시설 주위로 방어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건 수가 낮은데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방어막이 있고, 경고문구 표지판이 체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용자의의식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놀이기구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문화관광부, 시민단체(NGO) 및 유원시설업체와 공동으로 각종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소비자의 안전의식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원시설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부실한 놀이기구의 설치를 지양하는 의식전환 운동을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크다. 또한 안전사고 제로운동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3> 인식제고 사업의 추진방향

○ 추진시기: 2001년~ 2003년

4) 안전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 대학 내 안전 전문인력 양성과정개설 추진

현행 우리 나라 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이외에는 유원시설업관리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유원시설업 안전관리도 산업안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관리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유원시설의 관리가 개별적인 전문분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향후 우리 나라의 유원시설업은 경제의 성장 및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전문인력은 향후 추가적인 전문인력의 공급이 필요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원시설업계가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4년제 대학에 유원시설 안전관리과의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노동부와는 기존 유원시설업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위탁과정을 산업학교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유원시설 관리스쿨 개설추진

국내에 유원시설업이 도입된 이후 우리 나라의 유원시설업은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원시설업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매우 미흡했다. 그에 비해 미국의 경우 디즈니랜드는 디즈니 스쿨을 통해 유원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전세계 유원시설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유원시설업의 양적 규모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행 운영중인 빅3(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의 협의 하에 외국의 디즈니스쿨과 같은 유사 성격의 가칭 “유원시설 관리스쿨”의 개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현재 에버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를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향후 전문적인 유원시설 관리스쿨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칭 “유원시설 관리스쿨”의 개설이 추진될 경우 문화관광부와 ‘협회’는 개설에 필요한 법적 제반요건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추진시기: 2004년~ 2006년

5) 자격증제도 및 종사원 재교육과정 마련

○ 안전관리 및 유원시설업 관리 자격증제도의 도입

현재 국내 유원시설업과 관련한 자격증으로는 산업안전관리 자격증이 유원시설 안전관리 자격증으로 대체 활용되고 있다. 유원시설업은 대규모의 시설들은 한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공간활용 및 시설물의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원시설업 관리와 관련된 전문자격증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신규 유원시설 안전관리 및 유원시설 관리 자격증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유원시설업 관련 자격증제도의 도입은 학계, 유원시설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자격증의 타당성을 우선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후 문화관광부가 유원시설과 관련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협화’가 주도적으로 산업인력공단과 협의를 통하여 유원시설 안전관리, 유원시설 운영관리 및 총괄지배인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크다.

○ 추진시기: 2004년~ 2006년

3. 안전 및 행정절차 합리화 지원사업

가. 사업추진 배경

관광진흥법에 포함되기 이전의 유원시설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없었으며, 관련법규가 3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규제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다. 이와 같은 유원시설업의 관련법규는 관광진흥법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대부분이 남아있어 향후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유원시설업 육성정책 수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안전 및 행정절차 합리화 지원사업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성검사 부분은 강화를 추진하되, 유원시설 기구의 법적인 미비점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완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나. 주요 사업내용

1) 안전검사 제도의 정비

○ 안전사고 관련법정비

국내 유원시설업 안전사고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사고가 발생해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기에 무마시켜버려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외국의 경우는 유원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 경찰, 변호사, 유원시설단체 및 보험회사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사고처리가 빠르고 정확한데 반해 우리 나라의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해 신고의 의무조차 없어 단순보상 등으로만 끝나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한 해결책으로는 문화관광부가 ‘협회’의 도움을 받아 주도적으로 안전사고 관련 법규를 현행 단순보고에서 사고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사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고내용의 공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사고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고업체에 대한 해당놀이기구 운행중지 및 해당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크다.

○ ‘협회’의 안전성검사 기준강화

현행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는 문화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협회’에서 1년에 한번씩 전국을 5개 지구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협회’의 정기 안전성검사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엄밀하게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비의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하게 수행키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협회’와 제3의 안전성검사 전문기관에 공동으로 위탁을 주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안전성검사의 정확한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은 시민단체(NGO)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협회’의 주관 하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및 비상훈련 등을 실시하고,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기구제작업체와 안전검사자간의 대립적인 관계를 해소하는 지속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외부 안전전문가와 유기적 연결

‘협회’의 안전성검사를 보다 충실화하기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두고있는 대학과의 연계

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대학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협회’는 지속적인 외부 안전전문가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통하여 ‘협회’가 간과하거나 수행키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조언 및 검사위탁 등의 방법을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추진시기: 2001년~ 2003년

2) 규제정책 재정비

○ 안전성검사를 제외한 전반적인 규제완화 추진

유원시설업 관련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시설물설치 면적의 제한, 중복등록과 이중허가의 인·허가 관련 규정이 나타나며, 도시공원법에서는 실내 유원시설업의 요금규제와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유원시설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안전성검사를 제외하고는 대폭적인 규제의 완화를 통해 보다 용이한 유원시설업의 신규진출 및 증·개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크다.

○ 취득세 관련법의 정비

현행 유기기구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에 따라 설치되어져, 행정관청의 공작물 대장에 등재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병행되어 분류된 것도 있고, 건축물로 정의된 것도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행 건축법 시행령의 불분명한 정의로 인해 유기기구의 재산권이나 소유권의 인정과 은행 대출시 담보 설정 등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유기기구의 이동 시 마다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많다. 이러한 유기기구의 담보설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의 판결에서도 담보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문제점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부처 협의 시 유기기구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기기구도 자동차 등록증과 같이 유기기구의 등록증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유기기구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 허가의 단일화 추진

현행 법령에서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유원시설업과 종합(또는 전문)휴양업으로 이중의 등록을 해야하며,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의 고시에 의한 ‘협회’의 사전허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유원시설업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부대시설물에 대해서도 각각의 허가를 적용해 업체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유원시설업 관련 모든 허가사항을 종합유원시설업 허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은 허가관련 법규의 심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일정부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 추진시기: 2001년~ 2003년

3)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 유원시설업 표준약관 마련

유원시설업과 유사한 종합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허가 시 약관을 제출하고 있으나 유원시설업의 경우 약관제출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수준의 소비자피해구제 시스템만 갖추고 있다. 특히 유원시설 이용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에서 유원시설의 안전수준이 큰 신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준약관 없이 운영되는 현행 시스템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어 향후 조속히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에 대해 명확한 보상범위가 제시될 필요가 크다. 유원시설업의 표준약관 미비는 ‘협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되며, 시민단체(NGO)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추진시기: 2001년~ 2003년

4) 투자행정여건 개선

○ 투자행정담당 전담자문반 상설운영

투자행정은 국내 유원시설업에 대한 투자자의 편의를 돕는 행정적인 절차이다. 이와

관련 대규모 유원시설업에 대한 투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전담자문반을 상시로 운영,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의 실시와 행정정보의 공개도입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투자행정담당 전담자문반의 운영은 침체되어 있는 국내 유원시설업에 외국자본의 유치를 끌어들이며 중·소 유원시설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세제감면, 부지 장기 저리 임대 및 유기사설 취득세의 면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문화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행정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책 등의 조성을 통해 해당지역에 효과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추진시기: 2001년~ 2003년

제4절 추진일정

육성방안의 추진일정에서 법체계 정비의 경우 효과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1단계인 2001년~2003년으로 정했다.

세부사업에서는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사업들을 1단계 육성방안 프로그램에 편성했으며, 시간을 두고서 육성해야 하는 사업들은 2단계 및 3단계에 걸쳐 추진일정을 마련하였다. 2단계 추진일정 사업에는 정보·기술지도의 강화, 안전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자격증제도 및 종사원 재교육과정 마련 등을 정했다. 그리고 3단계 추진일정 사업으로는 유원시설 특화지원 및 유원시설 박람회 개최사업 등을 정했다.

<표 5-5> 사업별 · 주체별 추진시기

구 분		중심 주체	1단계			2단계			3단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법체계 정비	법적 정의 개정	정부	→							
	유원시설업의 범위 개정	정부	→							
	용어의 불일치 통일	정부	→							

투자 및 운영여건 개선사업	금융 여건개선	지자체	→							
	세제관련 투자여건 개선	지자체	→							
	조사·통계·연구자료 제공	협회	→							
	정보·기술지도의 강화	협회				→				
경영 및 인력지원 사업	유원시설 특화지원	지자체				→				
	유원시설 박람회 개최	업계		→						
	인식제고 사업전개	협회	→							
	안전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정부				→				
	자격증제도 및 종사원 재교육과정 마련	협회				→				
안전 및 행정절차 합리화 지원사업	안전검사 제도의 정비	협회	→							
	규제정책 재정비	정부	→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협회	→							
	투자행정여건 개선	지자체	→							

제6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외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인공자원의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광매력을 높이고, 친환경적 관광개발 형태로서 도심형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유원시설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프로그램의 모색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황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유원시설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 유원시설업 운영현황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유원시설업의 구분이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로만 구분되어 있고 용어상의 혼동도 일부 나타난다. 산업정책지원과 관련해서는 '99년 2월 관광진흥법으로 이관된 이후 '99년에 처음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그 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며, 조사·연구 역시 관심이 저조해 '97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유원시설업은 종합, 일반 및 기타 유원시설업체 수가 총 243개가 있으며, 유기기구 제작업체는 2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대형유원시설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영세하며, 시장의 대부분도 이 들 업체가 차지하는 독과점 형태를 띄고 있다. 시장규모는 '99년 현재 약 9,900억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99년 현재 이용객 수는 3,443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질적인 이용객 및 시장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향후 유원시설업의 이용객은 국민의 여가활동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규모 역시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국내 유원시설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종합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유원시설업 관련 정부의 문제로서 법 제도상의 용어사용의 혼란, 중복등록 및 이

중허가, 관계법령의 규제과다, 법규정 미흡 등이 있으며 행정지원체계 미흡으로는 유원시설업 관련 전문공무원의 부재, 기초통계의 절대부족, 인력개발 미흡, 유원시설업의 특화수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으며,

둘째, 유원시설업계와 관련해서는 업체의 영세성, 유원시설업체의 집객노력 결여, 기구제작업체의 기술력 미흡 등의 문제가 있으며,

셋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관련해서는 중앙회로서의 역할 미흡, 재원의 부족, 인력과 전문성 미흡 등이 있으며,

넷째, 유원시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자체에 대한 자료수집의 애로, 안전교육의 미흡 등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종합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원시설업 관련 법체계 정비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유원시설업의 법적 정의 개정, 유원시설업의 범위조정, 용어의 통일 방안 및 업체의 ‘협회’가입 의무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원시설업의 범위조정에서는 이동유원시설, 번지점프, 워터파크 등의 신규시설물을 포함하는 방안과 도시공원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설치면적의 제한을 완화 및 유기기구 제작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둘째, 효율적인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투자 및 운영여건 개선사업, 경영 및 인력지원 사업, 안전 및 행정절차 합리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투자 및 운영여건 개선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휴부지 무상제공, 각종기금의 지원확대 및 활용방안 마련, 금융기관의 융자지원방안 마련 등을 금융여건 개선부문에서 제안하였다. 세제관련 투자여건 개선사업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의 분할납부 및 기한연장 방안 마련을 검토하였으며, 조사·통계·연구자료 제공 사업에서는 ‘협회’의 정확한 유원시설업 현황파악, 유기기구 제작설계 표준지침 및 합리화 방안 연구, 유원시설업 육성의 효과측정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기술 제공 사업에서는 KIST, 기계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트라이앵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

을 제안하였다.

경영 및 인력지원 사업은 유원시설 특화지원, 유원시설 박람회개최, 인식제고 사업전개, 안전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및 자격증제도 및 종사원 재교육과정 마련 사업 등을 검토하였다. 유원시설 특화지원사업에서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있는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산업을 유원시설업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원시설 박람회 개최사업에서는 유원시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 차원에서 박람회 개최 및 지원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안전사고 제로운동을 위한 안전사고 관련 인식제고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안전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사업에서는 대학 안전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추진과 유원시설 관리스쿨 개설추진을 제안하였으며, 자격증제도 및 종사원 재교육과정 마련사업에서는 유원시설업 관리 자격증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하였다.

안전 및 행정절차 합리화 사업에서 안전검사 제도의 정비사업은 현행 ‘협회’ 중심의 안전사고 관련법을 시민단체(NGO)와 연결하고, 안전성검사 방법 등의 문제에 대하여 안전사고 관련법 정비, ‘협회’의 안전성검사 기준강화, 외부안전전문가와와의 유기적 연결 등을 안전사고 및 안전성검사제도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규제정책 제정비 사업에서는 안전성검사를 제외한 전반적인 규제완화 추진, 취득세 관련법의 정비와 허가단일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에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투자행정여건 개선에서는 투자행정담당 전담자문반 상설운영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원시설업에 대한 육성정책의 필요성은 여러모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원시설업의 경우 아직까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현행 관광정책의 주된 방향인 외래객 유치증진에 대한 기여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집중 지원보다는 유원시설업의 경영환경을 포괄적으로 개선해주는 간접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구체적인 정책의제에 대해 적합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연구와 통계가 정비,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유원시설업이 문화관광부로 넘어온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구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많은 정책제안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적용 이후 처음 시도되는 연구라는 점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유원시설업이 더욱 더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 이정화·김준기, 『테마의 시대』, 세진사, 1996.1.
- 박석희, 『관광조사연구기법』, 일신사, 1997.1.
- 강병서·김계수, 『통계분석을 위한 SPSSWIN EASY』, 법문사, 1997.8.
- 이종원·최현집, 『SAS를 이용한 통계분석』, 전영사, 1997.3
- 임상오, “지역발전과 테마파크 산업의 진흥”,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창간호, 1999.2
- 김일룡, “일본의 테마파크 주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라벌대학 논문집 제 15권,
- 김봉석, “테마파크 기업의 학습조직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8.
- 김완식, “테마파크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11
- 진억일, “놀이공원의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11
- 문화체육부, “유원산업의 진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1997.12.
-----, “유기장업 육성발전 세미나”, 1997.11.
- 문화관광부, “2000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0.9.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유원시설 안전기준마련 연구 결과보고서”, 2000.7.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법규집”, 1999.9.
-----,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2000. 12.
-----, 관광비전21, 1999. 1.
-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2000.3
- 소비자보호원, “『공원·유원지내 놀이시설』 안전실태 조사”, 1998.11
- 한국관광연구원, “한국형 테마파크 개발촉진 방안 세미나 결과보고서”, 1997.11
-----, “한국관광 장단기 수요예측”, 1997.12.
-----, “관광벤처기업 육성방안”, 1999.3.
- 한국관광공사, “방한외래객 추이분석”, 1999.12.

-----, “‘99 외래객 실태조사”, 2000.4.

-----,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분석”, 1999.12

-----, “‘99 국민여행 실태조사“, 2000.6.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유원산업”, 제18호, 2000.3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한국관광연감”, 1999.12.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www.mct.go.kr 중 ‘열린 자료방’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중 ‘종합법률정보’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stat/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www.http://100.naver.com](http://100.naver.com)

“Amusement Business”, 1999.12

국제유기시설협회(IAAPA), “U.S. Amusement/Theme Park Industry”, 1999.

부 록

- 일반인 설문조사

- 유원시설업체 설문조사

- 유기기구 제작업체 설문조사

- 전문가 설문조사

부록 1. 일반인 설문조사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전화설문조사

- 일반인 대상 -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연구원은 문화관광부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관광정책수립지원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연구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의 육성 방안”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연구에 반영되어 우리 나라 유원시설업의 육성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조사시간은 약 3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사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 ① 조사에 응했을 경우 ☞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1번 물음으로)
② 조사를 거부했을 경우 ☞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I. 다음은 귀하가 놀이공원을 이용했을 때에 대한 의견조사입니다.

1. 작년 한 해 평균 몇 번 정도 놀이공원을 방문하셨습니다? (회)
2. 놀이공원이 위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복수응답가능)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강원
⑨ 경기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3. 방문한 놀이공원의 종사원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4. 이용하신 시설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안전 ② 약간 불안전 ③ 보통 ④ 대체로 안전 ⑤ 매우 안전
5. 판매하는 기념품 및 캐릭터상품의 질은 어떠했습니까?
① 매우 나쁨 ② 약간 나쁨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좋음 ⑤ 매우 좋음
6. 판매하는 식·음료의 질은 어떠했습니까?
① 매우 나쁨 ② 약간 나쁨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좋음 ⑤ 매우 좋음
7.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벤트)의 질은 어떠했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8. 놀이공원의 방문까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① 아주 힘들 ② 약간 힘들 ③ 보통 ④ 약간 쉬움 ⑤ 매우 쉬움
9. 방문한 놀이공원의 안내관은 유용했습니까?
① 매우 쓸모 없음 ② 약간 쓸모 없음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유용 ⑤ 매우 유용
10. 놀이공원 이용 시 가격은 어떠했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14. 선생님께서는 놀이공원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① TV ② 신문 ③ 잡지 ④ 인터넷 ⑤ 옥외광고 ⑥ 기타()

II. 다음은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15. 귀하의 성별은? (응답자가 음성으로 구분하여 기록)
① 남 ② 여

16. 귀하의 연령은? (해당 연령대에 체크할 것)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 조사원 기록사항:

조사원 성명	통화번호	통화종료일시
	-	① 통화일: 2000년8월 일 ② 통화종료시간: 시 분
응답신뢰정도	1. 상	2. 중 3. 하

2. 관광진흥법 상 귀 업체가 중복 등록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① 세금의 이중 과세 ② 관련 법규의 이중 규제 ③ 행정의 낭비
④ 신규 등록 시 시장진입의 어려움 ⑤ 기타()

3. 현행 유원시설업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귀 업체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II. 다음은 유원시설업 중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4. “유원시설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으로는 금융 및 세제지원, 그리고 행정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 업체는 이러한 지원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 ① 예, 있습니다 ② 아니오, 없습니다.(☞ 15번으로 가십시오)

III. 다음은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 해당사항이 없을 시 6번으로 가십시오)

5. 귀 업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지원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 ① 행정 규제완화 ② 인·허가 관련사항 ③ 기술지도 ④ 교육훈련
⑤ 정보제공 ⑥ 인력수급 지원 ⑦ 기타()

IV.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 해당사항이 없을 시 13번으로 가십시오)

6. 귀 업체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금융지원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을 지원 받아 보았습니까?(복수응답가능)
 ① 중소기업 자금 ② 관광개발진흥기금 ③ 관광 벤처자금 ④ 기타()
7. 귀 업체가 자금을 지원 받은 년도는 몇 년도였습니까? () 년도)
8. 귀 업체는 위의 자금을 몇 번 정도 지원 받았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이상
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을 때의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1회 지원 받았을 시)
 ① 1억 원 미만 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③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④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⑤ 30억 원 이상
10. 지원금의 평균 상환기간 및 거치 기간은 몇 년 정도였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11. 귀 업체는 금융지원을 받을 때 담보물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귀 업체는 담보물 설정조건 때문에 금융지원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V. 다음은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 해당사항이 없을 시 15번으로 가십시오)

13. 귀 업체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①세금감면 혜택 ②세금납부의 기한의 유예 ③세금의 분할 납부 ④기타()

14. 귀 업체가 지원 받은 세제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VI. 다음은 종업원 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5. 귀 업체는 종업원에 대해 일년에 몇 회 정도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없다(⇒ 18번으로 가십시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16. 귀 업체는 종업원에 대한 수시교육은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매일 ② 2회/주 ③ 1회/주 ④ 1회/2주 ⑤ 1회/달 ⑥ 기타()

17. 귀 업체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안전교육 ② 친절교육 ③ 직무교육 ④ 기타 ()

18. 종업원 교육과 관련하여 귀 업체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VII. 다음은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9. 귀 업체에서 1999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몇 건이었습니까?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20. 귀 업체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시설물의 결함 ② 종업원의 부주의 ③ 이용자의 부주의 ④ 시설물의 노후화

21. 귀 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귀 업체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복수응답가능)
 ① 관계기관에 신고 ② 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 ③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
 ④ 재발방지 조치 ⑤ 기타()
22.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의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귀 업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23. '협회'의 안전성 검사와 관련한 귀 업체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24. 귀사가 만일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VIII. 다음은 귀 업체와 관련된 일반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25. 귀 업체가 위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 시·군)(예; 강원도 춘천시)
26. 귀 업체가 영업을 개시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년도)
27. 귀 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1999년 기준) (천만 원)
 ('99년 이전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28. 귀 업체의 연간 입장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1999년 기준) (천 명)
 ('99년 이전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29. 귀 업체의 전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m^2 또는 만평)

부록 3. 유기기구 제작업체 설문조사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실태 및 의견조사
- 유기기구 제작업체 대상-

□□ -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연구원은 문화관광부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관광정책수립지원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연구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당 연구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유원시설업 육성방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유원시설 기구제작업체에 대한 의견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특히 유원시설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유원시설 기구제작업체의 충실한 자료와 의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에 반영되어 우리 나라 유원시설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본 설문지는 연구의 기초자료로만 이용되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장 이 연 택

※ 기입하신 설문지는 8월 6일 까지 Fax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연구2팀 김 상 태 연구위원

주 소 : (우) 110-062 종로구 신문로 2가 1-38 내자빌딩

연락처: Tel 3704-0620 / Fax 723-3015~6

E-mail: kkakkio@hanmail.net

13. 귀 업체에서 한 해 수입하는 유기기구의 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① 3천만 원 미만 ②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③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④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⑤ 10억 원 이상
14. 귀 업체가 유기기구를 수입할 때 기술도 같이 수입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6번으로 가십시오) ③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
15. 귀 업체가 유기기구 제작기술을 수입할 때 기술료로 지불하는 로열티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1% 미만 ② 1%~ 3% 미만 ③ 3%~ 5% 미만
④ 5%~ 10% 미만 ⑤ 10% 이상
16. 귀 업체가 주로 수입하는 유기기구는 무엇입니까?(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V. 다음은 '유기기구 제작업체'의 실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17. 귀 업체는 유기기구 제작과 관련한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번으로 가십시오)
18. 귀 업체가 유기기구 제작에 관한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몇 개의 유기기구 제작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이상
19. 귀 업체는 보유중인 기술로 유기기구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① 예(☞ 21번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20. 귀 업체는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유기기구를 제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장성이 없어서 ② 유원시설업체가 자사제품의 사용을 거부해서
 ③ 제작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④ 제작관련 자금이 부족해서
 ⑤ 기타()

21. 귀 업체는 1년 이내로 새로운 유기기구를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23번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22. 귀 업체는 유기기구를 제작할 장비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기기구 제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장성이 없어서 ②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③ 제작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④ 제작관련 자금이 부족해서
 ⑤ 기타()

23. 귀 업체는 기구제작과 관련해 다른 기구 제작업체와 상호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4. 귀 업체는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5. 귀 업체가 만일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VI. 다음은 귀 업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6. 귀 업체의 종업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비정규직 포함) () 명)

부록 4. 전문가 설문조사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실태 및 의견조사
- 전문가 대상-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연구원은 문화관광부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관광정책수립지원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연구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당 연구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유원시설업 육성방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엄선된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에 반영되어 우리 나라 유원시설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본 설문지는 연구의 기초자료로만 이용되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연락주시면 동 조사의 결과를 송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장 이 연 택

※ 기입하신 설문지는 8월 11일 까지 Fax나 E-mail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연구2팀 김 상 태 연구위원

주 소 : (우) 110-062 종로구 신문로 2가 1-38 내자빌딩

연락처: Tel 3704-0620 / Fax 723-3015~6

E-mail: kkakkio@hanmail.net

I. 다음은 관광진흥법 상의 '유원시설업' 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 또는 답변해 주십시오.

1. 현재 우리 나라의 유원시설업은 일정한 대지면적에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수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및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걱정하지 않다 ② 걱정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적정하다 ⑤ 매우 적정하다

현행 관광진흥법상의 유원시설업은 일정한 대지면적 위에 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면 종합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를 1종류 이상 설치·운영하면 일반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1종류 이상 설치·운영하면 기타유원시설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료: 관광진흥법 시행령

2. 만약 관광진흥법상의 유원시설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수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_____)

II. 다음은 '유기기구 제작업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 또는 답변해 주십시오.

3. 현재 우리 나라에서 운행되는 유기기구는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입니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국내 유원시설업 육성방안의 한가지 대안으로 유기기구 제작업체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②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선생님이 생각하기로 유기기구 제작업체를 육성시키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겠습니까?(복수응답가능)

- ① 세제감면 혜택을 준다 ② 자금 지원을 해준다 ③ 기술 및 정보지원을 해준다
④ 관련법규를 완화해준다. ⑤ 전문기술인력지원을 해준다. ⑥ 기타()

5. 유기기구 제작업체를 육성시킴으로 인해 국내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 ① 기구제작의 국산화로 인한 수입대체 효과
② 기구제작업체와 연관된 산업의 파급효과
③ 첨단놀이기구제작에 대한 기술력 확보 효과
④ 유원시설업체들의 경영개선 효과
⑤ 기타()

6. 그 외 유기기구 제작업체 육성방안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Ⅲ. 다음은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7. 현재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함)는 유원시설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 및 대 정부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기로 '협회'의 업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까?(중요순서대로 답해주십시오)

()

- ① 안전성검사 기관으로서의 권한 강화
② 유원시설업협회의 실질적인 중앙회로서의 역할 강화
③ 국내·외 산업정보 수집 및 정보교환 업무 강화
④ 유원시설업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대 정부 건의 강화
⑤ 기타()

관광진흥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권한은 안전성검사를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자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63조 (권한의 위임)

8. 현행 유원시설업의 유기기구에 관련된 안전성 검사는 '협회'에서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시민단체(NGO) ④ '협회' ⑤ 기타()
9. '협회'의 안전성검사는 유원시설업체의 안전성검사 대상 놀이기구에 대하여 '협회' 자체적으로 년 1회의 정기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과 함께 하는 수시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행 안전성검사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걱정하지 않다. ② 걱정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걱정하다 ⑤ 매우 걱정하다
10.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생각하기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 ()
- ① 안전성검사 관련 전문인력 확보
② 안전성 검사 관련 전문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확보
③ 안전성검사와 관련한 법규정의 재정비 및 강화
④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의 가입유도
⑤ 기타()
11. 유원시설업의 유기기구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유기기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안전 전문가를 양성할 체계적인 교육기관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직업전문학교 ② 대학 ③ 대학교 ④ 대학원 ⑤ 기타()

12. 현재 우리 나라의 유원시설업체들의 '협회'에 대한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업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이로 인한 회원사와 비회원사간의 정보 및 업계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유원시설업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협회가입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유원시설업 신규 등록을 허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13. 그 외 '협회'와 관련된 선생님이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IV. 다음은 '유원시설업'과 관련된 일반현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 또는 기입해 주십시오.

14. 귀하는 유원시설업이 지식기반 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지난 10년 동안 국내 유원시설업은 꾸준한 성장을 하였으며, 이로 미루어보아 향후 유원시설업을 이용하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원시설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16.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 테마파크의 국내 유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외국 테마파크의 국내유치로 인한 국내 유원시설업체에 미칠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17.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로 외국 테마파크가 국내 유치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큰 차례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지방 경제의 활성화 ② 지방 재정수입의 증대
- ③ 지역 주민의 여가선택 폭 다양화
- ④ 선진 경영기술 습득 ⑤ 외자유치로 인한 국제적 신인도 제고효과
- ⑥ 기타()

18. 그 외 우리 나라의 “유원시설업의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19. 선생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다음 중 어느 곳입니까?

- ① 정부(투자)기관 ② 협회 ③ 학계 ④ 연구소(원) ⑤ 업계

※ 자료발송용 주소나 E-mail을 적어 주십시오

성 명		소 속	
주 소		E-mail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자약력

김 상 태(金 相 兌)

現在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발행인	이 연 택
발행처	한국관광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38 내자빌딩 전화: 02-3704-0600 팩스: 02-723-3015~6 http://www.ktri.re.kr
인쇄일	2000년 11월 30일
발행일	2000년 11월 30일
인쇄인	라인피아
